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579-01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illustration shows a woman in a blue sweater and white checkered skirt pushing a man in a wheelchair. The man is wearing a red sweater and blue pants. To their right, an elderly woman in a yellow vest and brown pants is walking with an elderly man in a blue sweater and white pants. They are walking on a path with stylized buildings and trees in the background.



목 차

I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3

- 1. 추진배경 3
- 2. 개요 5

02 추진체계 및 운영기반 구축 8

- 1. 추진체계별 역할 ... 의료·요양 통합돌봄 운영 체계도 8
- 2. (시군구 전담조직) 조직·인력 배치 18
- 3. 시·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25
- 4. 서비스 자원 발굴 및 관리 29
- 5. 통합돌봄 교육체계 31

03 행정사항 33

- 1. 예산편성 지침 33
- 2. 교육이수 36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01 업무절차 개관 41

02 세부 추진절차 44

- 1. 대상자 신청·접수 44
- 2. 대상자 발굴 46
- 3. 사전조사 48
- 4. 종합판정조사 실시 51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70
6. 통합지원회의	77
7. 서비스 의뢰 및 제공	79
8. 모니터링	81
9. 대상자 종결	83

03 연계서비스 86

1. 보건의료	90
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90
나.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93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97
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99
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101
바. 퇴원환자지원 연계사업	103
2. 건강관리	111
가. 방문건강관리(보건소)	111
나. 건강백세운동교실	113
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114
라. 다제약물관리사업	116
마.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118
3. 장기요양	119
가. 장기요양 재가급여	119
나.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121
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23
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126
마.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128
4. 일상생활돌봄	130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30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33
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136
5. 기타	140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140
나. 통합사례관리사업	142
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44
라. 재가의료급여 사업	146

04 } 지역 특화서비스 148

- 1. 운영개요 148
- 2. 모델예시 151
 - 가. 방문의료지원사업 151
 - 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153
 - 다. 일상생활돌봄 155
 - 라. 주거환경개선 162
 - 마. 케어안심주택 165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01 } 업무절차 개관 171

02 } 세부 추진절차 173

- 1. 대상자 신청·접수 173
- 2. 대상자 발굴 180
- 3. 종합판정조사 실시 181
-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183
- 5. 통합지원회의 187
- 6. 서비스 의뢰 및 제공 189
- 7. 모니터링 190
- 8. 대상자 종결 192

03 } 연계서비스 194

- 1. 보건의료·건강관리 196
 - 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96
 - 나.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02
 - 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7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라. 장애친화 건강검진	214
마.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217
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20
사. 장애친화 산부인과	222
아. 권역재활병원	227
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31
차.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34
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237
타. 가정간호제도	239
파. 가정형 호스피스	242
하. 중증소아재택의료시범사업	246
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51
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255
더. 장애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257
2. 지역자원	260
가. 수어통역센터 운영	260
나. 장애인 보조기기(건강보험, 의료) 급여사업	263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 사업	271
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276
마. 언어발달지원	279
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81
사.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283
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84
자. 장애아보육료 지원 사업	285
차. 저소득 장애인주거편의증진사업	287
카. 영구임대주택	289
타. 국민임대주택	292
파. 통합공공임대	294
붙임. 서비스 메뉴판	296

IV 서식

서식	303
----------	-----

주요 변경 사항

| 시범사업 대비 지침 1차(가안) 주요 개정사항 |

구분	시범사업 ('25.2)	본사업 ('25.7~11월 개정사항 포함)
공통사항		
① 사업 명칭 정비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 법률을 인용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예산, 조례 명칭 등은 법정 용어 사용(‘돌봄통합지원’)
② 대상자 예시 추가	통합지원이 가능한 기타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예시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보유자 등을 제시
③ 추진체계별 역할 명확화	복지부, 시도, 시군구 분청, 읍면동, 관련기관 역할 포함	보건의료 연계를 위한 보건소 역할 강화, 사업운영 자원을 위한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장애인개발원) 신설
④ 우선 관리대상자	전체 지원 대상자의 70% 이상을 우선관리대상자로 할 것으로 제시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퇴원환자, 맞돌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우선관리 대상자 포함 비율 삭제 - 다만, 향후 성과예산 평가지표에 포함 추진
⑤ 직권신청 절차	신 설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 절차 규정 - (대상)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기각자, 퇴원환자 등 - (사유) 긴급한 지원 필요 - (요건) 당사자 동의 - (신청 후 절차) 사전조사 생략 → 시군구가 자체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노인 통합돌봄		
① 통합돌봄 신청 및 사전조사 절차 조정	사전조사 결과 통합판정 필요자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접수	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후 사전조사 실시
② 재신청 제한 규정 조정	사전조사 후 중도 포기자의 경우 접수일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사전조사 결과 통합지원 미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구분	시범사업 ('25.2)	본사업 ('25.7~11월 개정사항 포함)
③ 통합판정조사 절차 간소화	통합판정조사 의뢰시 의사소견서 제출	삭제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 및 통합판정 위원회 심의에 따른 통합판정서 결정	의료위원회 삭제
④ 조사체계 다변화	사전조사 실시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또는 피해당군으로 분류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군, 통합돌봄 피해당군을 구분
	건보공단 단독 통합판정조사 방문으로 실시	지자체는 통합판정조사군에 대하여 지자체 연계 조사를 단독 또는 동행으로 수행 퇴원환자·생애말기 환자 등 긴급한 조사·지원 필요자, 직권신청 대상자, 사전조사결과 지자체 조사군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⑤ 집중관리 대상자 신설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분담 - (시군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총괄 - (읍면동) 개인별지원계획 지원, 모니터링 실시 * 퇴원환자의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시군구 담당자만 수행	예외적으로 통합판정조사 결과 의료돌봄필요도가 높은 집중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시군구 담당자가 수행 * 요양병원, 질병관리와 간호영역 1개 이상, 정신적 문제, 중증치매 등
⑥ 통합지원회의 운영방안	월 2회 이상 정기적(대면 회의)을 권고하나, 신속한 지원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시 비대면 또는 서면회의 활용 가능	월 2회 이상 운영 권고 및 신규대상자는 대면회의, 계획 변경 또는 종결 처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서면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⑦ 모니터링 체계 정비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결과를 기록하여 지자체에 제출	제공기관이 작성하는 제공결과 기록지 단순화
	대상자별로 지자체, 건보공단, 제공기관이 대상자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총괄은 시군구에서 담당, 대상자 상태 모니터링은 읍면동 실시, 시군구 총괄 - 다만 집중관리 대상자, 장애인, 퇴원환자는 시군구가 실시 * 제공기관은 대상자 상태가 악화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 통보
	방문 또는 유선으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실시하되, 대상자 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게된 경우 방문 실시 권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 변경 또는 종결	- (원칙) 기존과 동일 - (예외) 대상자의 상태 악화 상태가 큰 경우(예시: 장기요양 등급 변화가 예상되는 정도 등) 사전조사 및 통합판정조사 실시 * 대상자에게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안내

주요 변경 사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시범사업 (’25.2)	본사업 (’25.7~11월 개정사항 포함)
⑧ 종결기준 명확화	사망, 전출, 입원입소 등을 종결사유로 들고 있으나, 세부기준은 미제시	- (입원입소) 3개월 이상 입원입소 시 종결 처리 - (전출) 타 행정구역으로 전출 시 종결 처리 및 전입 지자체에 신청 시 신규 절차 진행, 다만 대상자 동의 시 통합판정조사 생략 가능
장애인 통합돌봄 * ’25.7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		
대상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로 65세 미만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등으로 심한 장애인이 아닌 자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 1차 지침가안 대비 2차 지침가안 수정표 |

구분	세부사항	지침가안 1차 배포	지침가안 2차 배포	비고
① 목차	노인·장애인 연계 서비스 목차 (p.87, p.194)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기타 순으로 나열	• 13대, 5대, 6대 서비스 정리 순서대로 재배열	
② 추진 체계	통합돌봄 사업 관련 서비스 개요 추가 (p.87, p.194)	• 노인, 장애인 서비스 및 지역특화서비스로 구성	• 노인·장애인 서비스는 서비스 자원발굴 및 관리에서 서술 • 지역특화서비스는 특화서비스 목차에서 별도 서술	
③ 지역 특화 서비스 모델 (예시)	지역특화 서비스 설명 (p.148)	<신설>	• 지역 특화 서비스 방향 및 고려사항 추가 -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기준 안내	
	방문의료 지원사업 (p.151)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원 중심 설계	• 재택의료센터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서식, 서비스 내용을 재택의료센터 지침을 준용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설명 상세화	※ 재택의료센터 협업형 모델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p.153)	• 기본적인 사업절차 중심 서술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침 최신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의 관련 지침은 추후 별도 배포 예정
	일상생활 돌봄 사업 (p.155)	• 개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비용, 제공방식으로 통합 하여 서술	• 서비스 내용별로 목차 재구성(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및 이마용) • 제공기관 안내 추가	
	주거환경 개선(p.162)	• 장기요양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기준으로 작성	• 서비스 제외 대상에 장기요양 사업 추가 • 제공기관 범위 제공	
④ (노인) 세부 추진 절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p.70)	• 욕구에 따른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나열로 복잡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흐름도 및 요약표 추가 -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시 서비스 중복 방지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모니터링 (p.80)	• 지자체와 건보공단 협력 간략 서술	•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및 회신 기간 설정	※ 공범위:서비스 이용 여부, 만족도, 대상자 욕구상태변화
⑤ 연계 서비스	타 지침 연계 강화 (p.93,99,111,113,114)	• 사업 내용만 안내	• 통돌부서 대상자 서비스 의뢰시 업무 및 연계절차 반영(치매안심센터) • 연계 방안 추가(만성질환관리, 건강백세 운동교실) • 사업 내 우선 대상자에 통돌대상자 포함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간호관리 및 AI·IoT 건강관리 사업은 26년부터 ICT 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어 해당내용은 추후 반영

주요 변경 사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차 배포 대비 3차 배포 수정표 |

구분	세부사항	2차 배포(가안)	3차 배포(안)
① 사업개요	대상자	• 생애말기 대상자는 철차에서만 규정	• 우선관리 대상자 내 생애말기 포함(p.6)
	부서 및 인력	• 읍면동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규정 추가 필요	• 조사, 모니터링 등 대상자 방문 필요성을 고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담당 팀에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p.19)
② 추진체계	자원관리	• 시군구 과·팀 배치 및 관련 업무만 안내	• 1과 3팀 체계도 권고사항으로 포함(p.20)
	예산 지침	• 노인 연계서비스는 핵심·추가·신규 서비스로 구분되나, 장애 연계 서비스는 별도 분류체계 없음	• 장애 연계서비스도 8대 핵심, 13대 추가 서비스로 편제 개편(p.197)
	예산 지침	• 예산 관련 행정사항 부재	• 예산운영 공통사항 및 각 내역사업별 집행지침 추가(p.33)
③ 지역 특화 서비스	방문의료지원 사업	• 간호사 고용기관을 시군구 본청 또는 보건소로 규정	• 보건소(또는 시군구 전담부서)로 변경(p.151)
	케어안심주택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방식 및 세부절차 부재	• 케어안심주택 내 중간집 지침 요약본 반영(p.166)
④ 노인 절차	통합판정조사	• 통합판정조사 의뢰 후 통합판정조사 수행	• 통합판정 조사대상자로 명백한 경우 지자체 조사 의뢰전 통합판정조사 수행 허용(p.52)
	계획 수립	• 서비스 선제공 후 사후승인 대상자 기준 불분명	• 직권신청, 퇴원환자 등 긴급성 기준 예시 추가(p.71)
	통합지원회의	• 통합지원회의 참여자 예시에 보건소 부재	• 통합지원회의 참여자로 보건소 추가(p.77)
	종결	• 종결사유로 필요서비스가 연계사업으로만 구성시를 포함 • 종결 사유 발생시 통합지원회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종결 처리	• 종결시 필요서비스가 1가지인 경우로 변경(p.83, 84) • 사망, 전출 등 명확한 종결 사유에 해당하거나, 철차 중에 종결사유가 발생시 별도 계획 수립 없이 안건으로 상정 처리(p.83)
⑤ 연계 서비스	일반	• 별도 목록표 부재	• 중앙서비스 요약 목록표(사업명, 대상, 본인부담금 등 기재) 추가(p.88)
	재택의료센터	•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시	• 보건소 협업형 등 최신기준 반영(p.123)
	방문건강관리	• 장기요양 1~5등급 대상자 중 보건소 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 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p.111, p.114) *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필요 ** 1~3등급 장기요양등급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은 가능하나 보건소의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⑥ 서식	통합판정 조사 의뢰서	• 통합판정조사 의뢰서에 간단한 신청인 정보만 반영	• 대상자 신청서 정보 전체 반영 (시스템으로 전송)(p.333)
	통합판정 조사	• 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서-지자체 자체조사 순으로 배열	• 통합판정조사-지자체 자체조사-통합판정서 순으로 변경(p.335~352)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 3차 배포 대비 4차 배포 수정표 |

구분	세부사항	3차 배포(안)	4차 배포	페이지
① 추진체계 및 운영기반 구축	추진체계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운영, 서비스 연계 등 보건의소 역할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소 통합돌봄 가이드라인을 반영 	p.12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으로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추가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정책 수립, 서비스 개발, 성과관리 지원 	p.17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신설 	p.27
② 노인 절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가능자로 시행규칙 7조에 열거한 기관의 업무담당자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도 포함 	p.44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권신청 일부 요건 보완 필요 * ①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직후의 자 등 ②긴급한 지원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통합지원 시행령에 근거하여 직권신청 요건 명확화 * ①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직후의 자 등 ②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며, ③통합돌봄 신청이 어려운 자 	p.44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보공단에서 빅데이터 발굴대상자의 신청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보공단에서 빅데이터 발굴 리스트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발굴 수행 가능 * 단, 지자체 발굴시 사전조사 필요 	p.46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비대상자에 대한 접수결과 안내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제외 대상자에게도 대상자 접수 결과 안내 절차 신설(서식 8 반영) 	p.49
	통합판정조사 및 자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한 연장 예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에 대한 예시로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경우 추가 	p.52, p.68, p.69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판정조사 욕구목록과 자체조사 욕구목록을 재분류한 주요 욕구(문제) 별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판정조사 욕구목록과 자체조사 욕구목록을 주요 욕구(문제) 작성시 사용 	p.72, p.73
	통합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대상자는 대면회의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대상자는 대면회의(권장) 또는 비대면회의로 수행 	p.77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지원회의의 위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작성(서식 20) 	p.77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세부사항	3차 배포(안)	4차 배포	페이지
	서비스 의뢰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의뢰 방식에 대한 구체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결정 방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뢰 방식 예시 제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 결정 필요한 서비스(노인맞돌 등)은 담당부서로 의뢰 - 지역특화 또는 보건소 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접 의뢰 - 장기요양 및 보건소 외 보건의로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제공기관 리스트 제공 </div> 	p.79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사유로 사망, 전출, 입원(소) 대상자 거부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통합지원회의에서 종결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 종결사유로 신설 	p.83, p.84
③ 지역특화 서비스	공통사항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서비스 목적, 방향,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내용 등 추가 	p.148
	방문의료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의료지원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의료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명확화 	p.151
	일상생활돌봄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의 경우 1년 한시 장기요양 시설로 지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검직 허용 	p.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지원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지원 사업 내용 정비 노인맞돌 동행지원과 동일하게 단가 17,000원으로 변경 	p.159
	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범위 100만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 15%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범위 200만원으로 확대 및 본인부담금률 삭제 	p.162
④ 장애인 절차	업무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서로 종합판정조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업 시행에 따라 시스템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을 통해 종합판정조사 의뢰 	p.172
	대상자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신청하는 장애인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173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구분	세부사항	3차 배포(안)	4차 배포	페이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도달 직전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신청 대상자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기 2개월 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노인 편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노인 편에 따라 접수 등의 절차 진행 	p.17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의 취소 신설 	p.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원 신청 관련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외에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역할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원 신청 여부 확인 간소화 시스템에서 활동지원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활동지원 신청 여부 확인 	p.178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종합판정조사 관련 지자체 동행요청 신설 	p.178
대상자 발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민·관 협력 등 대상자 발굴에 관한 내용 신설 	p.180
종합판정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조사 원칙 1차 참여 지역 대면, 2차 참여 지역 비대면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조사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이력이 없으면 대면, 있으면 비대면으로 조사 	p.181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모니터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도래 시 절차 신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가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를 활용하여 대상자 욕구 조사 및 서비스 연계 	p.191
대상자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 사유 사망, 전출, 병원(시설) 입원(입소),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복합적인 욕구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 사유 추가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p.19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종결 후 재신청, 전출 등에 따른 행정사항 추가 	p.193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현황

- ◎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 증가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년기 진입 으로 '24년 노인인구 1천만 명 돌파(20.3%) 및 급속한 초고령화 진행
 - *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소요 연수)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한국 7년
 - 의료·돌봄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도 크게 증가
 - * (75세 이상 노인인구 수) 3,986천명('23.) → 5,497천명('30.) → 7,301천명('35.)
- ◎ 전체 장애인구는 263만 명('24.)으로, '15년 이후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부터 소폭 감소
 - * 등록장애인 수(만명) : 249('15) → 255('17) → 261('19) → 265('21) → 263('23)
 -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55.3%, 고령화 수준은 2021년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 지역기반 의료·돌봄서비스의 불충분한 양과 분절적 제공으로 돌봄욕구 충족 한계
 - 단편적, 분절적으로 공급되는 등 재가서비스의 양과 질이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
 - * 재가수급자 중 단일급여 이용 77.6%, 방문요양만 이용 59.3%('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 필요
 - *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 개선방향

- ① 돌봄이 필요해도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패러다임 전환 필요
 -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 3월)
 - 연령과 장애특성에 따른 복합 욕구*(의료, 돌봄, 자립 등)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모형 마련 필요
 - * (서비스 수요)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순('23년 장애인 실태조사)
- ②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 필요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 증가 예상.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개요

가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 동 지침은 상기 법령에 근거하므로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함

나 추진방향

- (목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추진
- (방향)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의료, 돌봄서비스 등 확충 및 연계·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중점

다 추진원칙

- (중심성) 개별사업이나 서비스가 아닌 복합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각 사업과 서비스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할지 판단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에 맞추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충분성) 살던 곳에서의 생활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의료-돌봄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정
 - 지역자원과 기존 유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

※ 단,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고려·판단하여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유사중복서비스 제공은 최대한 지양

* (예시) 장기요양 방문급여와 기능이 유사한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불가

- (협력성)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관리

라 대상자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 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④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Ⅲ 장애인편 참고)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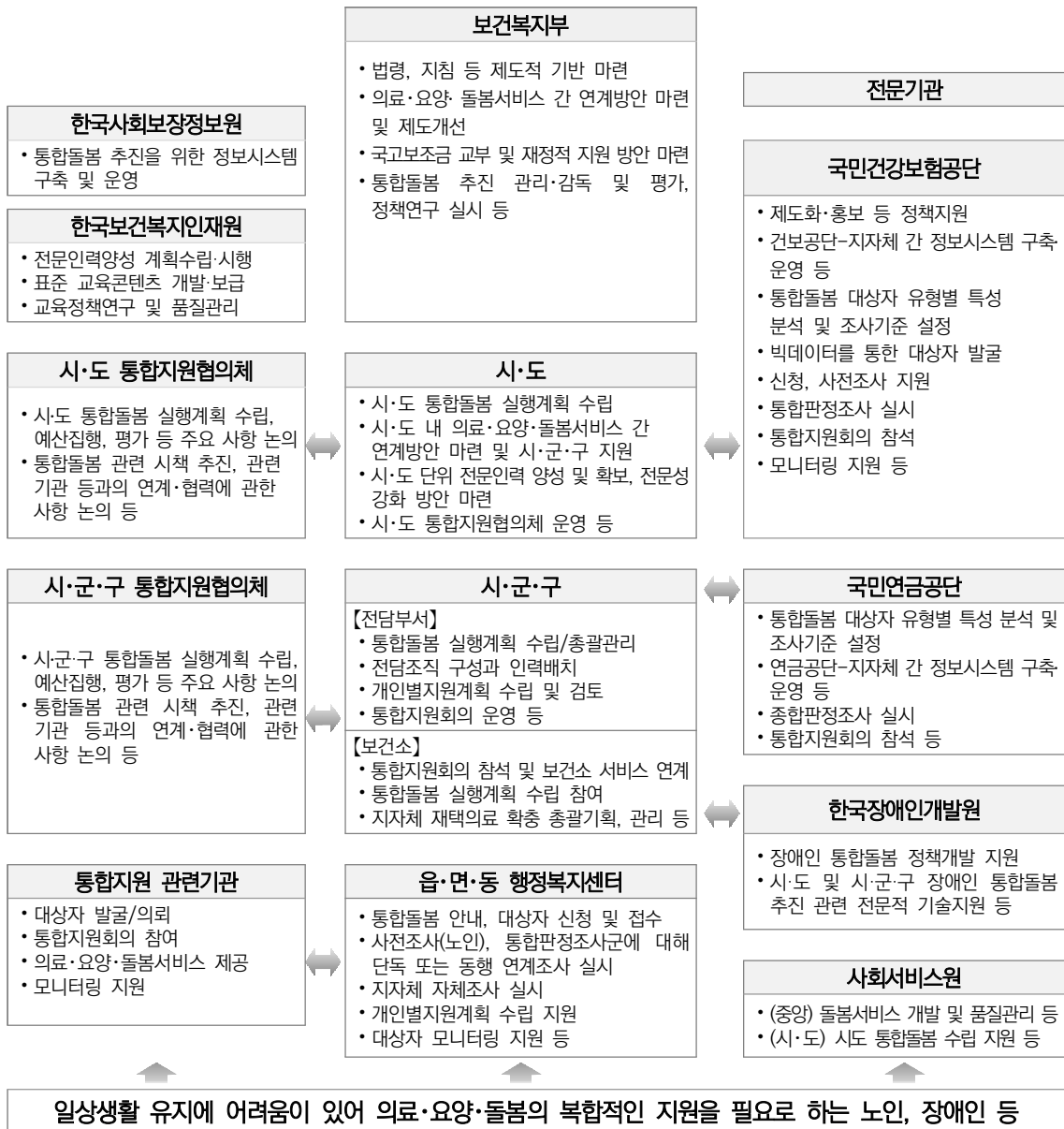
④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02 추진체계 및 운영기반 구축

1 추진체계별 역할 ... 의료·요양 통합돌봄 운영 체계도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 법령, 지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 ⊕ 의료·요양 돌봄 등 서비스 간 연계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운영
- ⊕ 통합돌봄 추진 관련 관리·감독 및 평가, 정책연구 실시 등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 ⊕ 시·도 실행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실행계획 조정
- ⊕ 시·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및 시·도 단위 정책조정 기능 수행
- ⊕ 시·도 내 추진조직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 ⊕ 시·도 내 의료·요양 돌봄 등 서비스 간 연계방안 마련 및 시·군·구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 등 시행
 - ※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취약지 서비스 지원방안, 지방의료원 등 협력방안, 중간집 등 주거확보 방안 마련 등
- ⊕ 시·도 단위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 교육, 워크숍, 연구 및 평가 등 지역 내 사업성과 확산

▶ 시·군·구 전담부서(본청 또는 보건소)

 시·군·구 역할

- 추진기반 마련(전담조직 구성·인력배치, 실행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 통합돌봄사업 안내 및 대상자 접수, 장애인 종합판정조사 의뢰
-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및 의료 및 요양·돌봄 필요도 종합판정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관련 서비스 연계관리(조정, 확충 포함)
- 시·군·구 내 공공-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기타 통합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 등

- ④ (추진기반 마련)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조직 구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전담조직(과 또는 팀 단위) 구성 및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 확보 추진
 - ※ 시·군·구(본청, 읍·면·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조체계 구축, 지역내 공공-민간기관 간 대상자 발굴·연계를 위한 협조체계 구성
- ④ (대상자 접수, 조사의뢰) 대상자 접수,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뢰 실시

 - (대상자 접수) 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중 통합돌봄 신청자에 대한 접수
 - (조사의뢰 실시) 시·군·구 전담조직에 접수된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자의 종합판정조사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조사의뢰
- ④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의 경우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자체조사 실시
- ④ (종합판정 실시) 통합판정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필요도 판정
- ④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합판정결과를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총괄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 통합판정결과 의료·돌봄필요도가 높은 집중관리 대상자*, 65세 미만 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은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수립

* 의료·돌봄필요도가 높은 집중관리 대상자

 - 통합판정결과에서 아래의 주요 고려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관에서 시스템 상 '집중관리 대상자'로 표기하여 시·군·구 정보 전송
 - (주요 고려사항) 통합판정결과 요양병원군, 질병관리와 간호영역 1개 이상(인공호흡, 욕창 등), 정신적 문제(우울, 자살시도), 중증치매(행동심리증상, 지남력 저하), 5개 이상 만성질환/약행거 먹기(완전도움)/영양부족 등의 상태이면서 사회자원이 없는 자

※ 고령장애인의 경우 계획수립시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모두 포함하여 작성 및 확인

 - 단,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수립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확인검토 후 통합지원회의 상정
- ④ (통합지원회의 운영) 종합판정을 통해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적절성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공공-민간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기구 운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종결여부 등을 논의

* 시군구 점담부서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관련기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구성

- 개인별 조사결과 등 종합 검토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변경·종결 승인
- 팀장 또는 담당자 주관, 의료·요양·복지(장애인 포함) 담당이 함께 참여
- 담당자가 발제를 하되 참석자 모두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례회의 및 적합한 제공서비스 모색이 가능하도록 운영
- 통합지원회의 결과는 상세 기록하여 보관(시스템 등록) 및 실적관리에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보제공(개인정보보호 주의), 모니터링 등 참고

➤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관리 및 실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질 제고

- (모니터링 총괄관리) 시·군·구 내 전체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3개월 단위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관리

- (모니터링 실시)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직접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모니터링 실시

➤ (자원관리) 지역 내 의료·돌봄 관련 기관과 자원 확보, 대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확보(목록) 및 신규 개발 독려·지원 등 확충

※ 복지관, 자활센터 등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주민조직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환경 마련

-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 및 틈새 서비스 발굴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 조성

➤ 기타 통합돌봄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 사업대상군 목표설정, 전반적인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상황·성과관리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중증장애인 등 다수의 대상군 중 적합자 발굴·확대 방안 마련
- 대상자에 대한 조사, 개인별 서비스 제공량 배정·조정·종결 등
-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자체 예산 확보 및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
- 통합돌봄 추진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 지원

➤ 지역주민 대상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홍보



보건소 통합돌봄 담당부서 역할(협업)

※ 「지역보건의료기관용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 참고

- (통합돌봄 수행 주체) 시·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내 보건소 관련 사항 작성 및 통합지원회의 참석
 -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보건소 서비스 대상자 중 통합돌봄 필요자 발굴, 보건소 서비스 연계·제공 및 모니터링 지원
 - *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방문건강관리,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이음(舊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노쇠예방관리(신규) 서비스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등
 -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군구 전담조직으로 의뢰, 연계
 -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요청한 모니터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상태변화 등 정보공유
 - (재가의료서비스 총괄) 지역 내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의 총괄 기획
- ※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경우, 보건소는 전담부서와 협업부서 역할을 함께 수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 통합돌봄사업 정보제공 및 안내
-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통합돌봄 신청·접수 창구 마련)
- 사전조사(노인) 실시 및 결과 안내
- 통합판정조사군의 건보공단 조사의뢰, 통합판정조사군에 대해 단독 또는 동행으로 연계조사 실시
-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통합지원회의 참석
- 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등

➤ 통합돌봄 안내·상담 및 대상자 발굴,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통합돌봄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접수
- 행복이음(시스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확인

➤ 사전조사(노인) 실시 및 결과 안내

- 통합돌봄 신청자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결과 안내
(통합판정조사군/지자체 자체조사군/통합돌봄 비 해당군 분류)

- 통합돌봄 비해당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관련 서비스 연계

- ④ 통합판정조사 의뢰 등

- 통합판정조사군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건보공단으로 조사의뢰
- 통합판정조사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연계조사를 단독 또는 동행으로 실시

- ④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방문하여 지자체 자체조사군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 필요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 실시

- ④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조사 및 계획수립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통합판정조사 결과 및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초안 수립)
※ 고령장애인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모두 포함하여 계획 초안 수립

- ④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참석

- ④ 통합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 시·군·구 본청에서 의뢰된 모니터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상태변화 여부 등을 3개월 단위로 점검

▶ 통합지원 관련기관(복지관, 병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 ④ 대상자 상담 및 발굴

- 각 기관의 기존 사업이용자 중 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안내 및 정보 제공

- ④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참석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요청 시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하여 서비스 연계 관련 정보 공유

- ④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제공가능한 관련 서비스 제공

- ④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 통합지원협의체(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

- ◎ 시·군·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운영
 - 통합지원협의체는 신설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 가능
- ◎ (구성) 의료·돌봄 통합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통합돌봄 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등으로 구성
- ◎ (주요 기능) 통합지원협의체는 이하의 관련 업무 심의 및 자문 실시
 -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그 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

▶ 전문인력양성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관
- ◎ 본원
 -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 수립, 교육 품질관리 및 교육정책 연구
 - 통합돌봄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직급별·직무별 교육계획 수립·시행
 - 통합돌봄 표준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강사양성 및 관리
 - 통합돌봄 교육 실적 및 통계관리, 교육평가 및 모니터링
 - 시·도, 시·군·구 교육 역량강화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협의체 운영
- ◎ 권역별 지역센터
 -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권역별 교육
 - 시·도 및 시·군·구 주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지자체 협업)

▶ 전문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부

- 통합돌봄 제도화·홍보·포럼, 성과평가 지원 등 정책지원
- 빅데이터(건강·요양정보)를 활용, 연계필요성이 높은 의료-요양-돌봄 고위험군을 선제적 발굴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발 및 연계 활성화
-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조사기준 설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 간 정보 연계
- 그 외 통합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사항

● 지역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분석 등 지원
-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양방향 연계체계 구축 및 현황관리,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지자체 실무자 역량교육, 지사 간 멘토링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등

● 지사

- (신청지원) 장기요양 최초 신청자, 재신청자 등의 통합돌봄사업 참여희망 시 대상자 신청지원
* 신청자 대상 사전조사 실시. 사전조사 수행결과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송부
- (통합판정조사 실시) 통합판정조사군에 대한 조사 실시. 건보공단 지사에서는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시·군·구 전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
- (통합지원회의 참석)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 참석, 대상자별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결정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 (서비스 연계제공)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 보험 관련 사업 연계제공

구분	세부 사업명
건강보험	- (의료지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다제약물관리사업 -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건강100세운동교실, 국가건강검진 - (현금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요양비 급여비(당뇨 소모성재료 등)
장기요양	- (재가지원) 장기요양 재가급여서비스 및 급여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복지우구 - (주거·편의)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모니터링 지원)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모니터링 대상자의 건강-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제공 등
-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 지자체별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현안 공유 및 개선과제 검토를 위한 지자체-건보공단-보건의료단체 간 정기적 회의 실시

(2) 국민연금공단

● 본부

-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조사기준 설정
- 국민연금공단-지자체 간 정보 연계
- 본부-지사 간 실무위원회 운영
- 기타 통합돌봄 관련 제반 지원업무 수행

● 지사

- (종합판정조사 실시) 종합판정조사표에 대한 조사 실시,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시·군·구 전담부서로 통보
- (통합지원회의 참석)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필요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 개인별지원계획 결정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3)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전문적 기술지원 담당
 - 장애인 통합지원 정책개발,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장애유형별 특성 분석, 장애유형별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정책연구 등 지원
 - 장애인 통합지원 지침 개발, 서비스 개발·확산 및 연계 활성화, 홍보 등 지원(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장애인 통합지원 담당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지원
 - 시·군·구 대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전문적 기술지원
 - 그 외 통합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사회서비스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및 돌봄대상자 지원사업 개발·확산
- 돌봄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 그 외 통합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사항

● 시·도 사회서비스원

※ 지자체의 추진방향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역할 조정 가능

- 시·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지원, 정책연구 수행
- 시·도 단위 각종 협의체 참여 및 운영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 지역 내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지역여건을 고려한 필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그 외 통합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사항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정책 개발 및 통합지원 운영 관련 전문적 기술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정책 수립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고도화, 실행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현장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환류
- 그 외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사항

2 (시군구 전담조직) 조직·인력 배치

▶ (기본 방향) 원활한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시군구 내 전담조직 구성

※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지자체 규모와 상황에 적합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내실있는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연계체계 강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사업 담당인력 배치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방안 가이드라인

- (도시형) 시·구에서는 통합돌봄 전담 “과”를 두고 과 내 “팀” 운영
 - (“과” 단위) “통합지원”, “통합돌봄”, “돌봄” 등의 용어를 부서 명칭에 포함
 - * (예시) 돌봄정책과, 통합돌봄과, 주거통합돌봄과, 사회돌봄과, 지역통합돌봄과 등
 - (“팀” 단위) 과 내 적어도 1개 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업무 수행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구성
 - * (예시) 통합돌봄과 內 통합돌봄팀, 통합돌봄과 內 지역통합돌봄팀

|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전담조직 업무 |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 업무는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수행

- (다수팀 가능) “과” 내 다수 팀을 둘 경우 연계가능한 타 팀 운영 가능
 - * (예시1) 통합돌봄과 內 통합돌봄팀, 지역복지팀, 희망복지팀 운영
 - (예시2) 주거통합돌봄과 內 통합돌봄정책팀, 희망복지팀, 주거복지팀 운영

- (농촌형) 군에서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최소 한 개 전담팀 구성
 - * (예시) 통합돌봄팀, 통합지원팀, 돌봄정책팀, 돌봄기획팀 또는 추진단(TF) 등
- (우수사례) 돌봄전담국을 신설, 내실있는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돌봄대상자별 담당부서를 하나의 국에서 총괄하여 운영
 - * (예시) 통합돌봄국 내 통합돌봄과, 주거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운영

▶ **내실있는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보건소 역할 및 연계체계 강화**

- (추진방안) 보건소 통합돌봄 담당 부서 및 담당 인력 지정·배치
- (주요 업무) 통합돌봄을 위한 본청-보건소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 포함
 - (대상자 발굴) 보건소 대상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연계
 - (통합지원회의 참석)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참석 (필수)
 - (서비스 연계·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증진, 치매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보건소의 사업(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지원)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요청한 모니터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등 정보 공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담당인력 배치**

- (추진방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담당인력 배치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 권고
- (주요 업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신청 및 접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대상자 발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 (신청·접수)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접수(건보공단 등 연계대상자 포함)
 - (조사판정 의뢰)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대상자 조사판정 의뢰
 - (통합판정조사군 연계조사) 통합판정조사군에 대해 단독 또는 동행 연계조사 실시
 - (자체조사 실시) 지자체 자체조사군의 의료-돌봄서비스 욕구 파악 등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수립
 - (모니터링 지원)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요청한 모니터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등 정보 공유

참고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권장 예시안

• (1팀 설치(안) 예시1)

□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인구 5만 이하(약 4.9만명) (대상자 규모 : 7천명)
- 총 면적 : 1,174.6km²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18개(1개)

□ 전담조직 설치안

규모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 돌봄팀	팀장	복지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총괄 • 지역계획 수립
	팀원 1~2명	복지 간호 보건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민간 자원 발굴 협력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조율 • 부서간, 민·관 및 전문기관 협업 체계 구축
		복지 행정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 홍보 • 행사 등 • 공무원 및 제공기관 등 교육 • 본인부담 관련 업무 • 실적, 평가 등
	팀원 1~3명	복지 간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등 선지원연계 • 전문기관 조사 의뢰 등 관련 업무 • 개인별지원계획 검토/처리 관련 업무 • 통합지원회의 운영 • 서비스 연계 업무 등 • 모니터링 총괄 • 서비스 실적 취합 등

• (1팀 설치(안) 예시2)

□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50만 이하(약 27만명) (대상자 규모 : 약 1.5~2만명)
- 총 면적 : 512.3km²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27개(1개)

□ 전담조직 설치안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 돌봄팀	팀장	복지	기획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통합지원 업무총괄 • 돌봄통합지원 관련 민원 대응
	팀원 2~3명	복지 행정	기획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무 및 예산 총괄 • 사업 홍보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민간 자원 발굴 협력 추진 •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 교육 및 홍보 • 방문의료지원센터, 재택의료지원센터 등 업무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주거지원사업, 퇴원환자, 일상생활 등)
	팀원 2~4명	복지 간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회의 운영 • 개인별통합지원계획 관련 업무 • 지자체 자체조사 • 통합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 등

• (과 또는 다수팀 설치(안) 예시1)

□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인구 50만 이하(약 38만명) (대상자 규모 : 약 1만명)
- 총 면적 : 176.6km²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13개(1개)

□ 전담조직 설치안

과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예방·보호·복합과	1팀	팀장	복지 행정 간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애인 통합지원회의 운영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확정) • 돌봄통합지원 관련 민원 대응 등
		팀원 1~3명	복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통합지원회의 운영 •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 • 돌봄통합지원 관련 민원 대응 등
	2팀	팀장	복지 행정 간호	기획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상담 • 긴급지원 등 선지원 연계 •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결과 접수 및 배분 등 • 지자체 자체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처리 (읍면동 배분, 서비스기관 의뢰 등)
		팀원 1~3명	복지 행정	기획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수립 • 제공기관 조율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부서간, 민/관 협업 체계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집행 • 사업 홍보 • 공무원, 제공기관 등 교육 • 사업 홍보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 복지·주거 분야 민간 자원 발굴협력 • 전문기관 협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 보건의료·건강관리 분야 민간 자원 발굴협력 • 전문기관 협업 업무

• (과 또는 다수팀 설치(안) 예시2)

□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인구 50만 이상(약69만명) (대상자 규모 : 2만~2.5만명)

○ 총 면적 : 156.5km²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25개(2개)

□ 전담조직 설치안

과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과	1팀	팀장	복지 행정	기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총괄 •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민간자원 발굴 협력 총괄
		팀원 1~3명	복지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수립 • 조례 등 업무 • 공무원 및 제공기관 교육 • 사업 홍보 등 • 예산 총괄
			복지 행정 간호 보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부서간, 민관 및 전문기관 협력 업무 • 일상생활돌봄, 주거 분야 서비스 연계 (맞춤영양서비스, 동행이동, 가사서비스, 주거 등) • 복지, 주거 등 민간자원 발굴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2팀	팀장	복지	기획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업무 총괄
		팀원 2~6명	복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회의 운영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 전문기관 조사 의뢰 및 결과 접수 • 개인별지원계획 업무 • 민원 대응 • 일상돌봄, 주거분야 등 서비스 연계·제공, 비용 지급 등
			복지 간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회의 운영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 전문기관 조사 의뢰 및 결과 접수 • 개인별지원계획 업무 • 민원 대응 • 보건분야 등 서비스 연계·제공, 비용 지급 등

• (인구 밀집지역 행정구 설치(안) 예시)

□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50만 이상(약 81만명) (대상자 규모 : 3만명 이상)
- 총 면적 : 53.5km²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37개(3개)
- 행정구 개수 : 3개(각 행정구별 전담팀 별도 운영)

□ 전담조직 설치안

- 시군구 본청

과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과	1팀	팀장	복지	기획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팀 업무 총괄 • 부서간, 민/관 및 전문가간 협업 • 인프라 조성 등 통합돌봄전달체계
		팀원	복지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제공기관 등 교육 • 자원관리 등 • 통합돌봄 기획 및 총괄(지역계획, 평가 등) • 통합돌봄 전달체계(시구동, 건보, 연금공단) • 통합돌봄 예산 총괄 • 안내·상담
		팀원	복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관리 • 지자체 특화 돌봄사업 운영 관리
		팀원	간호 보건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운영 관리 • 건강보험공단 연계 사업 운영 지원 • 퇴원환자, 건강돌봄 관련 업무 •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의약단체 연계
		팀원	복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회의 운영 총괄 • 모니터링 총괄
	2팀	팀장	복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지원 업무 총괄 • 지역 특화사업 총괄
		팀원	복지 간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지원, 틈새돌봄 등 총괄 • 긴급돌봄사업 • 장애인 조사, 판정, 개인별지원계획 등

- 행정구 전담팀 설치 : 자체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수행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팀장	복지	대상자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자원발굴 • 대상자 업무 총괄
팀원 1~3명	복지 간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관리 • 대상자 자체 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모니터링 등

• (국 설치(안) 예시)

□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50만 이상(약 70만명) (대상자 규모 : 2만~2.5만명)
- 총 면적 : 636.2km²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31개(2개)

□ 전담조직 설치안

국	과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1팀	팀장	복지행정	자원	•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팀원 1~3명	복지행정	기획	• 지역계획 수립, 사업 홍보 • 예산 편성·집행 • 공무원, 제공기관 등 교육
				복지	자원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부서간, 민/관 및 전문기관 협업
				복지행정	대상자	• 통합지원회의 운영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등) • 확정된 개인별지원계획 처리 (읍면동 배분, 서비스기관 의뢰 등) • 전문기관 조사 의뢰 및 결과 접수, 배분 등
		2팀	팀장	복지간호	자원	•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서비스 제공기관 협업 • 민간자원 발굴·협력 업무총괄
			팀원 1~3명	복지간호	자원 및 대상자	•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및 조율
						• 복지민간자원발굴·협력
						•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및 조율 • 주거 민간자원 발굴·협력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및 조율				
		• 보건의료 민간자원 발굴·협력				
		• 중간집(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입소자 관리 등				
		• 안내, 상담				
• 민원 대응 등						
3팀	팀장	복지	대상자	• 사례관리, 모니터링 업무 등 총괄		
	팀원 2~4명	복지간호행정	대상자	• 긴급지원 등 선지원 연계 • 지자체 자체조사(고난도사례등)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검토 • 모니터링 총괄 • 서비스 변경, 진출, 종결 등 조치 • 안내, 상담 • 민원 대응 등		

3 시·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개요

- (목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기본계획 방향성에 맞춰 시·도와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중앙정부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역계획으로 대체)

|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제1항)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 ①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 ②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 ③ 통합지원 자원조달과 운용
- ④ 통합지원 제공 기반과 자원의 균형있는 공급방안
- ⑤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방안
- ⑥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 관련 사항
- ⑦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수행주체) 시·도, 시·군·구 전담부서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시·도 및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
- (수행시기)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실행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군·구 전담부서 작성 및 통합지원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확정 → 시도 취합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 확정 → 복지부 제출

▶ 시·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목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추진방향과 시·군·구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서식1**
- (주요 내용) 시·군·구 통합돌봄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
 - 시·군·구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시·군·구의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지원방안
 - 시·군·구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방안

- 시·도 단위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 그 외 시·군·구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시·군·구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④ (목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서식2**
- ④ (주요 내용) 시·군·구의 지역현황 등을 반영한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비전/목표) 시·군·구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및 추진목표 등 제시
 - (대상자) 통합돌봄 업무지침을 토대로 지자체별 목표대상자 수 설정
 - *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을 고려하되, 지자체별 자원현황을 파악한 후 연도별 목표대상자 설정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서비스 내용 중 가용가능한 국가서비스(제도권 내)를 우선적으로 연계·제공하고, 불충분한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별 개발 및 연계·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
 - * 그 외 지자체별 돌봄현황을 적용한 특화사업 등 추진 가능
 - (전달체계)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및 인력배치 등 제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
 - 그 외 시·군·구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제시

▶ 타 계획과의 관계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실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
- ④ 실행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필요

3-1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 개요

- ① (목적)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도, 시·군·구는 지역상황을 반영한 지역계획을 수립
- ② (수립절차) 통합지원 실태조사 실시 →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 * 시·군·구는 통합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통합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③ (법적근거) 돌봄통합지원법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 ① (목적)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2026.3.5. 발표)에 기초하여, 중앙정부가 통합돌봄 정책의 향후 5년간의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 (2026. 하반기 수립예정)
- ② (수립절차)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통합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서비스, 인프라 목표 기준을 마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 ③ (주요내용) 통합돌봄 정책목표 및 방향, 인프라·서비스, 추진체계, 법·제도 등 운영기반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 통합지원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매년)

- ◎ (목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 ◎ (주요 내용)
 -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타 계획과의 관계

- ◎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
- ◎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 ※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2026년 하반기에 제작·배포 및 교육 예정

4 서비스 자원 발굴 및 관리

▶ 개요

- ④ (목적)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복지사업의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지자체 자체서비스 개발 및 관리 필요(법 제4조)
 -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단위 의료-돌봄의 종합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지역진단에 기반한 자원관리 기획업무 수행 필요
- ④ (수행주체) 시·군·구 전담부서(총괄)
 - 시·군·구 내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민간기관 협업

▶ 주요 업무내용

- ④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발굴·관리 및 실행계획 반영
 - 지역단위 의료-돌봄자원의 총량을 확인하고, 가용가능한 자원 간 연계방안, 부족한 자원개발 관련 내용을 지자체별 실행계획서에 포함
 - 시도 단위의 자원향도 파악하여 실행계획 등 반영 및 요청
 -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계획에 반영
- ④ 주기적인 자원조사 및 개발
 - (주요내용) 전국단위 통합돌봄 연계서비스(II-03 및 III-03참고) 및 지역특화서비스(II-04참고)를 작성
 - (필요성) 지역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가용자원의 총량 확인. 자원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행주체)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조사 수행
 - (수행시기) 연 1~2회 정기조사, 필요 시 수시 조사
 - (조사결과 반영) 조사결과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
 -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내 자원관리도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담당

④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시스템 관리

- (지역자원 현행화)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자원관리를 통해 지역발굴 자원 등록, 발굴된 자원 관련 정보의 최신 내용을 수시로 갱신 관리

☞ 참고 자원조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 참고)

- 지역의 의료-돌봄욕구 대비 부족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집중 개발
 - 지역의 의료-돌봄서비스 자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를 활용
 - * 장기요양 통계연보, 보건복지 통계연보 등
- 지역 내 유형별, 기관별 제공주체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자원조사 단계에서 활용
 - 자원조사단계에서부터 공공-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독려
- 자원조사는 조사의 시기 및 조사기간을 확정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은 사전에 공개
- 지역자원조사 결과 확인된 제공주체 정보 등은 향후 지역자원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④ 전문기관과의 협업

- (지자체) 전문기관에 지자체의 자원발굴·개발 관련 자료 제공 및 요청 가능
- (전문기관) 자원개발 연구조사나 대국민 자원현황 안내·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등록된 자원정보 제공 요청 가능

5 통합돌봄 교육체계

▶ 개요

- 지역단위 통합돌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통합지원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조정을 총괄 역할 및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통합돌봄 사례관리' 역량이 요구됨
-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직무수행,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필요

▶ 교육체계

| 통합돌봄 전담인력 교육체계 |

대상	교육 목표	기본·공통 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시도	시·도 단위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 시군구 통합돌봄 사업추진 지원역량 강화	통합돌봄 정책 및 지침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특성(돌봄 필요도 조사) 및 관련서비스(기관) 이해	지역진단 및 지역단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	통합돌봄 기획·관리 전문 역량
시군구	시군구 단위 돌봄수요 및 서비스 자원 진단에 근거한 지역계획 수립·관리역량 강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역량 강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통합돌봄 사례관리 심화·전문 역량
읍면동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통합돌봄 사례관리 수퍼비전

▶ 주체별 역할

구분	보건복지부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전문인력 양성 계획 포함) • 통합돌봄 전문인력 실태 및 교육 수요공급 총괄 조정 관리 • 시·도, 시·군·구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정책연구, 지침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 교육체계 및 계획수립; 연간 교육방향 및 교육지침 등 • 통합돌봄 맞춤형 교육 시행; 직무·직급별, 단계별 교육, 집합교육·온라인교육 컨설팅 등 •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및 Pool 공유; 지역전문가(컨설팅), 현장강사, 슈퍼바이저 등 • 시·도 교육계획 및 성과 총괄관리; 교육통계 생성 및 실적관리 등 • 표준 교육과정(교과목),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과정 심의·평가·모니터링 등 교육 품질관리 • 교육연구 및 교육협의체 운영 등 • 민간기관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시·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교육
자치 단체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광역자치단체), 시도 사회서비스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교육계획 수립·시행 •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인프라 확보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 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단위 지역교육(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주민 등) 계획수립·시행, 교육 실적·성과 관리 • 방문진료 필요성 등 의료분야 관련 교육 실시 등

03 행정사항

1 예산편성 지침

1) 예산운영 공통사항

▶ 기본원칙

- ⊕ 통합돌봄사업은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
- ⊕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지역별 지방비 대응 비율을 맞추어 구성하고, 지방비는 추가 확보 가능
 - 국비에 대하여 지역별 필수 지방비를 보조율에 맞추어 구성
 - * (지역별 국비 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서울 30%, 그 외 50%
- ⊕ 지자체는 방만한 예산집행,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준수사항

- ⊕ 관련 지침 및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통합지원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집행 가능
- ⊕ 본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취득성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

▶ 적용 법령 및 절차

- ⊕ 예산편성 및 집행은 아래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 준수
 - * (관련 법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타 개별 법령 등
- ⊕ 동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등 준용

2) 예산운영 세부사항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내역

- 통합돌봄 관련 회의운영(다과비, 회의수당 등), 홍보경비,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 등 통합돌봄 사업 수행 목적의 경비로 집행 가능
 - 회의수당 단가 등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 * (참고) '25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 12곳은 「'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안내」 지침의 “V-1. 예산 편성 집행 관리” 한시 준용('26.1~3월)
- 아래 항목에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통합돌봄 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등 참여자에 대한 식대

▶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내역

- 기본 원칙
 -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합돌봄 연계서비스 및 지역특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활용, 단 지역 특화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기준에 적합해야 함
 -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국가예산(바우처 등)·사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에 기반한 서비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가, 본인부담 등을 기존 제도 체계 준용
 - 다른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해당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 지원(중복지원 지양)
 - 특정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유형별 검토
 - ① (서비스 비용)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비용,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른 서비스 비용 지급 등
 - ② (제공기관 운영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운영. 다만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가능
 - * 제공기관이 부족하거나, 이동거리가 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의료취약지 등
 -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내용 등 결정·관리

- 단, 자산취득은 주거지원 및 방문의료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예) 생활필수품(냉장고, 침상 등), 휴대용 의료기기 및 장비)에 한해 가능

* 지자체는 해당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 있음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관유지를 위해 소모되지 않도록 제한,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 제공 협약, 사업종료 후 처분기준 마련 등)

** 상기 예시 외 서비스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통합지원협의체 거쳐 지원 결정

- 인건비는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협업형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모델인 방문의료지원사업의 보건소·시군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한해 지원 가능, 그 외 서비스 제공수입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 판단하에 지원 가능

* 인건비 지원시 지자체가 해당사업 운영방식, 예산 규모, 수행인력 근로관계(고용형태, 인건비 수준)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법령 준수 책임 보유

** 재택의료센터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장기요양 서비스, 지역특화 일상생활돌봄(식사·이동·가사·방문목욕 등) 등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어 서비스 제공수입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불가

④ 아래 항목에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 국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자체 공무원 및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내역

④ 아래 항목에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공무원 인건비 외에 기타 인력 인건비로 집행 불가

2 교육이수

▶ 중앙(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계획)

구분	교육과정	방법	횟수	시간	일수	기당 인원	비고
2026년 교육계획(A+B): 19과정 90회							
A. 집합교육(①+②+③+④+⑤) 12과정 90회							
① 시도 공무원 교육: 1과정 2회							
담당자	시도 담당자 워크숍	대면	2	12	2	45	
② 시군구 공무원 교육: 6과정 66회							
리더	시군구 리더(과장·팀장) 교육	대면	8	12	2	70	
실무자	통합돌봄 사업설명회(권역별)	대면	20	7	1	200	권역별
	통합돌봄 주요지침 안내	비대면	4	2	1	450	
	시군구 기본교육	대면	24	7	1	40	권역별
	시군구 심화교육: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대면	5	12	2	30	
	시군구 심화교육: 케어매니지먼트	대면	5	12	2	30	
③ 보건소 공무원 교육: 1과정 4회							
실무자	보건소 담당자 교육	대면	4	7	1	100	
④ 읍면동: 3과정 14회							
리더	읍면동 팀장 교육	대면	6	12	2	40	
실무자	읍면동 담당자 기본교육	비대면	2	5	1	2,500	
	읍면동 담당자 심화교육	비대면	6	7	1	500	
⑤ 전문인력: 1과정 4회							
공무원 전문기관	통합돌봄 지자체 교육강사 양성 (제도, 사례관리 부문)	대면	4	18	3	30	

B. 이터닝 교육 7과정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터닝 교육								
공무원 + 민간	지역진단을 통한 우리동네 돌봄계획 수립하기	이터닝	상시	2시간 (4차시)		500	2월 ~ 12월	
	통합판정조사와 서비스 이해	이터닝	상시	2시간 (4차시)		500		
	통합돌봄 케어매니지먼트 이해	이터닝	상시	1.5시간 (3차시)		500		
	통합돌봄을 위한 다학제 협력	이터닝	상시	1.5시간 (3차시)		500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천우수사례 (공모전 입선작)	이터닝	상시	2시간 (4차시)		300	9월 ~ 12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이해	이터닝	상시	2시간 (4차시)		300		
읍면동	의료요양 통합돌봄 읍면동 담당자 기본교육	이터닝	상시	2시간 (4차시)		300		

※ 교육과정별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움인 홈페이지 및 별도 공문 발송)

※ 교육수요에 따라 상기 교육과정 목록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주관 교육과정(예시)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주요내용(안)
'26년 교육	시군구	신규 담당자 기본교육	• 정책 및 지침 이해, 사업 기획 및 운영 등
	읍면동	읍면동 신규 팀장교육	• 정책 및 지침 이해, 케어매니지먼트 절차 및 과업 이해 등
		읍면동 담당자 기본교육	• 정책 및 지침 이해, 사전조사 및 종합판정조사의 이해 및 개인별지원계획 적용 등
		읍면동 담당자 심화교육	• 고난도 사례 이해, 다학제 협력 등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정책이해	• 통합돌봄 정책(제도) 개요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공통		• 지역수요 맞춤형 교육,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 예) 지역사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대회 등
교육 일정	• 신규 팀장 및 신규 실무자 기본교육은 정기 인사발령 시기 고려(1월~2월 및 7월~8월 권장) • 직무 심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교육 등은 지자체 일정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교육 주관	시·도(시·군·구)에서 개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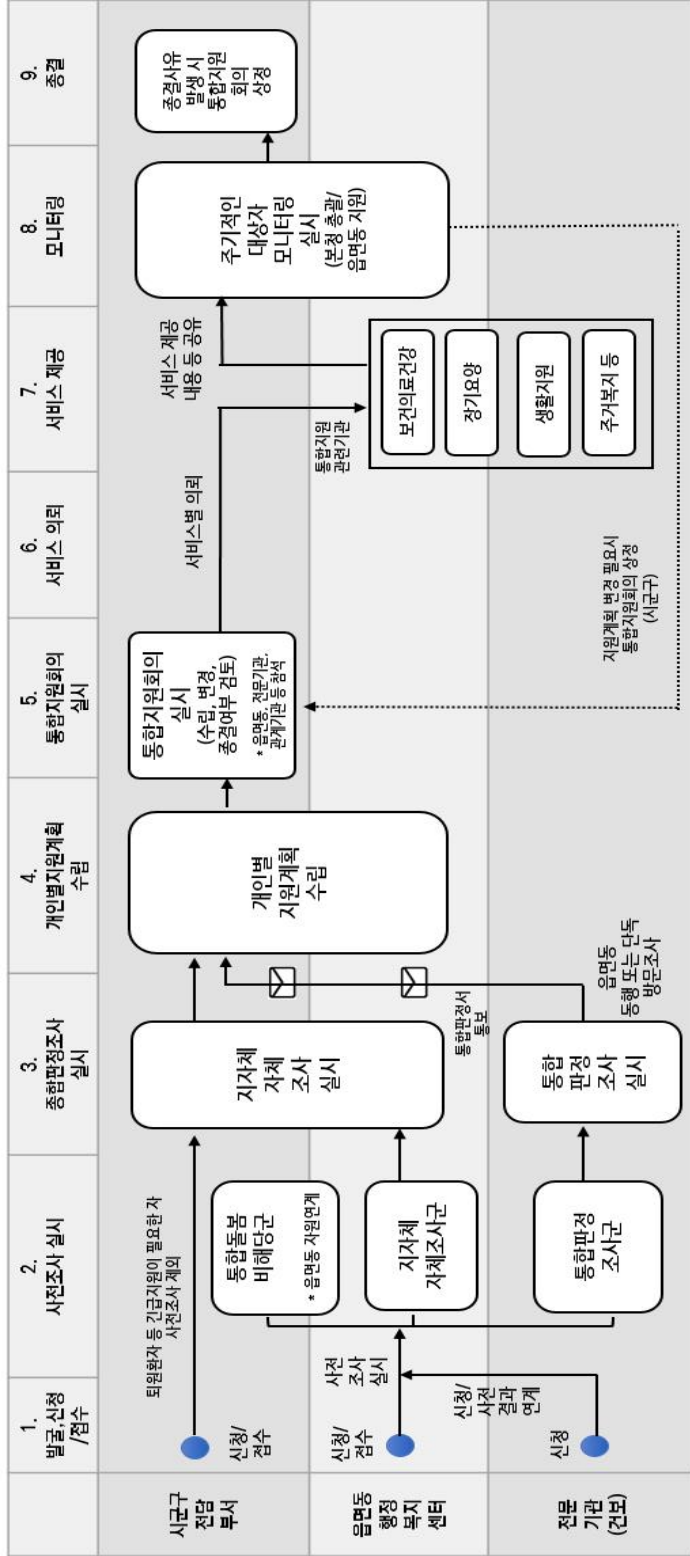
▶ **교육관련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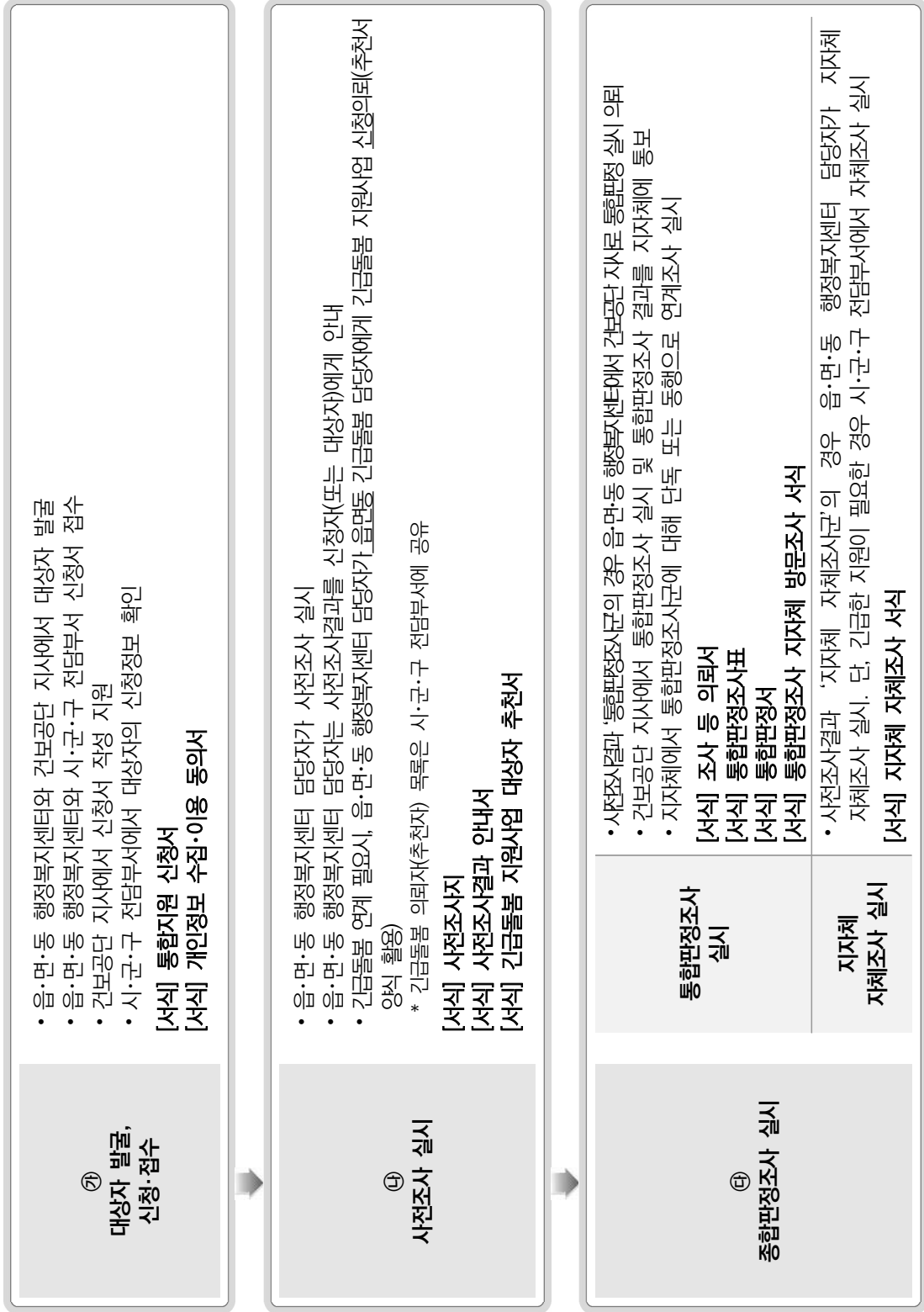
- ⦿ 지자체 전담조직 등에 교육업무 담당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반영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홈페이지에서 통합돌봄 관련 이러닝 교육 상시 운영
 - 읍면동 상담실무자는 「통합돌봄 케어매니지먼트 이해」, 「통합판정조사와 서비스 이해」 이러닝 교육 수료 권고
- ⦿ 집합이러닝 교육 합산하여 연간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 권고
- ⦿ 통합돌봄 교육통계 작성을 위해 시도, 시군구별 자체교육 운영실적 제공 필요
- ⦿ 시도, 시군구 자체교육을 위한 표준교육자료(교안 등)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e다(csp.kohi.or.k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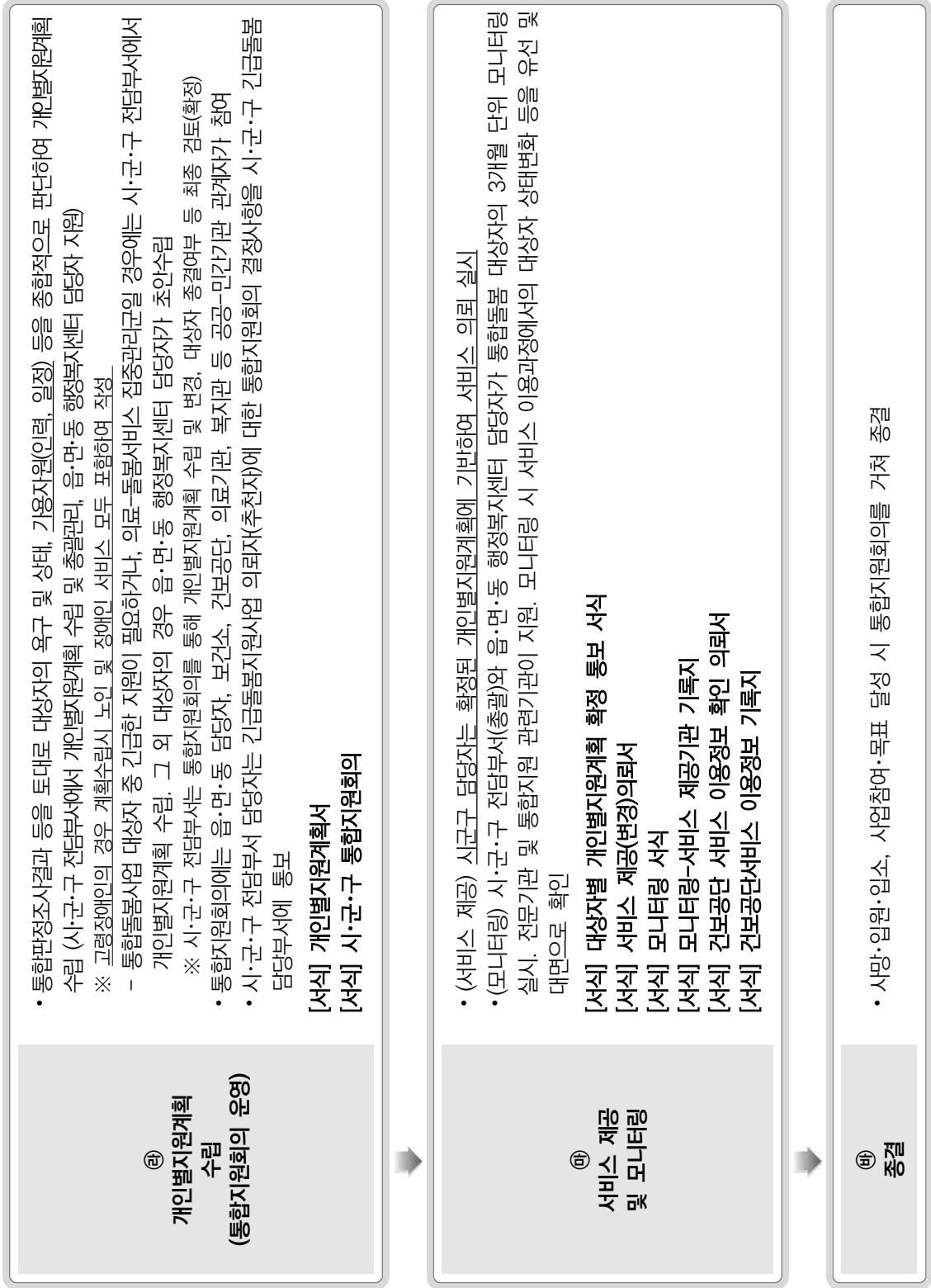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01 업무절차 개관







02 세부 추진절차

1 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인 및 필요서류

- (신청인)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 신청가능 가족의 범위 :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신청 가능자)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다음의 각 기관(시설)의 담당자가 통합돌봄사업 신청 가능
 - ① 법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②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④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외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도 신청 가능)

※ (참고) 다음에 해당하는 요양시설의 장은 퇴소자에게 통합돌봄 사업을 안내하고 퇴소자가 퇴소 사실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퇴소사실 및 퇴소자 성명, 주소 등을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해당 대상자는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절차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다만 이 경우 통보절차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시설안내에 따른다.)
- (직권신청)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아래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합돌봄을 신청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시·군·구가 직접 신청(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4조)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⑥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직권신청 처리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 확인 필요(신청서 서식 중 “직권신청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업무담당자에 의한 통합지원 신청 전문기관의 신청지원” 신청대행 동의란 활용)

- ④ (신청제한) 사전조사 실시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단,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예외 인정
- ④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전담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④ (필요서류) 통합돌봄 신청서 등 신청서 서식 내 필요서류 준비 ... **서식5** **서식6**

▶ **접수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및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원본 서류와 보존매체 모두 보관 필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대상자 신청과정에서 복지멤버십을 활용하여 가입 및 타 서비스 연계 가능여부 우선 확인

※ 복지멤버십 활용 서비스 우선 연계

- 대상자별 연계가능 서비스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규 대상자의 통합돌봄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시 동시신청 안내
 - 행복이음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을 통해 대상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조회(약 80종* 구비 중)
 - 상담 또는 개인별 개인별지원계획 대상자 통보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공기관에 연계·의뢰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가입 시 가구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사전조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 등 입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전조사 결과 입력. 신청과정에서 개인정보 미동의 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

- ※ 건보공단 지사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원본 서류는 지자체(시군구)로 별도 제출

2 대상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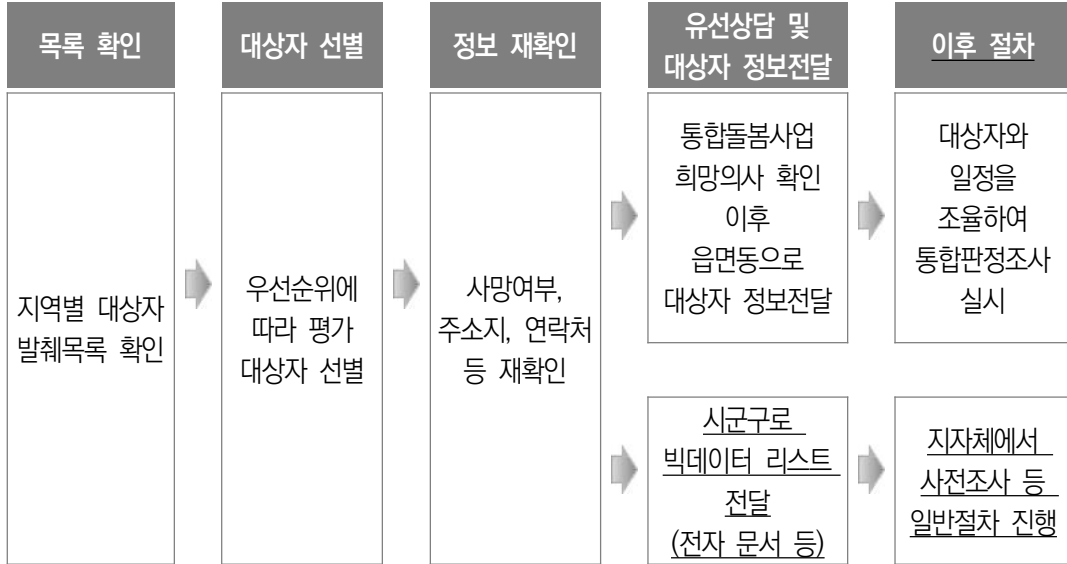
▶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관련 사업대상자 중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에서 발굴된 위기가구, 건보공단 빅데이터 발굴 리스트 등 활용 가능
 - *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스템으로 연계된 대상자 의뢰건의 경우, 주 1회 대상자 발굴 및 의뢰 결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요양정보 빅데이터 등 활용한 발굴

- (대상) 65세 이상의 전국민(우선관리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외자(A,B), 장기요양 각하·기각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자
- (발체 및 선별기준) 인구사회적 정보, 건강·요양정보*를 참고하여 6개월 주기로 발체. 빅데이터로 발굴된 자 중 의료·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자로 우선하여 선별기준 적용
- (발굴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빅데이터로 발굴된 자에 대해서 ①직접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거나, ②지자체에 리스트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도록 수행 가능
 - (①진보 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빅데이터로 발굴된 자 중 통합돌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내용 안내 → 건보공단에서 신청정보 입력(발굴대상자 표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통합판정조사 의뢰
 - ※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로 발굴한 대상자의 경우 사전조사 제외 → 통합판정조사군으로 진행
 - (②지자체 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빅데이터 발굴 리스트*를 시군구로 송부 →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리스트를 송부(전자문서 등) 후 읍면동에서 빅데이터 발굴된 자 중 통합돌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내용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사전조사 수행 등 일반절차로 진행
 -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자 연락처, 등급보유 여부 포함

|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절차 |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3 사전조사

▶ 사전조사 실시 ... 서식7

- ④ (조사주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 신청을 하는 자가 통합돌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사전조사지 작성 지원(작성한 사전조사지는 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으로 제출)
- ④ (조사대상) 통합돌봄사업 신청자(일부 대상자는 제외)

 - ※ 사전조사는 가급적 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와 장기요양 이용지원과정 발굴자, 직권신청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 사전조사 제외
- ④ (조사방법) 대면 또는 유선으로 평가 가능
- ④ (조사내용)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표를 통하여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를 구분(통합판정조사군/지자체 자체조사군/통합돌봄 비해당군)

 - ※ 치매(예/아니오), 7개 ADL* 항목(①독립, ①준비지시 ②일부도움 이상) 구성. 조사자의 주관성 개입 최소화를 위해 그림을 활용한 조사항목, 도움필요정도, 활용도구 등 설명(조사가이드)
 - * ①앉아일어서기, ②이동, ③ 몸씻기, ④ 상의입기, ⑤하의입기, ⑥소변조절하기, ⑦화장실 사용

- ※ 아래 조건에 해하는 경우 각각의 참여기준으로 활용
 - (통합판정조사군) 치매 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의 합산점수가 4점 이상
 - (지자체 자체조사군)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의 합산점수가 2-3점인 경우
 - (통합돌봄 비해당군)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 합산점수 1점 이하 시 종결(제공가능한 돌봄서비스는 안내)
- ④ (조사수행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근무일 기준) 이내 수행

 - ※ 민원처리법에 따른 법정민원 처리기한 5일(접수일 포함) 내 안내가 필요하며, 민원처리 기한 연장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 21조 준수
- ④ (사전조사결과 적용) 사전조사결과를 토대로 ①통합판정조사군, ②지자체 자체조사군, ③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분류

 - (통합판정조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통합판정 의뢰
 - (지자체 자체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 서식에 기반한 의료-돌봄 필요도조사 실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 * 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군·구 전담부서에서 자체조사 실시

- (통합돌봄 비해당군)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적용가능한 지자체 돌봄서비스 등 안내 후 종료 단, 대상자가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정보 연계

※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인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단, 건강상태 변화 등 대상자의 상태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3개월 내라도 재신청 가능

- (사전조사결과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전조사 결과를 안내 ...

서식8

* 사전조사 제외 대상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결과회신방법 (우편/문자)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사전조사결과 안내

※ 사전조사결과 안내 문자메세지 안내(예시)

1) 통합판정조사군

「안녕하세요, 000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합돌봄 사전조사결과, 귀하는 통합판정조사군으로 확인되어 통합판정조사 수행 이후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통합판정조사 관련 진행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자체 자체조사군

「안녕하세요, 000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합돌봄 사전조사결과, 귀하는 지자체 자체조사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진행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추후 재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통합돌봄 비해당군

「안녕하세요, 000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합돌봄 사전조사결과, 귀하는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에서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판정조사 의뢰**

- 사전조사결과 통합판정조사군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사전조사 완료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판정조사 의뢰(통합지원정보시스템) ...

서식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한 자도 건보공단 지사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건보공단 지사에 통합판정조사 의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판정조사 의뢰 시, 통합판정조사 시 동행여부도 함께 체크하여 전달

▶ **긴급돌봄지원사업 의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읍·면·동 긴급돌봄 담당자)**

- ④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로 통합판정조사 의뢰가 되었으나 통합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지원사업 의뢰(「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추천서 활용) ... **서식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긴급돌봄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긴급돌봄 의뢰자(추천자) 목록을 전달 → 시·군·구 전담부서에 공유

4 종합판정조사 실시

가 추진방향

-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의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조사(종합판정조사)는 통합판정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로 이원화하여 실시

|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체계 운영 |

대상자 기준	조사의뢰 [지자체 → 공단]	조사방식	조사도구
통합판정 조사군	통합판정조사 의뢰	건보공단 조사 + 지자체 단독 또는 동행 연계조사(대면조사)	[공단] 통합판정 조사표 [지자체] 연계조사 서식
지자체 자체조사군, 퇴원환자 등	X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대면조사)	지자체 자체조사표

나 통합판정조사 실시

▶ 개요

- ▶ (수행목적)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의 의료-돌봄필요도, 구체적인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조사 실시 및 판정결과 안내
- ▶ (대상자) 사전조사 결과 통합판정조사군으로 분류된 자, 빅데이터 및 장기요양 이용지원과정 중 발굴된 자
- ▶ (통합판정조사의 주요 내용) 15개 영역 94개 항목으로 구성 ... **서식12**
 - (15개 영역) 일반사항, 질병 및 증상 영역, 인지와 의사소통능력 영역, 신체기능 영역, 행동심리증상 영역, 질병관리와 간호영역, 일상생활영역 영역(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활동 수준, 구강과 영양상태, 사회적 관계, 안전성 평가, 정신건강 및 건강행동 문제, 주거환경 평가, 서비스 이용과 희망(서비스 충분성 포함), 복지용구)
- ▶ (통합판정조사 절차) 통합판정조사 실시 → 통합판정조사 결과 지자체 제공

▶ 수행주체 및 방법

- ① (수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② (조사수행)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욕구 및 상태 확인(방문조사 원칙)

※ 건보공단 지사 담당자는 조사 절차 중에 종결사유 발생 인지도 조사 중단 및 지자체에 해당사실 통보
 ※ 통합판정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의뢰 전에 통합판정 건보조사 수행 가능(예시 : 빅데이터 등 건보 발굴자, 장기요양 등급자가 건보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는 경우, 건보지사에 통합돌봄을 신청한 자가 사전조사결과 통합판정조사군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연계조사

- (수행주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조사수행) 통합판정조사군에 대하여 연계조사를 건보공단 동행조사를 권장하되, 상황에 따라 별도조사도 가능(방문조사 원칙) ... 서식13
 * 별도 조사시 대상자에게 안내 필요
- (수행기간) 통합판정조사 의뢰서 접수일 이후 통합판정조사결과 연계까지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 거주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연장 가능
- (대상자) 통합판정 조사 대상자
- (조사내용) 대상자의 생활상태 및 본인부담 가능 여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의사 여부 등을 확인
 * 조사를 수행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연계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개인별지원계획 초안수립 시 '종합의견'에 기입

- ③ (수행기간) 통합판정조사 의뢰서 접수일 이후 통합판정조사결과 연계까지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 거주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연장 가능

- ④ (결과 안내) 통합판정조사 결과는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이후 계획내용과 함께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안내 ... **서식21**

- ⑤ (통합판정조사결과 통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판정조사결과를 시·군·구 전담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통합지원정보 시스템 연계) ... **서식16**

- 통합판정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돌봄통합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자체로 제공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조사 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돌봄통합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자체로 제공

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통합판정결과 내용(시스템 반영) Ⅰ

구분	질병 및 증상	도출 항목	인지와 의사소통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의식 대상자 여부 ■ 질병 및 증상 1) 뇌졸중 2) 파킨슨병 3) 치매 4) 우울증 5) 불면증 6) 신경성 허기내성 7) 발달경화증 8) 고혈압 9) 지혈증 10) 관상동맥질환 11) 울혈성 심부전 12) 당뇨병 13) 간질환 14) 위/십이장 궤양 15) 압 16) 만성기관지염 17) 폐결핵, 결핵 18) 만성 신장 질환 19) 배뇨장애 20) 관절염 21) 요통, 좌골신경통 22) 골절 및 골다공증 23) 기타 근골격계질환 24) 기타 ■ 상시 복용 약 여부 (10개 이상, 복용비순응) ■ 시·청력 저하 증상 ■ 마비, 구축 	전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관련 약 복용 여부 ■ 인지와 의사소통 능력 1) 계절감각 지남력 2) 시간 지남력 3) 장소 지남력 4) 사람 지남력 5) 상황 판단력 감퇴 6) 이해력 저하 7) 지시 불인지 8) 물건의 사용처 불인지 9) 의사표현 장애 10) 의사소통 장애 11) 단기 기억력 12) 장기 기억력 13) 집중력 저하 	'예로 체크된 항목
구분	신체기능	도출 항목	행동심리증상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시 보조기 사용 여부 ■ 일상생활수행시 도움 정도 1) 돌아눕기 2) 일어나 앉기 3)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4) 이동하기 5) 세수하기 6) 양치질하기 7) 몸씻기 8) 상의 벗고 입기 9) 하의 벗고 입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11) 대변조절하기 12) 소변조절하기 13) 식사하기 14) 삼키기 	'준비지시' 이상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정신행동 증상 약 복용 여부 ■ 행동심리증상 1) 망상 2) 환시환청 3) 배회 4) 반복적인 행동 5) 대소변 불결행위 6) 부적절한 행동 7) 언어적 공격성 8) 공격적 행동 9) 폭력 행동 10) 수발치료 거부 11) 불안, 초조 12) 불규칙수면 13) 우울감 14) 무감동, 무기력 	심각도가 '경함' 이상 항목
구분	질병관리와 간호	도출 항목	일상생활 영위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절개관 간호 2) 흡인 3) 산소요법 4) 네블라이저 요법 5) 피부조직 손상 6) 경관영양 7) 통증 8) 배뇨 관리 9) 투석 간호 10) 장루 간호 11) 관장 12) 인슐린 요법 	'예로 체크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나. 활동 수준 다. 구강과 영양상태 라. 사회적 관계 마. 안전성 평가 바. 정신건강 및 건강행동 문제 사. 주거환경 평가 아. 서비스 이용과 희망 자. 복지용구 	전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1) 식사준비하기 2) 빨래하기 3) 집안일하기 4) 물건사기 5) 교통수단 이용하기 6) 약 챙겨먹기 	도출 항목
구분	나. 활동수준	도출 항목	다. 구강과 영양상태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활동수준 2) 신체기능 향상 가능성 3) 신체기능변화 	전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건강문제 2) 영양상태문제 	전체 공개
구분	라. 사회적관계	도출 항목	마. 안전성 평가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루종일 혼자 있음 2) 사회적 교류 3) 지지체계 	전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상경험 2) 낙상 두려움 3) 화기관리위험 4) 야간보행 위험 	전체 공개
구분	바. 정신건강 및 건강행동 문제	도출 항목	사. 주거환경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트레스 2) 자살생각 3) 음주여부 4) 흡연여부 5) 의사처방없이 복용하는 의약품 	전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공간구조·상태 2) 생활설비 3) 주거안전 4) 실내위생 	전체 공개
구분	아. 서비스 이용과 희망	도출 항목	자. 복지용구	도출 항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중인 서비스 여부와 충분성 2) 이용 중인 서비스 3) 이용 희망하는 서비스 	전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 품목(구입, 대여) 2) 희망 품목(구입, 대여) 	전체 공개

I
평가항목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붙임.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내용 및 계획

대영역	중영역	요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기능	생활 기능	식사준비 기능저하	식재료준비하기, 조리하기, 상처리기를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식사준비 지원 - 식사준비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칼배임, 화재 예방 교육 <input type="checkbox"/> 식사 제공 및 배달 - 무료식사제공, 식사배달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지원사업(지자체)
		가사활동 기능저하	청소하기, 빨래하기 및 집안 정리정돈하기를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가사활동 지원(세탁, 청소, 주변정돈 등) - 가사활동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지원사업(지자체)
		외부활동 기능저하	장보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교통수단 이용 등) - 외부활동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범용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시 범용동행 서비스 이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서비스(장기요양 시범/지자체)
자기 돌봄	약 기능저하	의사가 처방한 약 준비하기, 복용하기, 정리하기를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교통수단 제공 <input type="checkbox"/> 약행거먹기 지원 - 약행거먹기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약캘린더, 약보관함 활용 - 흡인 예방 교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이동지원센터(지자체) <input type="checkbox"/>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침상내 자세전환 기능저하	침상에 누운 자세에서 몸을 돌리거나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input type="checkbox"/> 침상내자세전환 지원 - 침상내자세전환 동작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자세전환 방법 교육 - 욕창 예방 교육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용구(욕창매트리스 등) <input type="checkbox"/> 근력강화 및 관절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간호, 주야간보호)
		<p>않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기능저하</p> <p>의자, 침대 등에 걸터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지원 -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낙상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p>이동하기 기능저하</p> <p>실내외에서 위치를 옮겨 움직이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어서기 동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동하기 지원 - 이동하기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낙상 예방 교육 - 복지용구인내(자전거,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경사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간호, 주야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서비스(장기요양 시범/지자체) 	
		<p>세면활동 기능저하</p> <p>세면대에서 세수하기, 양치하기를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동하기 동작 훈련 - 근력 및 평형감 강화, 보행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안전한 이동환경조성 - 인편손잡이, 문턱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간호, 주야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지자체) 	
		<p>목욕하기 기능저하</p> <p>욕실에서 몸을 씻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면활동 지원 - 세면하기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보조도구 활용 안내(전동칫솔, 구강세정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면활동 동작 훈련 - 상지관절 및 양손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간호, 주야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병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영역	중영역	요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p>목욕리프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목욕하기 동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지근육 및 균형 훈련 <input type="checkbox"/> 욕실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전바 설치, 운수 및 사위키 설치 점검 및 교체 <input type="checkbox"/> 옷입고벗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입고벗기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편안한 옷 안내(짜깁이(벨크로), 여밈웃, 고무줄버지 등) <input type="checkbox"/> 옷입고벗기 동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지근육훈련 등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사용하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사용하기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 복지용구 안내(이동용변기, 간이변기 등) - 환경조성(조명, 인전바 등)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사용 동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립·보행, 배설동작 등 <input type="checkbox"/> 화장실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전바 설치, 변기 등 설비 점검 및 교체 <input type="checkbox"/> 대소변 처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변 유도 및 처리, 기저귀교환, 침대표(이불)관리 - 위생관리 및 피부감염 예방 - 복지용구 안내(오실금패드) <input type="checkbox"/> 대소변 조절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반저근 운동(Kegel 운동) 지도 	<p>서비스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지원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p>옷입고벗기 기능저하</p>	<p>단추나 지퍼가 있는 상하의를 입고 벗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p>		
		<p>화장실 사용하기 기능저하</p>	<p>화장실 내에서 변기로 이동하기, 용변보기, 뒷정리하기를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p>		
		<p>배설조절 기능저하</p>	<p>대소변을 참거나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실금/실변이 있는 상태</p>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식사하기 가능저하	수저로 음식을 떠서 입에 넣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식사하기 지원 <input type="checkbox"/> 식사하기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input type="checkbox"/> 식사보조도구 안내(숟가락, 포크, 식기 등) <input type="checkbox"/> 흡인 예방 <input type="checkbox"/> 식사하기 동작 훈련 <input type="checkbox"/> 상지훈련, 인지훈련 <input type="checkbox"/> 삼키기 지원 <input type="checkbox"/> 삼키기 동작 지켜보기 및 지시/동작 보조 <input type="checkbox"/> 흡인 예방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가의료급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보건소)
		삼키기 가능저하	입안의 음식물을 삼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삼키기 훈련 <input type="checkbox"/> 삼키기 체조, 마사지 <input type="checkbox"/> 영양상담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의 크기나 질감, 점도 조정 <input type="checkbox"/> 인지기능훈련 <input type="checkbox"/> 인지지극활동(기억력, 지남력, 집중력 훈련 등)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조성(위험한 물건치우기, 장소 표시 등)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정신증상관리 <input type="checkbox"/> 정신증상 관찰 및 정서적 지지 <input type="checkbox"/> 다른 이야기나 활동으로 관심 돌리기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input type="checkbox"/> 자/타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물건 치우기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인지행 등	인지정신 행동	인지가능저하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생각하고 처리하는 기능 등이 저하된 상태 -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등	<input type="checkbox"/> 정신증상 <input type="checkbox"/> 사실과 다른 잘못된 생각을 믿거나, 외부 자극이 없는데 있다고 느끼는 상태 - 망상, 환각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민전환경조생시범사업(장기요양)

II. 사업추진절차, 노인편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정신행동증상관리 - 정신행동증상 관찰 및 정서적 지지 - 다른 이야기나 활동으로 관심 돌리기 - 돌봄제공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실종 및 낙상 예방 - 복지옹구 안내(배회탐지기 등) - 실종대응관리(비상연락망, 지문등록서비스) - 야간조명, 출입문 안전장치 등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영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영문요양, 주간보호, 복지옹구)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장기요양)
		문제행동증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 -배회, 공격행동, 반복행동, 불결행동, 부적절한행동, 거부행동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수면장애 증상관리 - 수면일지 작성 및 모니터링 - 생활습관 개선교육(낮잠, 카페인 섭취제한 등) - 수면환경 조성(소음, 조명, 온도, 침구 등)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영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면장애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증상관리 - 정서적 증상 관찰 및 정서적 지지 - 규칙적인 일상생활 돕기 -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 위험물건 제거(칼, 기구 등)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영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신건강		정서적 증상	기분이나 감정이 부정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표현되는 상태 - 우울, 불안, 무감동 등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약물요법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스트레스 과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자극)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증상관리 -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 여가, 문화, 신체활동 참여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영역	중영역	요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자살위험	자살위험	자살생각을 표현하거나 자살준비를 하는 등 자살행동을 할 위험이 높은 상태	<input type="checkbox"/> 자살위험 관리 - 지속적 모니터링 - 위기개입 및 긴급상담 - 응급안전망 구축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지역 경찰, 소방서
			술을 매일 장기간 섭취하며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알코올중독 관리 - 상담 및 사례관리 -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 가족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중독관리서비스(중독관리통합센터)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보건소)
	의사소통 가능저하	의사소통 가능저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훈련(경청, 자기표현 등) - 의사소통 보조기구(글자판 등) 안내 - 환경조성(소음, 조명 관리)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여가서비스(노인복지관, 경로당)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수행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시청력기능 보조 - 보조기기(안경, 보청기 등) 사용 안내 - 시력 및 청력 재활프로그램 안내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의료·간호 처치	기본·요구 처치	호흡기계 처치	호흡기능유지를 위한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 기관절개관, 인공호흡기, 흡인, 산소요법, 네블라이저	<input type="checkbox"/> 시청력기능 개선/회복을 위한 수술지원 <input type="checkbox"/> 환경관리 - 위험한 물건 제거, 미끄럼방지 등	<input type="checkbox"/> 안경진, 개인수술지원(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료비지원(개인수술)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시범사업(장기요양)
			인공관 또는 할관(장맥)을 통해 영양공급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 비위관, 위루, 중심정맥, 말초정맥 등	<input type="checkbox"/> 호흡기계처치 - 기관절개관, 인공호흡기, 산소요법, 흡인, 네블라이저 <input type="checkbox"/> 호흡간호 및 교육 - 호흡상태 관찰(호흡관, 가래, 입술색깔 등) - 합병증 예방(흡인방지, 감염 등) - 환경조성(환기, 온습도 유지)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추진의시범사업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input type="checkbox"/> 인공영양 간호 및 교육 - 튜브 관리(주입 양 및 속도, 관 소독 및 건조 등) - 피부상태 관찰(비위관, 위루관, 정맥주입 피부) - 합병증 예방(흡인성 폐렴 및 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투석	인공적으로 체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 복막투석, 혈관투석	<input type="checkbox"/> 투석처치 - 복막투석(재가가능) - 혈액투석(의료기관 방문)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인공투석(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배뇨 처치	소변을 배출시키는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 단순도뇨, 유치도뇨, 요루	<input type="checkbox"/> 투석 간호 및 교육 - 대상자 관찰(피로, 구토, 부종, 피부가려움증 등) - 영양관리(식이요법 등) - 합병증 예방(투석혈관폐색, 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배변 처치	대변을 배출시키는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 단순도뇨, 유치도뇨, 요루	<input type="checkbox"/> 배뇨처치 - 단순도뇨, 유치도뇨, 요루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배변 처치	대변을 배출시키는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 관장, 장루 등	<input type="checkbox"/> 배변문제 간호 및 교육 - 배변상태(대변양, 색, 냄새 등) 및 요루 부위 피부관찰 - 도뇨관 관리(관삽입 부위 소독, 소변백 교환 등) - 합병증 예방(출혈, 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방문간호관리(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배변처치 - 장루, 관장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배변문제 간호 및 교육 - 배변상태(대변양, 색 등) 및 장루 부위 피부(발적, 출혈 등) 관찰 - 영양관리(고섬유질, 수분 섭취 권장) - 합병증 예방(출혈, 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방문간호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증상관리 처치	육창 처치	육창 처치	피부에 발생하는 궤양이 있어 상처관리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육창처치(궤양 포함) - 육창부위(궤양) 드레싱 및 통증관리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육창간호 및 교육 - 육창상태 관찰 - 규칙적 체위변경 - 영양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술 창상 처치	수술로 인한 상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수술창상 처치 - 수술창상 부위 드레싱 및 통증관리	<input type="checkbox"/> 퇴원환자지원 연계사업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수술창상 간호 및 교육 - 수술창상 부위 관찰 - 합병증 예방(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당뇨발 처치	당뇨발 처치	당뇨로 인해 발생한 발의 궤양이나 과사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당뇨발 처치 - 당뇨발 상처 드레싱 및 통증관리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당뇨발 간호 및 교육 - 당뇨발 관리(정결, 상처예방 확인 등) - 당뇨관리 - 합병증 예방(출혈, 감염 등)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통증 처치	통증 처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거나 중등도 이상 통증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진통제 투여 - 미약성진통제, 일반진통제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호스피스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통증간호 및 교육 - 비약물요법(온냉요법, 이완요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비/구축 처치 - 재활치료, 약물요법 	<p>근육이 굳어지거나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처치를 받고 있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마비/구축 처치 - 재활치료 - 약물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재활환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방문재활/운동보조(지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술린 요법 	<p>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술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마비/구축 간호 및 교육 - 관절가동운동, 근육스트레칭 및 마사지 - 관절굴곡방지 보조기구 안내(부목 등) - 복지용구 안내(자세변환 도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재활환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행동 	<p>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음주, 처방받지 않은 약물 오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술린 투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가정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건강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충분한 영양섭취 	<p>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술린 요법 교육 - 자가혈당측정 - 인술린 투여 및 관리(인술린 보관, 투여방법 등) - 저혈당 대처 방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영양섭취 관리 - 영양상태평가, 교육 및 상담 - 영양보충식품 제공(고단백, 고칼로리식품 등) - 체중 및 탈수 상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증진사업/흡연, 음주(보건소)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증진사업/흡연, 음주(보건소)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S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방문요양, 주(긴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건강 문제 관리	식욕부진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여 식사량이 적거나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	□ 식욕자극 및 관리 - 식욕부진 원인 파악 - 식욕자극활동 안내(기본전화, 신체활동, 식단 차림 등)	□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 통합건강진사업/영양(보건소)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근육 및 골격을 사용하는 신체움직임이 적은 상태	□ 신체활동 지원 - 신체활동평가 및 상담, 지식관찰 - 일상생활활동 격려 및 운동프로그램 참여 - 신체활동 및 운동 교육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건강백세운동교실 □ 통합건강진사업/신체활동(보건소) □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중문제	저체중 또는 과체중인 상태 -저체중: BMI 18.5미만 과체중: BMI 230이상	□ 체중 관리 - 체중 모니터링 - 영양교육 및 상담 - 신체활동교육 및 상담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건강백세운동교실 □ 통합건강진사업/영양, 신체활동(보건소) □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입안과 치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상태 - 틀니, 구강위생불량, 저작불편, 구강내외 증상 등	□ 구강위생관리 - 구강관찰 및 상담 - 잇솔질 및 임플란트관리 - 구강건강조관리	□ 통합건강진사업/구강(보건소)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방문구강사업(지자체)	
	구강건강문제	구강건강문제	□ 틀니위생 및 관리 - 틀니세척 - 틀니 불편감 관리(헹거름 등)	□ 노인의치보철(보건소) □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 통합건강진사업/구강(보건소)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장애인구강진료(장애인구강진료센터)	
□ 구강질환관리 - 구내염관리 - 턱의 통증관리 - 스케일링			□ 통합건강진사업/구강(보건소) □ 치과진료(지파) □ 장애인구강진료(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방문구강사업(지자체)		
육상위험	피부에 가해지는 지속적 압력으로 인해 궤양 등의 피부손상 위험성이 있는 상태	□ 욕창발생 위험관리 -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 완화(체위변경 등) - 피부관찰 및 위생관리(피부, 침구 등) - 복지용구 안내(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자세변환도구)	□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방문요양, 복지용구)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낙상위험	넘어지거나 떨어져 골절 등 손상 위험성이 있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위험요소 제거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관리(조명, 실내외 장애물 제거 등) - 이동보조기구 관리(고장점검, 사용법 안내 등) - 복지용구 안내(안내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input type="checkbox"/> 낙상예방 간호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강화(근력, 균형감 등) - 응급상황 대처 교육(비상연락망 준비 포함) <input type="checkbox"/> 재활 및 운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기동범위 내 운동 지원(능동, 수동) - 근력운동, 균형운동 <input type="checkbox"/> 자세관리 및 일상생활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유지 및 변경(베개 등 이용) - 복지용구 안내(자세변환 도구 등) <input type="checkbox"/> 감염관리 교육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손씻기, 양치질 등) - 환경관리(환기, 집안청소 및 쓰레기관리, 소독) - 보호구 착용(마스크, 장갑 등)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사서비스사업(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방문요양, 주0긴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진사업/신체활동(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0긴보호, 방문간호, 복응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주0긴보호, 방문간호,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서비스(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서비스(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진사업/심뇌혈관질환(보건소) <input type="checkbox"/>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추진서비스사업
		감염위험	체내에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등)가 침범하여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감염관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혈압측정 - 복약지도 - 신체활동, 식이관리, 스트레스 관리 <input type="checkbox"/> 검사 및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처방 및 검사 - 합병증 관리(시력저하, 심뇌혈관 질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서비스(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서비스(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진사업/심뇌혈관질환(보건소) <input type="checkbox"/>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추진서비스사업
		혈압조절문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검사 및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처방 및 검사 - 합병증 관리(시력저하, 심뇌혈관 질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대영역	중영역	요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혈당조절문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혈당관리 교육 - 자기혈당측정 - 복용지도(인슐린 요법 포함) - 당뇨식, 신체활동 <input type="checkbox"/> 검사 및 처방 - 약물처방 및 검사 - 합병증 관리(시력저하, 당노발 등)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건강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통합건강진사업/심뇌혈관질환(보건소) <input type="checkbox"/>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다제약물 복용	하루 10개 이상의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약물점검 및 상담 - 처방약 확인, 조정, 설명 - 복용지도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복약지시 불이행	처방약의 용량, 시간, 방법 등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복용지도 및 상담 - 약물 점검 및 모니터링 - 복용지도(투약 중요성, 부작용 등) - 돌봄제공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의료이용추약	재가에서 의료적 처치 및 집중적 건강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집중적 의료관리 - 간호처치, 자살위험 예방, 문제행동 관리, 영양관리	<input type="checkbox"/>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대영역	중영역	요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사회·돌봄관계	사회적 교류 부족	가족, 친구 및 이웃과의 만남이나 연락이 제한되거나 단절된 상태	가족, 친구, 이웃 및 지역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활동 참여 안내 - 가족, 친구 모임 권유 - 여가활동프로그램 - SNS활동 <input type="checkbox"/> 가족 상담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재가급여(주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노인여가서비스(노인복지관,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관 <input type="checkbox"/> 가족센터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관 <input type="checkbox"/>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관 <input type="checkbox"/> 자선/봉사서비스(자원봉사단체/종교단체 등)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가족, 친구, 이웃 및 지역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	가족, 친구, 이웃 및 지역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자원 탐색 및 연계 - 필요서비스 확인 및 연계 - 사회적 관계망 확대(이웃, 자선/종교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읍면동찾아가는보건복지
	돌봄 취약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집중적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집중적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집중 사례관리 - 사회복지돌봄망 연계, 집중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읍면동찾아가는보건복지
사회지 지·주거환경	돌봄위기 (학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피해를 입거나 방임·유기되는 등 학대 위험이 있는 상태	<input type="checkbox"/> 학대 의심자 안전 보호 - 주기적 관찰 - 의심 시 신고 및 보호조치 - 인권 보호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노인학대보호서비스(노인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경찰 <input type="checkbox"/> 노인학대보호서비스(노인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학대사례관리(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거공간 구조·상태 불량	주거공간 구조가 불량하거나 노후된 상태 - 벽, 바닥, 천장, 조명, 부엌 및 화장실 위치 문제	<input type="checkbox"/> 주거공간 개보수 - 벽, 바닥, 천장, 조명 등 상태 점검, 보수 - 조명 교체 - 화장실 및 부엌 위치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정성시범사업(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케어안심주택 <input type="checkbox"/> 주거복지지원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맞춤형주택개보수지원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자체)	
주거 환경	생활설비 문제	주거공간 내 설치되어 있는 장비 및 기구 등이 불량한 상태 - 냉난방, 운수, 양변기, 샤워기, 세면대 문제	<input type="checkbox"/> 설비 교체 - 냉난방, 운수, 양변기, 샤워기, 세면대 등 교체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정성시범사업(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케어안심주택 <input type="checkbox"/> 주거복지지원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맞춤형주택개보수지원사업(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자체)	

대영역	중영역	육구문제목록	정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계획
			<p>□ 설비 점검</p>		<p>□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p>
		<p>주거환경이 안전하지 못해 사고 및 부상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 - 화재경보기, 가스차단기, 미끄럼방지, 실내외 경사로 문제</p>	<p>주거공간 안전장치 설치 및 교체 - 안전장치 점검, 설치, 교체(화재경보기, 가스차단기, 미끄럼방지, 실내외 경사로) - 안전사고 대응 조치 안내</p>	<p>□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장기요양)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케어안심주택 □ 주거복지지원사업(지자체) □ 고령자맞춤형주택개보수지원사업(지자체) □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자체)</p>	
		<p>실내 환경이 청결하지 못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 - 환기, 곰팡이, 해충, 악취, 쓰레기 관리 문제</p>	<p>□ 주거공간 실내 위생관리 - 쓰레기 수거, 소독 및 방역, 환기 등</p>	<p>□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긴급돌봄지원사업 □ 재가의료급여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방역소독(보건소 등)</p>	

다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 개요

- (수행목적)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의 의료-돌봄서비스의 필요도 확인
- (대상자) 사전조사에서 지자체 자체조사군으로 분류된 자, 직권신청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

* 퇴원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중앙 시범사업(예: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공공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등) 또는 퇴원환자 연계 관련 지자체 특화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자평가 및 퇴원계획, 지역사회 연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지자체 자체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병원에서 수립한 계획을 활용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생애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환자 평가 및 돌봄계획을 실시한 경우, 지자체 자체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병원에서 수립한 계획을 활용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단, 퇴원환자 및 생애말기환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환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 (주요 내용) 시의성 높은 지원, 대상자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 필요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9개 영역 57개 항목으로 구성 ... **서식14**
 - (대상자 특성) 성별, 연령, 주수발자 현황, 현재 서비스 이용현황 등
 - (7개 영역) 주거환경상태, 일상생활기능, 도구적일상생활기능, 식사기능, 인지심리기능, 병의원 이용, 이동지원 등 파악
 - (서비스 유형별 필요여부 및 종합의견) 조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 내용 확인 및 조사자의 의견 기술
 - ※ 지자체 자체조사군의 경우에도 필요 시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력 확인 가능

▶ 수행주체 및 방법

- 사전조사에서 지자체 자체조사군으로 분류된 자
 - (수행주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조사수행방법)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욕구 및 상태 확인
 - (조사결과 반영)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수행기간) 대상자 접수결과 안내일 이후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수행
 - ※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 거주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연장 가능

④ 직권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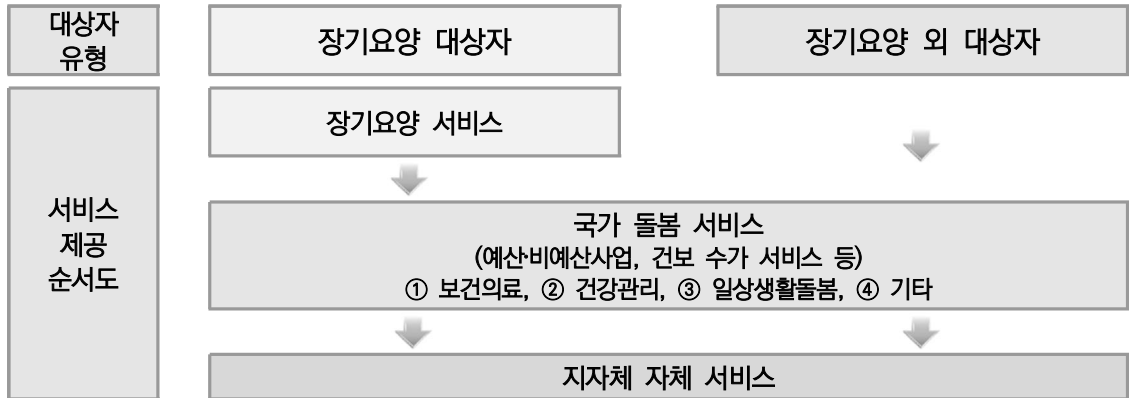
- (수행주체)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
- (조사수행방법)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욕구 및 상태 확인
- (조사결과 반영)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수행기간) 대상자 접수결과 안내일 이후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수행
 - ※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 거주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연장 가능

④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

- (수행주체)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
- (조사수행방법)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욕구 및 상태 확인
- (조사결과 반영)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수행기간) 대상자 접수결과 안내일 이후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수행
 - ※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 거주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연장 가능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통합돌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흐름도 |



| 통합돌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요약표 |

	구분	공통	장기요양 대상자	장기요양 외 대상자
보건의료	① 방문진료 ② 치매관리 ③ 정신건강관리 ④ 만성질환관리 ⑤ 치매주치의 ⑥ 퇴원환자 지원	○		
건강관리	① 방문건강관리 ② 노인운동프로그램 ③ 스마트기기 ④ 다제약물	○		
장기요양	① 재가급여 ② 주·야간 단기 보호 ③ 재택의료 센터 ④ 통합재가 ⑤ 가족휴가제		○	
일상생활 돌봄	① 노인맞돌 ② 응급안심	○		○
지자체 자체 서비스 * 장기요양, 노인맞돌 등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는 제공불가	① 방문의료 지원사업 ② 퇴원환자 연계 ③ 일상생활돌봄 ④ 방문목욕 및 이미용 ⑤ 기타	○		

▶ 개요

- ① (개념)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목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 ② (대상자)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통합판정조사,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한 대상자, 퇴원환자 관련 시범사업에서 연계된 자
- ③ (조사결과 안내 및 상담) 시·군·구 전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주요 욕구를 확인하고, 통합돌봄사업의 상세내용을 안내하며 희망하는 서비스 등 재확인
- ④ (계획수립) 시·군·구 전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서식18**

※ 계획수립 시 지역 특화서비스 지원 보다는 장기요양, 노인맞춤형돌봄 등 기존 서비스 연계를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

- (시·군·구 전담부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등)와 통합판정조사 결과 의료-돌봄필요도가 높은 집중관리 대상자*는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가 계획 수립.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가 수립한 계획은 그대로 통합지원회의 상정

* 의료-돌봄필요도가 높은 집중관리 대상자

- 통합판정결과에서 아래의 주요 고려사항에 해당될 경우 시스템 상 '집중관리 대상자'로 표기하여 시·군·구 정보 연계
 - (주요 고려사항) 통합판정결과 요양병원군, 질병관리와 간호영역 1개 이상(인공호흡, 욕창 등), 정신적 문제(우울, 자살시도), 중중치매(행동심리증상, 지남력 저하), 5개 이상 만성질환/약행거 먹기(완전도움)/영양부족 등의 상태이면서 사회자원이 없는 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외 통합판정조사 대상자와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한 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가 초안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의 검토·조정 후 통합지원회의 상정

- ⑤ (예외적 사후승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에 상정·승인 후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초안에 따라 선 서비스 지원 후 통합지원회의 승인 가능

*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기각자, 퇴원환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직권신청 대상자, 의료기관에서 연계된 퇴원환자 및 생애말기환자, 이에 준하는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작성방법

(1) 통합판정조사결과를 반영한 계획수립

- (주요 욕구) 통합판정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욕구·문제목록(통합판정서) 모두 체크
 - 통합판정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욕구·문제와 대상자가 요청하는 욕구가 상이한 경우 담당자가 파악한 대상자의 현황 기술,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판단 ... 부록 참고
 - (통합판정서 주요 욕구문제목록(5개 대영역, 11개 중영역, 58개 욕구·문제목록 분류))
 - (기능) 생활기능, 자기돌봄
 - (인지행동) 인지정신행동, 정신건강, 의사소통
 - (의료·간호 처치) 기본욕구처치, 증상관리처치
 - (건강관리) 건강관리행동, 건강문제관리
 - (사회지지·주거환경) 사회돌봄관계, 주거환경
- (서비스 제공목표) 대상자의 욕구·문제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1~3순위)
- (필요서비스) 통합판정서의 대상자별 욕구·문제를 참고하여 연계·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의 특화서비스를 포함한 영역별 서비스(보건의료, 건강관링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기타) 기재
 -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서비스 제공 주기와 제공기관 등 기재
- (종합의견 등) 상기 작성내용 이외 담당자의 추가 검토의견,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유선으로 확인) 등 기재
 - 통합판정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 동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파악한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종합의견 란에 기술
 - 통합지원회의 상정 전, 개인별지원계획의 종합적인 내용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당사자의 의견 등이 종합의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

(2)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를 반영한 계획수립

- (주요 욕구 및 서비스 내용) 지자체 자체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대상자 욕구(문제)를 확인하고, 필요서비스(예시)를 반영한 계획수립
 - 대상자가 요청하는 욕구와 담당자가 판단한 욕구가 상이한 경우 담당자가 객관적인 대상자의 현황 기술,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판단

- (일상생활기능) 일상생활기능, 식사기능 및 섭취정도, 이동가능여부 등
→ (서비스 예시) 가사, 이동, 식사지원 등
 - (인지심리기능) 단기기억력, 의사결정인식기술, 우울정도
→ (서비스 예시) 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 (의료적 욕구)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기타 통증여부 등
→ (서비스 예시)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등
 - (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 필요여부 등
→ (서비스 예시) 주거환경개선, 주거지이동(케어안심주택) 등
- ④ (서비스 제공목표)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1~3순위)
 - ④ (필요서비스) 자체의 특화서비스를 포함한 영역별 서비스(보건의료, 건강관령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기타)를 대·중·소 분류로 구분하여 기재
 - 대상자에게 제공될 서비스별 제공 주기와 제공기관 등 기재
 - ④ (종합의견 등) 상기 작성내용 이외 담당자의 추가 검토의견,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유선으로 확인) 등 기재
 - 통합지원회의 상정 전, 개인별지원계획의 종합적인 내용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당사자의 의견 등이 종합의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

Ⅰ 주요 욕구(문제)에 맞춘 서비스 제공목표 내용(지자체 자체조사외의 경우) Ⅰ

자체조사 문항	자체조사 문항체크 여부	주요 욕구(문제)	결과서 안내 (주요 욕구)	서비스 제공목표
주거환경 1) OR 2)인 경우	1) 주거상태가 노후로 체크된 경우 2) 조명, 문턱여부, 계단, 집인의 안전손잡이 여부에서 1개 이상 불량이 체크된 경우 - 모든 항목에서 1가지 이상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체크된 경우	주거환경 미흡	주거환경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일상생활수행기능	- 모든 항목에서 1가지 이상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체크된 경우	일상생활기능 저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기능	- 모든 항목에서 1가지 이상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체크된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기능 저하	일상생활기능	자립적 일상생활 지원
식사기능 1) OR 2)인 경우	1) 음식 씹는 기능(①, ②) 2) 음식 삼키는 기능(①, ②)	식사기능 저하		
이동지원 1) OR 2)인 경우	1) 실외보행 어려움(①) 2)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②)	자립적 이동 미흡		
인지심리기능 1) OR 2) OR 3)인 경우	1) 단기기억력(②, ③) 2) 의사결정기술(②, ③, ④) 3) 우울정도(두 가지 모두 ①)	인지기능 저하	인지심리기능	인지기능 증진·예방 및 관리
병원 이용 1) OR 2) OR 3)인 경우	1) 정기적 방문 병원여부(②) & 병원 못간 경험(①) & 내원 못한 이유(②) 2) 대리처방여부(①) 3) 기타 통증(②, ③)	의료·간호처치 미흡	의료적 욕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건강관리 도움

참고 개인별지원계획서 내 서비스 내용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명	국가/ 지자체
보건 의료 (1)	방문진료(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1), 상담 및 교육(2), 약물처방 및 탈처방(3), 예방접종(4), 의료처치(욕창, 루, 튜브관리 등)(5), 감염관리(6), 응급상황(7), 기타(8)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방문간호(2)	건강관리(1), 간호관리(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방문재활(3)	기초사정(1), 상담 및 교육(2), 운동관리(3), 작업치료(4), 기타(5)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4)	비대면진료(1), 이동진료(2), 퇴원환자연계(3), 임종케어(4), 기타(5)		
건강 관리 예방 (2)	방문구강관리(1)	기초사정(1), 상담 및 교육(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방문복약관리(2)	기초사정(1), 상담 및 교육(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건강관리(3)	기초사정(1), 프로그램 제공(운동/인지)(2), 자원연계(3), 생활습관개선 상담 및 교육(4), AI-IoT 건강관리(5), 방문건강관리(6), 기타(7)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장애인 건강관리(4)	재활서비스(1), 통합건강관리 지원(2), 장애인친화건강검진(3), 장애인친화 산부인과서비스(4), 기타(5)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치매전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1), 치매환자쉼터(2), 치매가족지원(3), 조호물품 제공(4), 치매환자 비대면진료(5), 치매환자 방문진료(6), 치매사례관리(7), 기타(8)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정신건강관리 (6)	정신질환 상담 및 사례관리(1), 정신질환 예방 및 재활(2), 위기상담(3), 교육 및 정보제공(4), 기타(5)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7)	기타(1)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장기 요양 (3)	방문요양(1)	신체활동지원(1), 인지활동지원(2), 인지관리지원(3), 정서지원(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5)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방문간호(2)	건강관리(1), 간호관리(2)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방문목욕(3)	차량내 목욕(1), 가정내 목욕(2)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주야간보호(4)	신체활동지원(1),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2), 건강 및 간호관리(3), 기능회복훈련(4)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단기보호(5)	신체활동지원(1),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2), 건강 및 간호관리(3), 기능회복훈련(4)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복지용구(6)	복지용구 대여(1), 복지용구 구입(2)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7)	통합재가(1), 기타(2)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
평가원서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비스명	국가/ 지자체
일상 생활 돌봄 (4)	일상생활지원(1)	세수 및 목욕하기(1), 옷갈아입기(2), 집안내 이동하기(3), 화장실 이용하기(4), 식사하기(5), 기타(6)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가사지원(2)	청소하기(1), 빨래하기(2), 식사준비(3), 기타(4)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이동지원(3)	외출동행(1), 차량지원(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식사지원(4)	도시락배달지원(1), 식재료 구입 지원(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방문이미용(5)	이미용서비스 제공(1)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의사소통지원(6)	보청기 지원(1), 수화통역지원(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스마트돌봄(7)	안부확인(1), 정서지원(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8)	기타(1)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주거 복지 (5)	주거공간개선(1)	주거안전지원(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1), 주거환경보수(전등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2), 방역소독(3), 기타(4)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주거지지원(2)	중간집(1), 장기거주지 지원(케어안심주택 등)(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3)	기타(1)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 (6)	농업-돌봄연계 (1)	케어팜 조성 및 운영(1), 기타(2)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건강-돌봄 통합지원(2)	건강돌봄교실 운영(돌봄경로당 등)(1), 기타(2)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돌봄특화 주민참여(3)	돌봄매니저(활동가) 양성(1), 건강리더 양성(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상시돌봄지원 (4)	돌봄콜 운영(1), 24시간 상시돌봄(2), 기타(3)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기타(5)	기타(1)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6 통합지원회의

▶ 개요

- ① (개념) 지역내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개최·운영관리
- ② (운영주기 및 방법) 월 2회 이상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권고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면/비대면/서면회의방식을 다양하게 활용
 - (신규 대상자) 신규 대상자의 경우 대면(권장) 또는 비대면회의를 통한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 (기존 대상자) 기존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종결여부 결정 등은 비대면회의 및 서면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
 - * 회의 운영 및 진행관련 주요 회의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서식19**
 - ** 통합지원회의시 외부위원에게 통합지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작성 ... **서식20**
- ③ (구성) 시·군·구 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장애, 노인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 * 병의원, 사회(노인,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기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주요 내용

- ①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계획된 서비스 내용의 적합성 논의 및 추가적인 검토의견 등 제시 → 최종 확정
 - 시·군·구 전담부서 내 담당자가 지원계획 내용 설명, 참석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회의 진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사업 연계, 장기요양서비스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 ②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과정에서 욕구·상태변화 확인, 서비스 부적합 시 통합지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변경
 - 다음 ①과 ②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회의 승인 전 서비스 제공 후 추후 진행 가능(사후승인)

* ①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로 판정

② 대상자에 대한 계획 변경을 통한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 (대상자 종결)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거나 대상자의 참여 거부 등 종결사유에 해당될 경우 통합지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종결 처리

▶ **개인별지원계획 확정·통보**

- ⦿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자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안내 ... 서식21
 - (계획내용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대상자(보호자)에게 최종 승인된 개인별지원계획 안내(통보서 발송)
- ⦿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 서식22

▶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의뢰한 경우 통합지원회의 결정사항 통보(공문)**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 → 시·군·구 긴급돌봄 담당자)

- ⦿ 대상자 의뢰·접수 절차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의뢰한 대상자의 경우, 통합지원회의 결정내용 공유 필요(보충성 요건 해제 시 긴급돌봄 종료)
 - * 긴급돌봄 담당자가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원 서비스 명칭 등'을 포함하여 송부

7 서비스 의뢰 및 제공

▶ 서비스 의뢰

- ④ (시·군·구 전담부서)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승인된 개인별 각 서비스 제공을 의뢰
 - * 서비스 의뢰시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모니터링 엑셀 양식(이하 모니터링-서비스 제공기관 기록지)도 서비스 의뢰시 송부
- 대상자에게 연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 본청 및 보건소 등 해당 사업부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및 의뢰
 - * 연계서비스 사업(86p~147p)의 대상자, 연계방안, 담당부서의 통합돌봄 관련 업무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의뢰
-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의뢰서 전달
 - ... 서식22

☞ 참고 서비스 제공의뢰 방식(예시)

- (노인맞돌, 건강백세 운동교실 등) 담당 부서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또는 공단으로 제공 신청 및 의뢰
- (지역특화 사업, 보건소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제공 신청 및 의뢰
- (장기요양, 보건소 외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관련 제공기관 리스트 제공

▶ 서비스 제공 및 실적 관리

- ④ (서비스제공) 제공기관은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서비스 내용 접수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추가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 그 결과를 기록지*에 기술 및 보관... 서식24
 - *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록은 기록물(문서 또는 데이터)로 보관

☞ 참고 서비스 제공 결과 회신(예시)

- (보건소, 노인맞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최소 서비스 의뢰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취합
- (지역특화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최소 서비스 의뢰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취합
- (보건소 외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시 확인

- ④ (실적관리) 시·군·구 전담부서는 제공기관 및 건보공단에서 회신된 서비스 실적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전담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내용을 시·군·구 전담부서에 제출 ... 서식24
 -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시군구 전담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모니터링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업(서비스) 이용정보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업(서비스)* 이용정보 → 시·군·구 전담부서로 회신** ... 서식25 서식26
 - * 추진체계별 역할-건보공단지사 역할(서비스 연계·제공 표(15p) 참고)
 - ** 건보공단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내 건강-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보(이용여부, 만족도)를 시·군·구 본청으로 회신(전자 문서 등)

8 모니터링

▶ 대상자

-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이 확정된 자

▶ 수행방식

- (정기 모니터링) 통합지원회의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 (주체) 시군구에서 모니터링 총괄 관리, 모니터링 수행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역할 분담
 - (총괄관리) 대상자 명단 관리, 모니터링 내용 검토, 통합지원회의 상정 등 업무 전반 처리
 - ① (명단관리)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매월 모니터링 대상자를 파악하여 월 2회(매월 1일,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수행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제공
 - ② (내용 검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입력내용 검토
 - ③ (통합지원회의 상정)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내용, 제공량 등) 및 종결 필요 시 통합지원회의 상정 등 사후 처리
 - (역할 분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한 주체가 모니터링을 수행
 - ① (시·군·구 전담부서) 퇴원환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집중관리대상자 등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대상자는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직접 모니터링 진행
 -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는 자 이외의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주기)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기로 실시
 - * 다만 개인별지원계획의 내용이 대상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모니터링을 개인별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할 것을 권고
 - (확인사항) 서비스 목표· 제공계획 등을 점검 및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종결을 위해 서비스 이용현황, 만족여부, 상태변화 등을 파악... 서식23
 - (서비스 이용현황) 개인별지원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 불일치, 미제공 사유, 계획 변경 필요성 등 파악

-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만족여부)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시 만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대상자 상태변화) 모니터링 대상자의 상태변화 여부를 확인
- (서비스 목표 및 제공계획 변경여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대상자의 상태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존 계획의 변경필요여부 확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내용/제공기관/종결 등의 사유를 체크하여 기록
- (종합의견) 모니터링 실시결과 관련 담당자의 추가적인 의견 제시
- (방법) 유선 및 대면방문을 통해 서비스가 연계된 대상자의 상태변화, 서비스 이용여부 등의 모니터링 수행결과를 시스템 입력 → 시·군·구 전담부서 확인
 - * 모니터링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력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생활환경 확인 등은 지자체 내 다양한 모니터링 지원인력(지역주민조직, 노인일자리사업 등) 활용 가능
 -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이력은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확인한 내용 참고
- ⊕ (수시 모니터링) 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시군구 전담부서로 통보되는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즉시 모니터링 수행
 - * 수행주체, 역할, 절차 등 정기 모니터링과 동일
- (제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내용 확인 요청 시 자료 제공 등 협조
- ⊕ (모니터링 결과 반영) 대상자의 상태변화로 서비스 추가, 서비스 종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또는 종결 처리
-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신속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시,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선제공 후 통합지원회의로 사후 승인 가능

9 대상자 종결

▶ 지원결정 이전 종결

④ 대상자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종결사유가 발생한 자

④ 종결사유

- 사망, 전출
- 병원(시설) 입원(소)
 - ※ 병원(시설)에 입원(소)하여 최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에서 종결. 단, 모니터링과정에서 병원(시설)의 입원(소)가 확인된 경우 종결처리
- 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시 종결처리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 **서식27**

④ 종결기준일

- 종결 사유가 발생한 시점
 - 3개월 미만의 병원(시설) 입원(소),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시에는 절차를 중단하며, 이후 3개월 이상 사유 발생시 종결처리

④ 종결 처리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종결사유(사망, 중단 의사 표시, 전출, 입원(소),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등) 발생 시 바로 종결로 처리(시군구 담당자 외) 및 시·군·구 전담부서에 내용 전달
 - * 대상자 종결을 시스템에 입력시 종결사유 및 담당자 입력
- 시·군·구 전담부서
 - 최종 대상자 종결 처리 확인
 - 종결사유(사망, 중단 의사 표시, 전출, 입원(소),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등) 발생 시 바로 종결로 처리(퇴원환자, 생애말기환자, 직권신청, 집중관리군)
 - * 대상자 종결을 시스템에 입력시 종결사유 및 담당자 입력

▶ 지원확정 후 종결

① 대상자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 종결사유가 발생한 자

② 종결사유

- 사망, 전출
- 병원(시설) 입원(소)
 - ※ 병원(시설)에 입원(소)하여 최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에서 종결. 단, 모니터링과정에서 병원(시설)의 입원(소)가 확인된 경우 종결처리
- 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시 종결처리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 **서식27**

③ 그 외 통합지원회의에서 종결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

- * 예시 : 복합적인 욕구해소로 1가지 서비스 이용만으로 가능한 경우
(건강관리 + 방문요양 + 주거환경개선 → 방문요양서비스만으로 생활가능)

④ 종결기준일

- 사망과 전출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일을 종결일로 적용
- 사업참여 중단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논의가 완료된 날을 종결기준일로 적용

⑤ 종결 처리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사유가 파악된 경우 최종 모니터링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 전담부서에 사실 확인 내용 전달
 - * 대상자 종결을 시스템에 입력시 종결사유 및 담당자 입력
- 시·군·구 전담부서
 - 통합지원회의 안건 상정 및 논의 후 최종 대상자 종결 처리

▶ 종결 후 재신청, 전출 등에 따른 행정사항

- ① 지원 종결 후 재신청하거나 ② 전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받던 자가 새로 전입한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통합판정조사를 생략하고 기존 통합판정조사 결과 활용 가능

- 기존 사전조사결과와 새로 실시한 사전조사결과가 동일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 기존 통합판정조사 결과가 대상자에게 조사결과가 안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④ 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 시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직전 전출 지자체 담당자에게 대상자의 통합돌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전 전출 지자체 담당자는 이에 협조

03 연계서비스

▶ 통합돌봄 사업 관련 서비스 개요

※ 대상자 서비스 제공시 핵심서비스 → 추가서비스 → 신규서비스 순서대로 연계 필요

● 노인 대상 공통 서비스

- (전국서비스) 13대 핵심서비스 + 5대 추가서비스 + 6대 신규서비스로 구성

- (핵심서비스) 전국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공가능한 13가지 기본서비스인 방문진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건강백세운동교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기관내 단기보호,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구성
- (추가서비스)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5가지 서비스인 치매주치의, 다제약물관리,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 긴급돌봄서비스로 구성
- (신규서비스) 향후 새롭게 도입할 6가지 서비스인 퇴원환자 지원, 생애말기 케어,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서비스로 구성

| 노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

구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전국 서비스	13대 핵심 서비스	• 방문진료(진찰·처방·검사·교육)	• 보건소방문건강관리(건강평가·관리, 보건소 자원 연계)	• 방문간호(감염·투약·호흡관리 등 간호)	• 노인맞춤돌봄(안전 확인, 신체·정신건강 교육, 가사지원)
		• 치매발견·기본관리(상담·검진·사례관리)	• 노인운동프로그램(낙상예방 등 위한 운동강습, 건강강좌)	• 방문요양(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 독거노인응급안전(ict 장비 활용, 화재·활동량 감지 등)
		• 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상담·정신건강 프로그램)	•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AI·스마트밴드 활용 건강미션실행 관리)	• 방문목욕(목욕차량, 목욕지원)	
		•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환자 케어플랜+ 주기적관리)		• 주야간 단기시설보호(주야간보호시설 입소)	
	5대 추가 서비스	• 치매전문관리서비스(주치의가 케어플랜 수립, 비대면관리+ 방문진료)	• 복약지도(다제약물 복용자 약물점검·상담·처방조정)	• 장기요양 재택의료(다학제팀 지속 방문 통해 진료·자원연계)	• 긴급돌봄(긴급 일적 돌봄공백 발생 시 단기간 기본돌봄 제공)
				• 통합재가(방문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통합 제공)	
	6대 신규 서비스	• 퇴원환자 지원(병원의 환자평가 기반 시군구 서비스연계)	• 보건소노쇠예방관리(노쇠평가 후 신체·구강·영양·정서 지원)	• 방문영양(영양관리, 식단조정 등)	
		• 임종케어(생애말기 재가의료, 가사, 장례 지원 등)		• 방문재활(생활재활 서비스)	
				• 병원동행(이동, 진료 과정 동행)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 주요 연계서비스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요약표 |

사업명	대상	본인부담금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한의원)에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환자도 의사(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능 * (대상 유형) ①마비 ②수술 후 ③신경계 퇴행성 질환 ④정신과적 질환 ⑤인지장애 등 ** 방문진료 대상(거동불편자)이 아닌 경우 환자 본인부담 100%로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30%), 중증재택 환자*(15%), 차상위 및 의료급여(5%) *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외상환자, ②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 재택 환자)
치매안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 내 지역주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치매환자 및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고위험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 외래를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금 20%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환자(입원중인 환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금 20% (중증치매 10%)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 (4~5등급 중심) *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필요 ** 1~3등급 장기요양등급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은 가능하나 보건소의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다제약물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질환자* 중 서로 다른 성분의 약을 10종 이상 상시(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고혈압, 당뇨 등 46개 질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건강백세운동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 희망자(연령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대상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재택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 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관련 사항 30%, 장기요양 관련 사항 (추가간호료 15%)
노인맞춤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독거노인응급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 2인 또는 조손 가구 중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거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긴급돌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②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설정 하도록 함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1 보건의료

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사업 목적

- ◎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 서비스 대상

-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
 - 의원(한의원)에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환자도 의사(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능
 - * (대상 유형) 의과 ①마비 ②수술 직후 ③신경계 퇴행성 질환 ④정신과적 질환 ⑤인지장애 등
한의 ①마비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 퇴행성 질환 ⑤정신과적 질환 등
 - ** 방문진료 대상(거동불편자)이 아닌 경우 환자 본인부담 100%로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 (제공기관) 의원(지방의료원)*·한의원 中 시범사업 참여기관
 - (예외적 허용) ①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②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한함
 - **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취약지
- ◎ (서비스) 의사(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 진찰, 처방, 질환 관리, 검사, 의뢰,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등
- ◎ (수가) 방문진료료 의사(한의사) 1인당 월 최대 60회 산정 가능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기관은 의사 1인당 월 최대 140회,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가능

구분		수가('26년)		구분	별도 행위료			
기본 수가	의과	방문진료료 I	의원	131,720원	방문진료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병원	140,600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131,720원				
		방문진료료 II	의원	91,630원			방문진료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병원		97,080원					
한의원	방문진료료	108,260원		방문진료료에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비용 포함	산정 불가			
가산 수가	의과	동반인력 수가	의원	33,530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동반시 350.69점 가산	-		
			병원	29,390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34,580원				
		소아가산	의원	2,060원 (1세 미만) 850원 (1~6세 미만)			소아진료 난이도를 고려하여 1세미만 21.56점, 1세 이상~6세 미만 8.88점 가산	-
			병원	1,810원 (1세미만) 740원 (1~6세 미만)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2,130원 (1세 미만) 880원 (1~6세 미만)				
	의료취약지 (읍·면) 가산	의원	26,340원(I) 18,330원(II)	방문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방문진료료 I 275.56점, 방문진료료II 191.70점 가산	-			
		병원	23,090원(I) 16,060원(II)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27,170원(I)					
	한의원	소아가산	2,250원 (1세 미만) 930원 (1~6세 미만)		소아진료 난이도를 고려하여 1세미만 21.56점, 1세 이상~6세 미만 8.88점 가산	-		
의료취약지 (읍·면) 가산		21,650원		방문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방문진료료 207.59점 가산	-			

사업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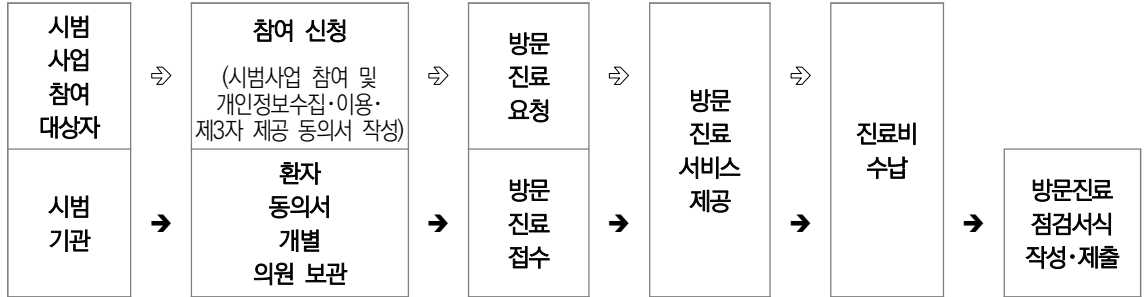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사업
IV

▶ 서비스 흐름도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절차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17개 시·도 의원 2,025개소, 병원 35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보건소 1개소, 지방의료원 28개소, 한의원 4,821개소('26.3.9. 기준)
- ※ 구체적인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 가능
(심평원대국민포털(<https://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 항목에서 '일차의료'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지역선택)

▶ 연계방안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한의원에 대상 환자 방문진료 의뢰

▶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 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주치의 시범사업' 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사업 담당 부서

※ 시범사업 세부 내용은 해당 지침 참고 요망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총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274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TF) ☎ 033-739-1784(총괄), 1795, 1792(의과), 1796, 1797(한의)

나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 사업 목적

- ⊕ 지역사회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에게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대상자 중 인지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 대상자의뢰, 치매안심센터가 발굴·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실시 등

▶ 서비스 대상

-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대상자 중 치매진단자 혹은 인지저하자 및 그 가족으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자

▶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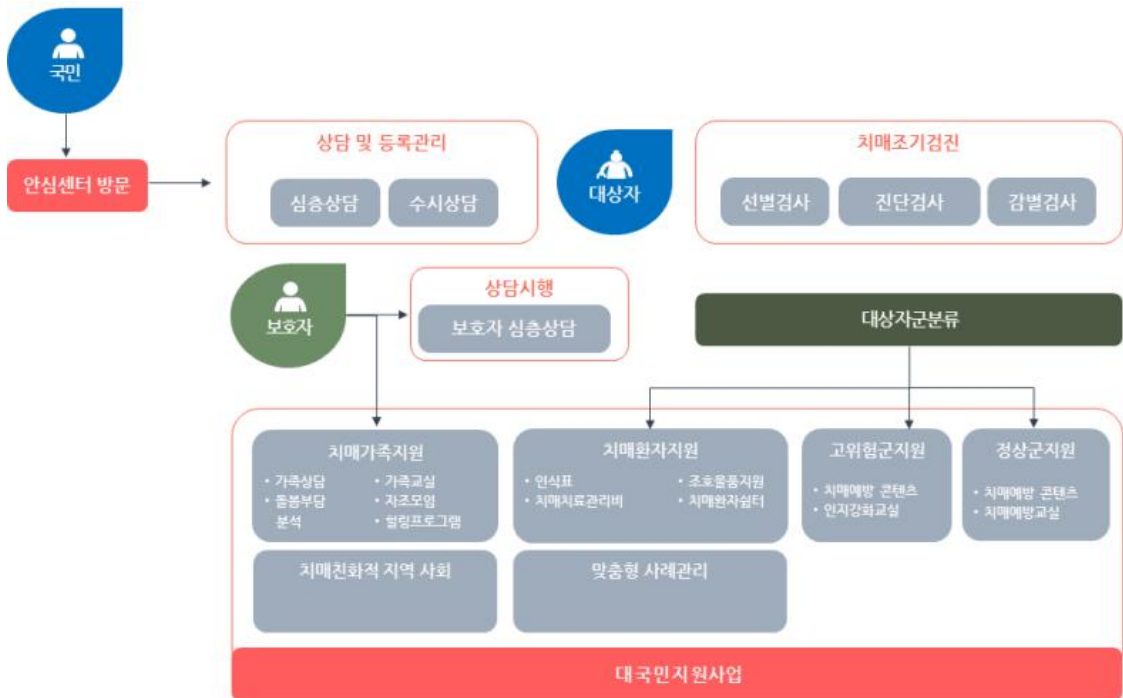
- ⊕ 의뢰된 대상자의 인지건강 상태 확인 후 대상자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검진) 치매선별검사 실시, 추가 검사 필요시 진단 및 감별검사 시행
 - (치매예방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예방교실,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 (치매환자쉼터) 경증치매환자대상으로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 인지자극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
 -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보호자의 돌봄 역량 향상 교육, 정서지원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안정적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선정자격, 개입필요도 평가, 개별적 상황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 자격, 개입 필요도 평가*, 개별적 상황**에 근거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욕구의 복합성, 문제의 심각성, 상태의 안정성, 개입의 시급성 등 평가
 - ** 가족구성(독거, 부부치매 등), 사회적 고립, 지역사회 복귀지원 필요, 초기치매환자의 경우 가점
- **(절차)**
 - ① **신청 및 접수** : 타 기관으로부터의 외부의뢰(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신청·접수), 담당자에 의한 발굴,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② **대상자 선정 및 군 분류** :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의 적절성 여부 판단하여 대상자 혹은 비대상자로 분류(비대상자의 경우 관련 정보 제공 및 타 제도·타 사업으로 의뢰)
 - ③ **사례관리 과정** : 대상자군에 따라 개별화된 계획 수립, 실행, 평가를 포함한 사례관리 과정을 수행
 - ④ **사후관리 및 종결** : 평가 결과에 따라 종결·연장·군 변경 및 사후관리 진행

▶ **업무 흐름도(절차)**

| 치매안심센터 업무처리 절차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각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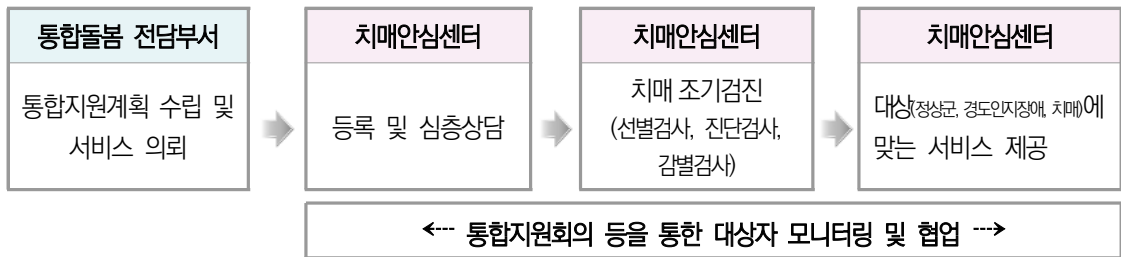
- 시·군·구 전담부서는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 초기치매환자, 경증치매 환자 및 사례관리 도중에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로 대상 의뢰
-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하여 치매환자 정보공유, 관리 및 필요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수행



치매안심센터 협업 역할

- (대상자 의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그 가족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의뢰
- (통합지원회의 참석)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 의뢰한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정기적 공유, 자원 연계 관련 논의 등 협업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는 대상자의 주요 의뢰 정보, 요청 서비스 등을 기재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의뢰, 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서비스 제공계획 등의 정보를 회신받아 대상자 모니터링 실시

▶ 연계 절차



* 심층상담결과 해당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반려 가능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중앙치매센터(<https://www.nid.or.kr/main/main.aspx>)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치매관리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044-202-3531, 3533
치매관리사업 기술지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 ☎ 02-6260-3138
치매 관련 정보 및 심리상담 제공	보건복지부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사업 목적

-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 서비스 대상

- ⊕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자로 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
 - * 통합돌봄 대상자 포함
 - * 정신질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뇌전증, 치매, 지적장애, 발달장애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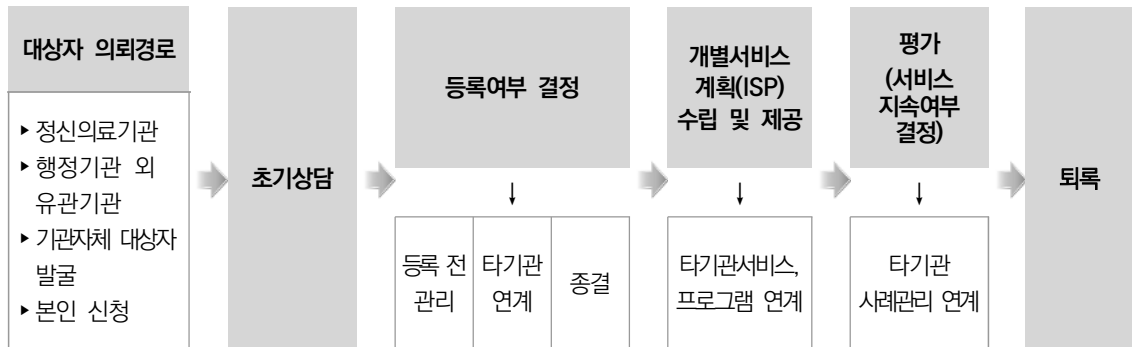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각 정신건강복지센터별로 지역사회 거주민에게 교육·홍보·행사·캠페인·세미나 등 제공
- ⊕ 일반상담
 - 등록 전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상담, 회원 등록 거부하나 지속상담 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 정신건강증진활동 참여 대상자 중 고위험군 대상 상담
- ⊕ 조기발견
 - 지역사회 자원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초발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 등록 전 대상자의 포괄적 사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비대면 접촉하여 증상, 치료 여부 등 파악 후 등록 유도
- ⊕ 사례관리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회의 실시
 - 지역 보건·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요구도 반영

▶ 서비스 비용

- 무료

▶ 사례관리 업무 절차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2, 3876

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사업개요

- ① 목적
 -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
- ②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③ 제공인력
 - 사업 참여의원 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업 참여의원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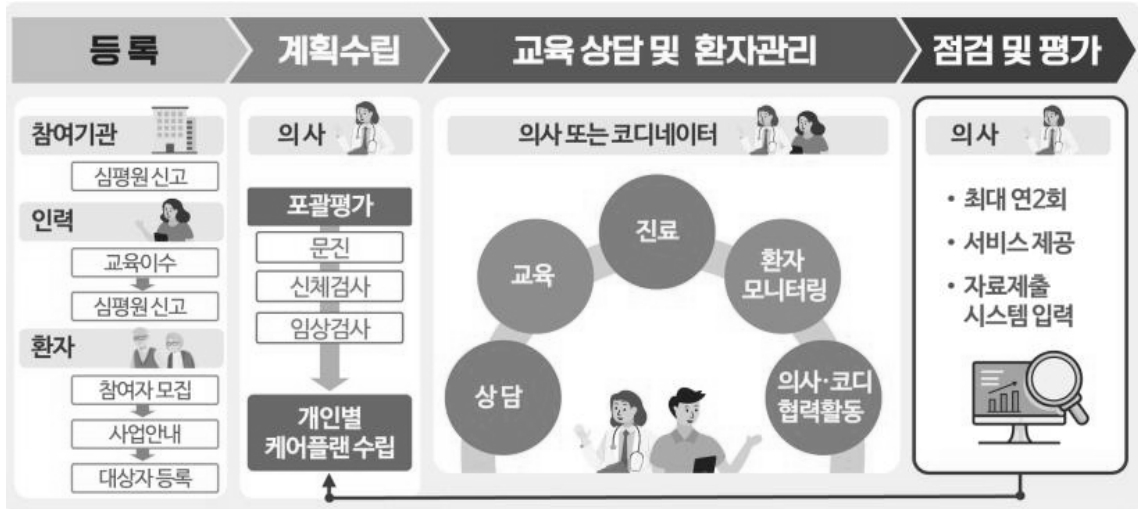
- 기존 내원하는 의원에 사업 참여 여부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 항목 '일차의료' → 상세항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건강e음 앱 → HIRA 건강지도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종류 '일차의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 The건강보험 앱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관 검색

▶ 서비스 내용

- ①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 수립
- ②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를 통한 교육·상담 제공
- ③ 혈압·혈당 측정정보 및 약물 모니터링 등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 확인
- ④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등 주기적으로 생활습관 모니터링

▶ 서비스 흐름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절차 |



▶ 연계방안

-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자를 지역 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의원으로 연계

▶ 사업 담당부서

문의내용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업총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11, 2815
사업운영, 급여기준, 평가, 전산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5, 1672, 1673, 1695, 1696
사업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만성질환사업부 1팀 ☎ 033-736-3735~3737
서비스제공자 교육운영(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의사) 대한의사협회 • (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 • (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02-3781, 8500 • (의사) 대한의사협회 KMA 에듀센터 1566-2844 • (간호사)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 1588-6262 • (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KDA 에듀센터 02-823-5680

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사업 배경 및 목적

- ⊙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
- ⊙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증상과 전반적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음으로써 삶의 질 유지·증진

▶ 사업기간 및 규모

- ⊙ (기간) 2024년 7월~2026년 6월, 2년간 시범운영
- ⊙ (규모) 42개 시군구*, 251개 의료기관 (2026.2월 기준)

* 서울 강동구·관악구·노원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진구, 대구 달서구·수성구, 인천 남동구·미추홀구, 광주 북구·서구, 대전 대덕구·중구, 울산 남구·중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성남시·용인시·화성시, 강원 속초시·원주시, 충북 영동군·청주시, 충남 서천군·천안시·홍성군, 전북 군산시·전주시, 전남 목포시·순천시·영암군·함평군, 경북 김천시·문경시, 경남 거제시·남해군·통영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 사업 대상

- ⊙ (치매관리주치의)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 (대상 환자) 치매환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사업 내용

- ⊙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실시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와 그 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희망 시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서비스만 제공 가능
 - * 환자가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전문관리 중 서비스 선택
 -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서비스 비용 환자 본인부담률 20%(중증치매 산정특례 10%)

구분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	치매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중앙치매센터(<https://www.nid.or.kr/main/main.aspx>)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044-202-3537, 3535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 ☎ 02-6260-3130, 3135

바 퇴원환자 지원 연계 사업

1)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의료 외 사회·경제적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
*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 합산

▶ 시행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재활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제외

▶ 제공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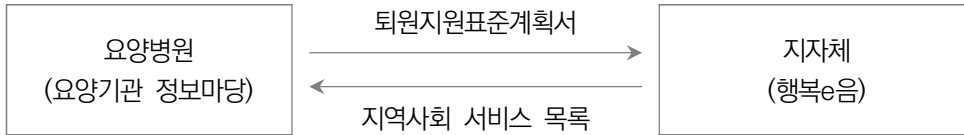
-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
... 환자지원팀*
*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

▶ 서비스 내용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의료 외 사회·경제적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④ 시스템 연계

- 요양병원-지자체(행복e음) 자원정보 연계 가능



※ 장기요양수급자인 경우, 환자지원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센터로 연계

▶ 업무 체계

- ④ (복지부) 정책수립·기본계획수립·제도개선·사업평가·지도·감독
- ④ (공단) 제도운영·전산(환자지원시스템) 운영·기본교육 운영·통계관리
- ④ (심평원) 급여비용 심사·환자지원팀 설치·인력 신고·교육이수 신고 등

▶ 퇴원환자 지원 절차

환자 입·퇴원	퇴원환자 지원 내용	제출
입원	1. 입원 일시 등록	환자지원시스템 (요양기관정보마당)
입원 1~10일	2. 대상자 선별 (환자평가표의 사회환경 선별조사 항목 활용)	
입원 60일 경과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및 입력 4. 환자지원 심층평가 실시 5.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6.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동 등 수행	
퇴원	7. 퇴원 일시 등록	

▶ 연계 방식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은 퇴원(예정)환자에 대한 상담 결과 통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군·구 전담부서로 대상자 의뢰

▶ 사업 담당부서

문의내용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도 및 전산,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 사업운영1팀 ☎ 033-736-4214~7
		(지역본부) 각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환자지원팀 설치 및 교육이수 신고, 수가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 1644-2000

2)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사업 목적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체계구축

▶ 사업 기간

- '20. 12. ~ '27. 12. ...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사업 대상자

-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혈관 질환자* 및 중추신경계 뇌손상**으로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질병코드 I60~I69, ** 외상성 및 비외상성

▶ 시행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및 연계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 (연계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1·2등급 기관 등

▶ 제공인력

◎ 급성기 의료기관

- 시범기관에 소속된 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환자지원팀*

* (역할)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환자지원을 위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의 의료적, 사회경제적 요구도 평가 및 퇴원지원

◎ 연계 의료기관

- 의료적 평가 및 치료계획 등을 수립하고 급성기 의료기관과 주기적 환자 상태 공유하는 담당 의사 등

▶ 시행지역

◎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6개* 권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인지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업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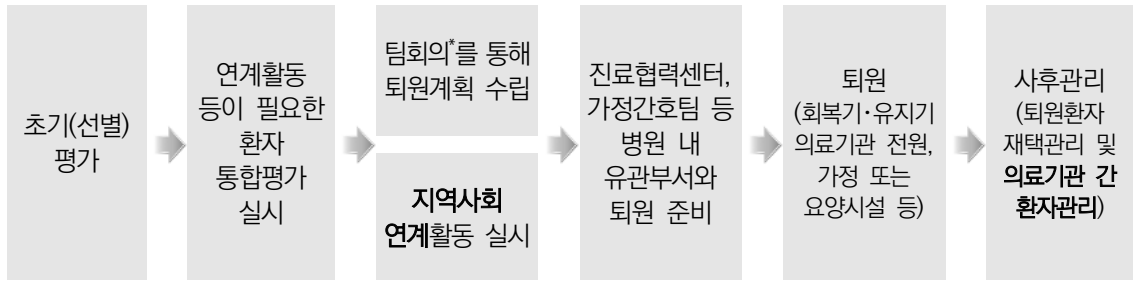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 (심평원)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수가·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지침·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개발,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관리

▶ 서비스 제공절차



* 환자지원팀 포함 최소 4인 이상(의사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2인 필수)

▶ 서비스 내용

- 통합평가·퇴원계획
 - 선별평가, 통합평가 및 통합퇴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연계활동
 - 지역사회 지원 및 서비스 정보수집, 연계활동 수행 후 정보제공, 지역사회 기관* 현장 방문
 - *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자체(통합지원창구), 복지기관 등
- 퇴원 후 사후관리
 - 퇴원환자 재택관리
 - 퇴원한 환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환자상태 주기적 점검, 질병 및 투약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으로 급성기 의료기관 환자지원팀과 연계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이 주기적 환자 상태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최근 업데이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담당자 통해 확인 가능(033-739-1647)

▶ **연계 방식**

- ⦿ 급성기병원 환자지원팀은 퇴원(예정)환자에 대한 상담 결과 통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 또는 공단지사의 시범사업 전담부서에 대상자 의뢰

▶ **사업 담당부서**

문의내용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도, 수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7, 1631
급여비용 지급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보험급여실 급여지급부 ☎ 033-736-3374

3)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공공의료연계망)

▶ **사업 목적**

- ⦿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연계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 지지, 치료의 질 상승

▶ **사업 내용**

- ⦿ 퇴원환자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플랫폼(‘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한 책임의료기관 - 협력 의료·복지기관 - 지자체 간 통합적 연계 및 관리 가능 모델 구축

* 공공의료연계망 (www.pubnet.or.kr)

▶ **사업 대상자**

- ⦿ 심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노인 관절수술, 암 등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별 선정 질환자로서 사업참여에 동의한 자

▶ **시행기관**

- ⦿ (권역)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대학병원 대상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총 17개소
- ⦿ (지역)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대상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지정 총 55개소

▶ 제공 인력

-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다학제 팀)

▶ 서비스 내용

- (케어플랜수립)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환자교육 실시
- (서비스 연계) 퇴원 시 병·의원, 보건소 등과 의료·보건서비스 연계, 읍면동·복지관 등과 복지·돌봄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관리)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건강상태·욕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속적 사례관리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모델 개발 프로세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모델 개발 프로세스				
1	2	3	4	5
[기초조사 및 대상자 선정]	[프로세스구축]	[서식 개발]	[유관기관협력네트워크 구축 기반/사전 협의]	[지역사회연계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및 지역 내 필수의료 이용 현황, 건강수준, 지역자원 현황등 조사 분석 수행 • 퇴원 후 연계 필요 질환군 조사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 기반 프로토콜 마련, 연계범위 설정, 질환별 퇴원 관리 매트릭스 작성 • 질환별 모니터링 주기, 방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평가 기록지 마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활용 • 질환별 심층평가 및 퇴원환자 연계 서식 마련 • 초기조사도·퇴원서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MOU 체결 • 서비스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간 퇴원환자정보공유를 위한 서비스연계 플랫폼 (‘공공의료연계망’)구축 • EMR내 연계서식 포맷 구축 • EMR, 공공의료연계망 연동

① 기초조사 및 대상자 선정

- 권역 및 지역 내 퇴원 후 연계가 필요한 질환군 및 계층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유형, 연계 가능 자원 현황, 환자 유형별 요구도 등 조사
- 사업 대상자 선정, 모니터링 지표 및 주기적인 자체 평가 방법 구성

② 프로세스 구축

- 병원-지역사회-모니터링 단계별 병원 및 전담팀의 역할 수립, 환자단위 프로토콜 마련

③ 서식 개발

- (초기평가 서식) 책임의료기관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초기평가 항목 및 질환별 서식 개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퇴원환자 통합 연계 서식, 정기조사 모니터링 서식) 질환별 표준 서식 활용

④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전 협의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사전 협의 및 필요시 MOU 체결
-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합 기관 간 서비스 의뢰 및 접수를 위해 사전 협의 후 연계

⑤ 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 개별 병원 EMR 및 지방의료원 연합회 EMR 등과 공공의료 연계망 연동
- 공공의료연계망 활용 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지역 협력기관-주민센터 간 환자 정보 연계 및 사례 관리 실시

▶ 연계 방식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연계망을 활용하여 퇴원(예정)환자에 대한 상담 결과 통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 또는 공단지사의 시범사업 전담부서에 대상자 의뢰

▶ 사업 담당부서

문의내용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업 총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책임의료기관지원팀 ☎ 02-6362-3702
시스템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정보운영팀 ☎ 02-6362-3723

2 건강관리

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사업 목적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장기요양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서비스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필요
 - ** 1~3등급 장기요양등급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은 가능하나 보건소의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대상자 분류)에 따라 건강행태 및 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필요시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분류기준 및 방문횟수 |

군 분류	대상자	방문횟수
집중 관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 장애인으로 건강문제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위험군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 고위험 허약노인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8회 이상 /3개월
정기 관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1회 이상 /3개월
자기역량 지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1회 이상 /6개월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은 필수적으로 관리하되, 자기역량지원군은 선택관리

▶ 업무 흐름도 (절차)

① 보건소(수행기관) 업무 흐름

- 대상자 발굴·등록 → 건강문제 스크리닝(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① 전국 263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 연계방안

- ① 읍·면·동 및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대상자 정보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내 등록 후, 추가 건강기초조사(허약평가 등) 실시
- ② 통합지원회의에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가능여부 등 의견제시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02, 2812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령화대응부 ☎ 02-3781-2220, 2222
방문건강관리사업 (PHIS·MPHIS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사업정보부 ☎ 02-6360-4768

나 건강백세운동교실

▶ 사업 목적

-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을 통해 신체기능 향상 및 건강생활 유지·개선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의료비 절감 도모

▶ 사업 대상

-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 희망자(연령 제한 없음)

▶ 사업 내용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운동강사를 선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주 2~3회 운동강습 및 건강강좌 서비스 제공
 - (유형) 실내·외 운동 및 비대면(양방향) 강습
 - (장소)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지사 공실, 복지관, 도심공원(실외) 등
 - (프로그램) 신체활동, 건강강좌, 신체측정, 영양(식습관)·치매 및 낙상 예방·건강생활수칙지도 등 건강개선에 효과적인 내용
 - ※ (운동종목) 표준운동프로그램, 치매예방운동, 요가, 실버체조, 라인댄스 등

▶ 연계방안

- 통합돌봄 전담부서에서 공단 지사에 건강백세운동교실 대상자 연계 요청시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강사 지원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건강증진사업부 건강증진사업 2팀 ☎ 033-736-3793, 3794

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 사업 목적

-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및 건강측정기기 사용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효과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서비스 대상

- 노쇠·만성질환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일반특성)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 * 4~5등급 중심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가능하며, 1~3등급 장기요양등급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은 가능하나 보건소의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서비스 내용

-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블루투스 손목활동량계·체중계·혈압계·혈당계 및 소모품, 일반형·화면형 시스피커 등 6종

▶ 업무 흐름도(절차)

- 보건소(수행기관) 업무 흐름
 - ① (최초 방문 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등록 및 군분류(혈압, 혈당, 노쇠, 악력 정도 등 측정, 오늘건강 앱 설치 및 이용법 교육, 기기 배부) → ② (서비스) 건강정보, 미션실천 상시 모니터링, 미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건강관리 → ③ (성과평가) 6개월 후 건강지표 및 만족도 조사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 228개 보건소, '26년 신규참여 보건소 28개소는 '26년 하반기부터 참여

▶ 연계방안

- ④ 읍·면·동 및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대상자 정보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내 등록 및 군분류 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④ 통합지원회의에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가능여부 등 의견제시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02, 2812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사업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령화대응부 ☎ 02-3781-2220, 2222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오늘건강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사업부 ☎ 02-3782-2229, 2232, 7652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PHIS·MPHIS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사업정보부 ☎ 02-6360-6993, 6992

라 다제약물관리사업

▶ 사업 목적

- 전문가가 약물 점검, 상담, 처방 조정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약물의 중복처방, 과다과소 복용 등을 방지하여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유도

▶ 서비스 대상

- 만성질환자* 중 서로 다른 성분의 약을 10종 이상 상시(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 고혈압, 당뇨 등 46개 질환 기준

▶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 모형
 - (대상자 선정) 빅데이터 발취 및 안내문 발송 후 회신자 또는 신청자
 - ※ 사회경제적 기준(독거, 차상위 등) 및 건강·의료이용 기준(15개 이상 약물 복용자,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인정자,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자 등) 반영 우선 선정
 - (제공자) 지역에서 위촉된 자문 약사와 공단 간호사 등(2인 1조)
 - (서비스) 가정·약국방문(최초) → 유선(필요시) → 가정·약국방문(모니터링)
- 지역 의·약사 협업 모형
 - (대상자 기준) 서울 도봉·강북·노원·성북구, 경기 파주시('25년 추가) 내 지역사회모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 보유자이면서 10종 이상 약 복용자
 - 의사가 내원 환자 중 약물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정
 - 공단 안내문을 통해 신청한 대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참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에서 등록 가능
 - (서비스 제공자별 역할) 약사의 약물 점검 → 의사의 처방 검토
 - (의사) 대상자 선정, (필요시)가정방문 상담 및 포괄평가, 처방검토·조정, 모니터링
 - (약사) 복약상태 점검 및 상담, 약물 상담 의견서 작성, 모니터링

- 서비스 모형

- (횟수) 총 3회 ... 가정방문 2회, 의원방문 1회
- (소요 기간) 등록일로부터 2개월 ... 횟수별 1개월 간격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 지역사회모형: 전국 155개 시군구('25.10.31.기준)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다제약물 관리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15
다제약물 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의료이용지원부 의료이용지원2팀 ☎ 033-736-3727, 3760

마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 사업 목적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건강수준 향상 지원

▶ 사업 대상

- 고혈압(I10~I13, I15)·당뇨병(E10~E14) 환자 중 참여 희망하는 자(의료급여 등 제외)

▶ 사업 내용

- 만성질환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 (알림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알림(영양, 운동, 합병증 검사일자 등 건강관련 정보) 문자 발송
 - (정보제공) 맞춤형 건강문고, 건강수첩 및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
 -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모아/건강 프로그램/만성질환관리
 - (자가측정기 대여) 혈당·혈압 측정기 대여 및 소모품 지원, 측정법 교육
 - (적정투약관리) 적정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에게 적정투약 안내
 - (개별 건강상담) 문제목록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 (교육 서비스)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 자조모임 등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만성질환사업부 만성질환사업3팀 ☎ 033-736-3714, 3754, 3764, 3784

3 장기요양

가 장기요양 재가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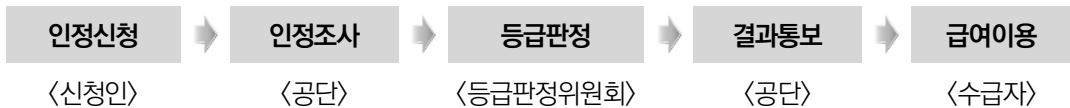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급여 내용 : 재가급여 중심

-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급여종류·급여량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배회감지기, 목욕리프트 등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장기요양 재가급여-복지용구

- 사업 대상 : 장기요양 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갖추고 있는 복지용구의 이용을 전제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복지용구의 이용이 제한됨
- 급여품목
 - **(구입품목)**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타인이 재사용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사용 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품목
 - **(대여품목)** 비교적 고가이고 소독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수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품목
 - **(구입 또는 대여품목)** 수급자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자가 급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품목

분류	품목명	사용 가능 횟수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욕창예방방석, 기저귀센서	3년
	지팡이,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2년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간이변기	없음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없음
대여품목	전동침대, 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5년
	목욕리프트	3년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경사로(실외용)	8년
	경사로(실내용)	2년
	이승보조기기	5년

• 급여기준

-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른 해당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
-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했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음.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은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음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 받을 수 있으며,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

나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사업 목적

- ⦿ 재가 수급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활성화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 지원 및 가족 수발부담 완화

▶ 사업 대상

-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 가족휴가제만 이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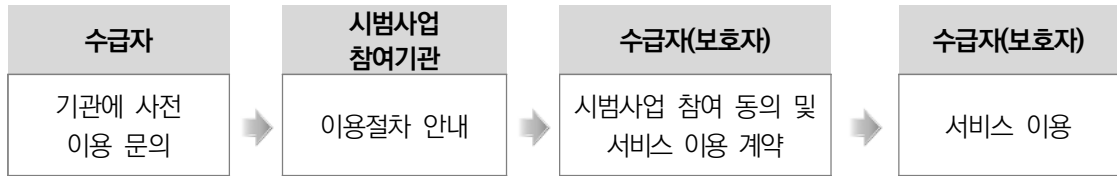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 (가족휴가제) 연 11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 단기보호 이용일(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 ⦿ (이용인원) 주·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1일 최대 이용가능 인원 4~8명

구 분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30인~39인	40인~49인	50인 이상
이용가능 인원	4명	6명	8명

* 실제 이용은 참여기관의 침실보유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이용방법)



▶ 급여비용 및 월한도액

- ④ (서비스비용)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포함)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통합)

구분	지급 기준
주야간서비스 비용	등급별 주·야간보호 최대 13시간 초과 비용 산정
야간운영 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64,000원 산정)

- ④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④ (본인부담금) 주·야간서비스 비용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발생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단기보호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요양급여개발5팀 ☎ 033-736-1970~2

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사업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

▶ 서비스 대상

-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 내용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
 - 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급여수가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의사의 방문진료 1회당 지급(월 최대 140건, 본인부담 30%)

(‘26년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기준	본인 부담
	의원급	병원급		
방문진료료 I	131,720	140,600	•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등 모두 포함(별도 행위료 없음)	30%
방문진료료 II	91,630	97,080	• 추가적인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비 미포함(별도 행위료 있음)	
한의방문진료료	108,260	-	• 한의사 방문진료 시(별도 행위료 없음)	

- (장기요양보험) 통합사례관리(다학제 팀의 포괄평가, 케어플랜) 제공 수가

구분	금액(원) (’26년 기준)	기준	본인 부담
재택의료 기본료	1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당 월 1회, 아래 요건 충족 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업무) 포괄평가, 케어플랜 수립, 사례관리 - (의사, 간호사)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 - (사회복지사) 수시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없음
	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사망 종결 수가 	
지속관리료	60,000	• 6개월 이상 사례관리 제공시 지급(연 2회 한도)	없음
추가간호료	53,770	• 기본 방문간호 횟수(2회) 초과 시 지급(월 3회 한도)	15%

▶ 업무 흐름도

|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제공절차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총 422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26년 3월 초 기준)

※ 구체적인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정보 → 특성별 기관찾기
-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포털(<https://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검색)

▶ 연계방안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참여 의원에 대상자 방문진료·간호 의뢰
- 재택의료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연계 담당
 - 의료 이외 사회·환경적 돌봄지원 수요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지자체-장기요양기관-복지관 등 협력체계 구축
 - 통합지원회의 참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사례회의 실시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4, 3496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1,2,3팀 ☎ 033-736-1950~62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고사항

- 관련 자료 게시 위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
 -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건강보험25시’ 모바일앱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h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 (게시번호6137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 사례 발표자료 게시 안내
-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대표전화 : 129)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지정 및 통보
 - 재택의료 관련 - 건보공단(대표전화 : 1577-1000)
 -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 일차의료 관련 - 심평원(대표전화 : 1644-2000)
 -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 : ① 일차의료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②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각 본부 심사평가부 : 시범사업 심사

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 사업 목적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지원을 위해 다양한 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에 따라,
 -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신청자
 - * (제외) 가족인요양보호사 급여 이용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등

▶ 서비스 내용

- (내용) 수급자 욕구·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재가급여를 하나의 기관에서 복합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급여비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수서비스와 급여량 월한도액의 80%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①가정방문형은 월 한도액 110% 상향, ②주·야간보호형은 수급자당 10만원 인센티브 지급(전문인력 추가 배치한 경우에 한함)

▶ 업무 흐름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와 동일하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업 참여

-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기관 신청
 - ※ 신청방법 : 제공기관 모집 공모 일정 등 홈페이지 별도 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포털 <http://www.longtermcare.or.kr> 내 공지사항 참조)

▶ 연계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복합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게 통합재가서비스 및 제공기관 안내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합재가서비스 총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3, 3505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 033-736-3611 요양급여실 급여이용기반부 급여이용기반1팀 ☎ 033-736-3875~77 요양자원실 기관관리부 ☎ 033-736-1911 요양심사실 심사관리부 ☎ 033-736-3911

마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사업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 중증(1·2등급)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모든 1·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및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서비스 내용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연간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연간 24회) 이용 가능

① 단기보호급여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등 지원

② 종일방문요양급여

-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 (일반 방문요양은 1회 3~4시간 이용가능)

* 종일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 이용 시 수급자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내용 간리를 위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방문 필요

▶ 서비스 비용

- 수급자의 등급 및 이용하는 급여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불
 - (단기보호) 1일 이용 시 9,000원~11,110원을 부담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용 시 14,830원을 부담

Ⅰ |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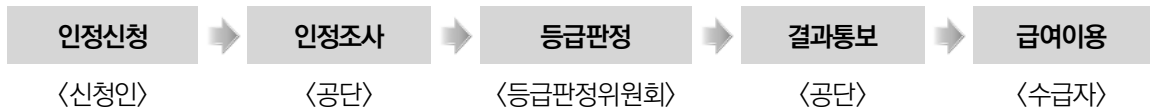
(단위: 원)

구 분	장기요양등급	'26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
단기보호(1일)	1등급	74,060	11,110
	2등급	68,580	10,290
	3등급	63,350	9,500
	4등급	61,680	9,250
	5등급	60,000	9,000
종일방문요양(12시간)*	-	177,680	14,830

* 인지기원등급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5등급 급여비용(60,000원) 및 본인부담금(9,000원)으로 산정

** 급여비용은 기본 급여비용과 가산금의 합(98,860원+78,82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비용의 15%임(98,860원×15%)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총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3, 350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수가부 요양수가2팀 ☎ 033-736-3984~7

4 일상생활돌봄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 목적

- 장기요양 이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지연·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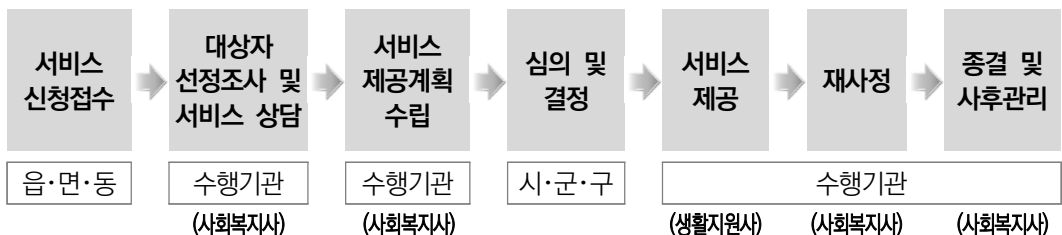
-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내용 등 지원 수준 다름
 -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 '26년 "퇴원환자 단기집중 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계획

▶ 업무 흐름도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 (684개소) 및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3.9만명) 채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
 - (생활지원사)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 연계방안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본청 내 담당부서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신청 및 서비스 제공 의뢰
 - (신청) 통합지원회의에 따라 노인 맞춤돌봄 연계가 결정된 대상자는 읍면동에 직권신청을 안내
 - (조사) 통합지원회의에 따라 결정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선정조사를 생략 후 퇴원후 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신규 대상자 선정시 우선 제공)으로 선정
 - ※ 통합돌봄판정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후돌봄군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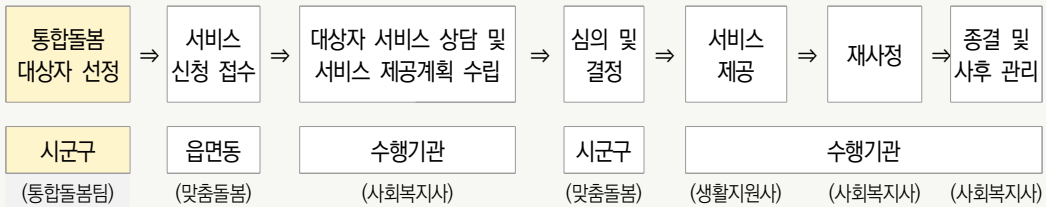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개요 및 연계방안

- (서비스목표) 퇴원 후 회복기 환자의 재입원 방지, 일상 회복 촉진
- (서비스대상)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1만명(기초연금수급 이하 독거 등 취약가구)
 - * 골절·낙상 등 주요 질환 수술 후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자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통해 의뢰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별도 선정조사 생략)**
- (서비스 내용) 1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공
 - (서비스 구성) 영양지원 + 가사지원(신체수발 포함) + 외출동행
 - * 서비스 제공량(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맞춰 계획제공

구분	영양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서비스 제공한도(월)	월 10만원	32시간	12시간

- (서비스 기간) 1개월, 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
 - ※ 본인부담비용 없음

• (서비스 제공절차)



▶ 홈페이지

- ◉ 복지포(www.bokjiro.go.kr),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or.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3461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운영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 ☎ 1661-2129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 목적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 2인 또는 조손 가구 중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거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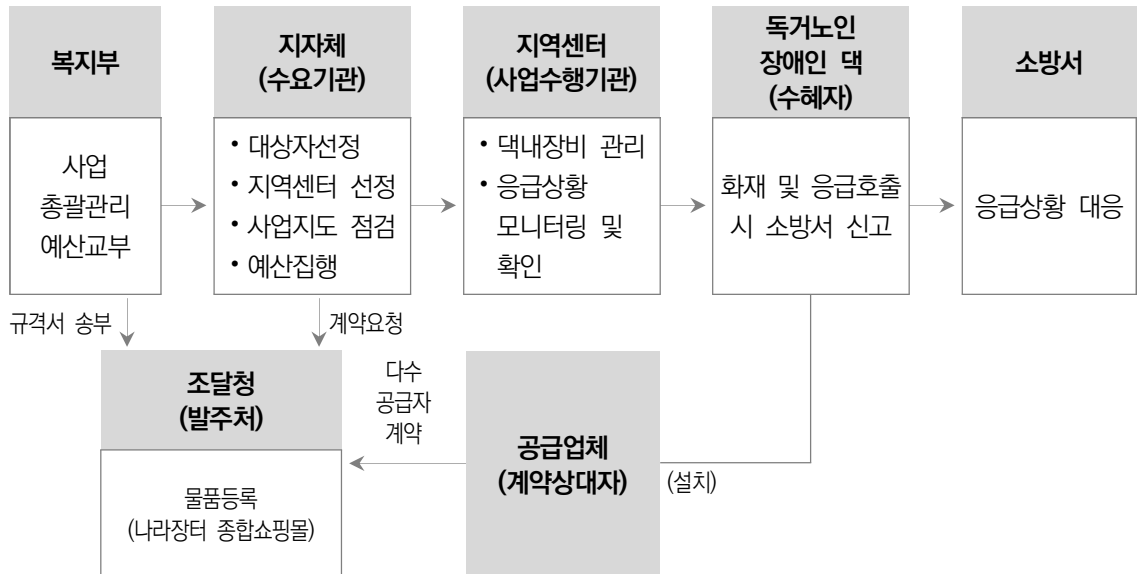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발생)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곧바로 연결
 - (응급호출)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눌러, 응급상황 시 간단히 119 연결
 - (활동미감지) 일정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으로 알림이 전송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영상통화 등 안부확인 실시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노래, 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

| 댁내 설치 기기 |



▶ 업무 흐름도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대상(단, 서울 및 일부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에게만 제공)

▶ 연계 방안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본청 내 담당부서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홈페이지

- 복지포(www.bokjiro.go.kr), 디지털돌봄시스템(https://biz.dcare.go.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9, 3454, 3457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복지안전사업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7-1

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긴급·일시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사고,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에 따른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공백 발생 시 단기·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분야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서비스 대상

-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 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②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설정하도록 함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가능

▶ 서비스 내용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시적 돌봄 서비스(기본돌봄, 방문목욕)**를 제공
 - (내용)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 ①**기본돌봄**(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②**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시간) ‘**최대 72시간***, **1일 당 8시간****’의 범위 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 단,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특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함

|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서비스 내용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지역별로 서비스 범위는 일부 달라하여 제공 가능하며, 방문목욕의 경우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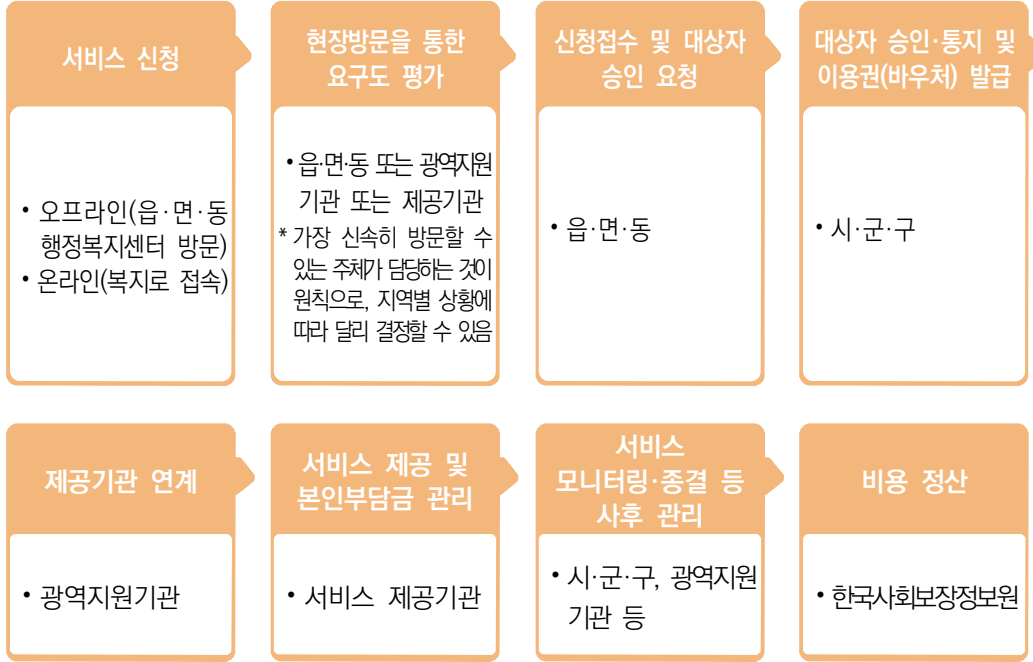
▶ 서비스 단가('26년)

- *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26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의 '26년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예산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시간당 19,000원
-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 회당 88,000원

▶ 서비스 제공절차

- ⊕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하면 관련 기관(광역지원기관, 읍·면·동, 제공기관)에서 증빙서류·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 ⊕ 대상자 요건충족 시,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 대상자 승인 요청
- ⊕ 시·군·구가 제출자료 확인 후 대상자임을 승인·통지하면, 광역지원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적정 제공기관으로 연계하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 지역별 특성을 감안, 위 절차를 소폭 변경하여 현장수요에 부합하도록 탄력적 운영 가능

Ⅰ 서비스 제공절차 Ⅰ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 (대상지역) 서울,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 164개 시·군·구
- ⊕ (참여기관)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경북행복재단) 및 제공기관

▶ 연계방안

- ⊕ (신청의뢰) 통합돌봄 읍·면·동 담당자 조사신청 후 ~ 통합판정 전,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지원 필요 시 긴급돌봄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청의뢰(추천서 제출) → 긴급돌봄 읍·면·동 담당자 직권신청 절차진행
- ⊕ (종결처리) 조사결과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 통합돌봄 시·군·구 담당자가 긴급돌봄 시·군·구 담당자에게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공문* 시행 → 긴급돌봄 시·군·구 담당자 서비스 지원계획 확인 후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자로 판단 시 종결처리

* 긴급돌봄 담당자가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원 서비스 명칭 등'을 포함하여 송부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1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02-2271-9070, 9072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5 기타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 사업 목적

- ⦿ 고독고립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고독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

▶ 서비스 대상

- ⦿ 고독고립 위험자
 -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고독고립 위험자로 선별 및 관리하는 사람
 - 지자체별 인구 구성(청년, 중·장년, 노인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되, 기존 생애주기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우선 고려
 - *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국가유공자 중 1인 가구 등
 - 1인 가구 외에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다인 가구(노인 돌봄 가구, 장애인 돌봄 가구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서비스 내용

1)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 ⦿ (위험군 발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자체 자체 기획 조사 등으로 고독고립 위험군 발굴
- ⦿ (선별·관리)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고독고립 위험군을 선별하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으로 위험군 명단 및 지원내용 관리

2)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서는 고독고립 위험자를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로 구분하여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연계

구분	생애주기별 사업 유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음회복) 정신건강 문제, 자살위험 등 심리·정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상담 및 심리지원 제공, 고위험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신속 연계 ② (일상회복)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기본생활(주거, 식생활, 외출) 지원, 경제적 자립(취업 준비, 재정관리 교육) 지원, 사회복귀(정기적 멘토링, 비대면단기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상황에 맞게 제공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계개선) 퇴직·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 재구축을 위해 자조모임, 소셜다이닝, 문화체험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부담을 낮춘 소규모 방식으로 관계회복 지원 ② (건강관리)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중독관리,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복귀를 지원 ③ (경제자립)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솔루션(채무상담, 금융상담, 법률서비스, 일자리 정보)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주거, 일자리 등) 연계를 통해 경제자립 지원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돌봄연계) 돌봄서비스(병원 동행, 집 청소지원, 식사배달 등 일상생활 지원)를 제공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 ② (사회참여) 사회적 역할·소속감 상실로 고립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공공형 단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급 봉사활동 등) 기회 제공연계 ③ (안전확인)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이웃연결단, 요구르트 배달 등) 활용 또는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체계 운영,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기기장비 보급 및 응급안심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사업 대상지역

-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6(3137)

나 통합사례관리사업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서비스 대상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복지욕구 및 개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활 및 일상 회복이 필요한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차상위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 서비스 내용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서비스 흐름도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고난도 사례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 읍·면·동에서는 초기상담 후 일반사례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 사후관리까지 통합사례관리 수행

*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의뢰되는 경우(이관콜 접수 사례 제외)에도, 읍·면·동에 전달하여 초기상담 등 절차 이행하도록 함



▶ 사업 대상 지역

-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3~3134

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사업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서비스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3~64세)
-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특화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 지자체별 이용 가능 서비스 상이

▶ 서비스 가격

- ◎ (기본 서비스) 36시간 이용(A형)시 월 684,000원, 24시간 이용(B형)시 월 444,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368,000원
 - (재가돌봄+가사서비스(A형, C형)) 시간당 1만 9천원
 - (가사서비스만 이용(B형)) 시간당 1만 8천 5백원
- ◎ (특화 서비스) 월 12만~27만 2천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면제)
120% 이하	10%(5%)	15%(10%)
120% 초과~160% 이하	25%(20%)	30%(25%)
160% 초과	100%(95%)	100%(95%)

* 괄호안은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률('26.3월~)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관내 전체 시군구 시행 중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시행예정)종로구, 도봉구, 관악구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시행예정)영동군, 단양군
경기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일부 시·군·구는 시행 여부 및 시기 변동 가능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02-2271-9027

라 재가의료급여 사업

▶ 사업 목적

-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해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의료·요양 재정립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

▶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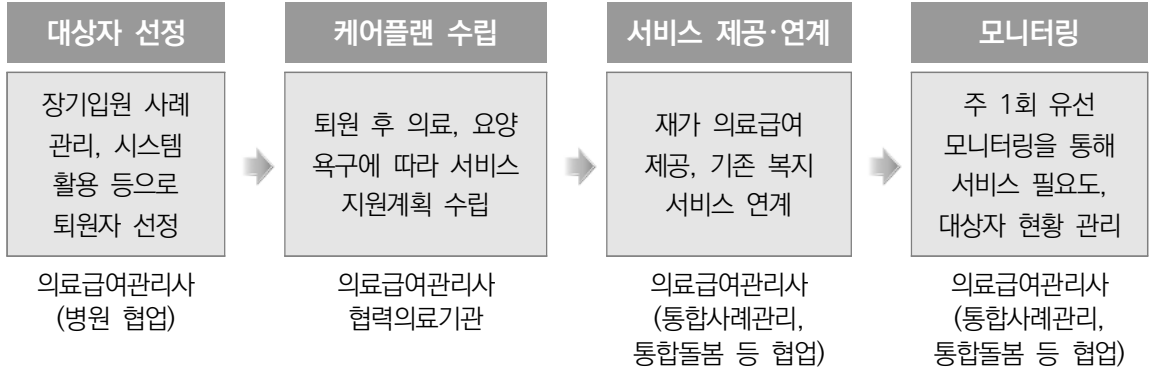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하여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동일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하는 수급자(최근 1년 의료이용 확인)
- 퇴원 후 건강 악화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급여	유형	내용	항목 및 단가	지급대상 (기준금액)
필수 급여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 의료·복지·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어플랜 수립(85,300원) • 모니터링(12,400원/회) • 집중교육·상담(21,300원/회) • 방문의료(129,000원/회) • 방문간호(21,300원/회) 	협력의료기관 (월 70,920원) * 변경 불가능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20,690원 * 야간 및 주말, 법정공휴일 30% 가산 	제공기관 (월 658,580원) * 변경 가능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식 8,500원/1식 • 특수식 9,500원/1식 • 밑반찬·식재료 45,000원/1주 	
	이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 교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0원/회 	
선택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연간 200만원 이내		
월평균			729,500원	

▶ **업무 흐름도(절차)**

| 지원절차 및 담당주체 |



▶ **사업 대상지역**

- ☉ 전체 시·도 및 시·군·구

▶ **연계방안**

- ☉ 지자체에 연계 가능한 기존 자원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관리사가 연계하여 우선 제공하되 기타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 전담부서로 대상자 의뢰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재가 의료급여 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1,3092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의료비지원실 의료급여수탁부 의료급여7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033-736-4690, 4692

04 지역 특화서비스

1 운영 개요

▶ 목적

- ◎ 지역 여건과 주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 및 통합돌봄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
- 지역의 인구구조, 서비스 자원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특화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보완

▶ 기본방향

- ◎ 지역특화사업은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하에 운영되며, 본사업 지침 내 내용은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해당
-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은 관계 법령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을 준수
- 해당 사업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노인 외 장애인까지 지원 가능

▶ 주요내용

- ◎ 지역 특색과 필요도를 반영한 지자체 특화 서비스 개발
* 예: 케어팜(진천), 돌봄특화마을(광주 북구), 거점형 노인케어안심주택(안산) 등
- ◎ 기본돌봄서비스에 해당하나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
* 예: 주택수리(낙상방지), 일상생활 지원(청소, 가사, 운동), 이동지원(돌봄택시, 동행지원) 등
- ◎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신규서비스 개발
- ◎ 퇴원환자 지원 인프라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재가의료 서비스 개선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 사항**

- ① 본 지침 준수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 체크리스트(부록참고) 자체 점검 필요
-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국비사용 여부와 별개 사항이며, 국비 사용은 해당 국비 관련 예산 지침을 준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 지침 내 지역특화사업

•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지자체 특화사업(22p- ①,②,③)의 경우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설계·운영 하는 경우 협의 제외

* 지자체 특화사업의 대상자 선정요건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한정하거나 통합돌봄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그 외에는 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필요

| 주요 협의 사례 : 의료·요양 통합돌봄 |

〈협의방향〉

- 아래 ① 표준모형과 ② 유형화된 지자체 자체 모형은 **중앙부처 일괄협의 원로** → **사회보장위원회 검토의견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통합돌봄 지자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현행화 시 (매년 1회(3~5월) 전년도 시행 내역(예산, 수혜자)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유지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진행)*

*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등에 따라 사업 변경 필요시 별도 점검 및 안내

① **표준모형(지역 특화서비스 모델(통합돌봄 지침 p31~48))**

* 통합돌봄 지침에서 구체적 사업안 제시된 모형

- ① 방문의료지원사업, ② 퇴원환자 지역연계사업, ③ 일상생활돌봄, ④ 주거환경개선, ⑤ 케어안심주택

② **표준모형 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형화한 지자체 자체 모형**

* 통합돌봄 지침에서 구체적 사업모형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통합돌봄사업과 접수 ('25.10.13 ~ 25.11.10) 사업 기준으로 협의과정에서 유형화

- ① 방문재활·운동, ② 방문복약지도, ③ 방문구강관리, ④ 가정임종, ⑤ 방문진료 표준모형 외, ⑥ 방문간호, ⑦ 복지용구, ⑧기타(안부·안전 및 정서지원, 생활편의지원, 주거정비, 사회적 농업 활용 돌봄, 무연고자 사망 지원 등)

③ 위 ①, ②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사업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협의 제외 → 단,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되고, 대국민 안내를 위하여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하여야 함

☞ 참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2차 협의결과(26.01.21.)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지자체 사업 1,160건 협의요청('26.01.20.)에 대한 협의결과 통보
- (공통)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은 ①건강보험 및 기존 중앙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력·인프라 차이 크지 않은 인접 지역 간 ②지원 단가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돌봄통합 차원의 사업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통합돌봄 지침 내 표준모형과 지자체 특화모형을 [방문재활·운동, 방문복약지도, 방문구강관리, 가정임종, 방문진료 표준모형 외,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타(인부·안전 및 정서지원, 생활편의지원, 주거정비, 사회적 농업 활용 돌봄, 무연고자 사망 지원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
 - 검토결과 ①~③ 미준수·관계법령 위반 시,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 ① **지자체 방문보건의로 사업**(방문재활·운동* 방문간호, 방문구강 등) 시행 시 **의사의 지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법령 내에서 사업 추진 필요**
 - * 의료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수행하지 않는 비의료 방문서비스 유형은 해당없음
 - ② 지자체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하여 의료급여·건강보험 자격별 본인부담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감면지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최저 감면기준으로 설정 필요, 공급자의 본인부담 추가 감면 사례는 엄격히 제한**
 - * 예) 질환별 의료1종: 1,000원~2,000원(정액), 의료2종: 1,000원(정액)~2760원(15%), 건보대상 : 5,520원(30%) /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는 불가
 - ③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시행 시 교통비, 숙박비, 인력 인센티브 등 **운영비 별도 지원**의 경우 **사범사업 공급기관 부재하거나, 이동거리가 긴 농산어촌, 의료취약지, 도서 벽지지역 등에 한해 지원 필요**
 - ④ **통합돌봄 지침 내 표준모형과 지자체 특화모형의 사업목적**이 동일할 경우* 운영방식은 지자체 자율 결정하되, 본인부담 수준(정액/정률) 등 **사업 주요사항은 지침과 일치토록 권고**
 - * (사례)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목욕, 개인위생, 주거환경개선, 단기입소 케어안심주택 등
 - * (예시) 지침(25.10.31.기준) 내 이동지원 서비스 (1시간 27,000원 +/- 30% 범위 내) vs. 지자체 특화모형은 택시비 등 이동비용 실비 지원 ⇒ 지원단가 상한 일치, 본인부담 비율 일치
 - ⑤ 기존 전국단위 **일반예산사업 모형**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확대 시 **지원단가, 본인부담 등은 전국단위사업과 일치토록 권고, 중앙-지자체 사업 간 중복지원 제한 필요**
 - * (사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응급안전, 노인맞춤돌봄 등
 - ⑥ 동일 지자체 내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보험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본인부담 수준 역진** 등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기존 제도 수준으로 일치토록 권고**
 - ⑦ 일차의료(한의)방문진료, 방문구강 등 지자체 비급여 지원 관련 부적정 과잉의료 유발되지 않도록 **비급여 지원항목 적정성, 의료적 필요도 등 지자체에서 자체 모니터링 권고**
 - ⑧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의료기관 확대 검토 예정으로 향후 **병원급 수가 신설 시 해당 수가 적용해 추진 권고**
 - ⑨ 복지용구는 **본인부담 수준을 장기요양급여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 장기요양 복지용구 유사품목 지원 시 안전성·급여적정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에 한해 제공될 필요**
 - ⑩ **기타 비의료 일반방문형(사회보험 청구·활용 없음)**, 지자체 사업의 경우, 돌봄통합 사업 취지와 지원 적절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 설계 및 운영 권고**
 - * (사례) 방문정서지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인력 중심 방문구강관리 등

2 모델 예시

가 방문의료지원사업

▶ 개요

- 보건소(또는 시군구 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방문진료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또는 한의사)과 팀워크에 기반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

▶ 사업 대상

-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협업형 사업, 지자체 자체 방문의료사업에 활용 가능
* 재택의료센터 보건소 협업형 사업 우선 권고

▶ 제공기관 및 인력

- 보건소(또는 시군구 전담부서)에 배치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 물리(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은 선택적 배치 가능

▶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방문의료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의 의사와 협업으로 팀워크 기반 방문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이나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에게 별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는 방문의료지원사업이 아닌 해당 방문의료서비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의 기준에 따라 비용 부담

참고 방문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인력 수행 업무(예시:재택의료센터 참고)

- ①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 및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팀 단위(의사(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을 원칙으로 함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욕구파악 등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방문의료서비스 범위·주기·횟수, 약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 ②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의사(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월 2회 이상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진찰, 복약관리, 욕창·경관영양·정맥영양관리 등 의료·간호서비스제공
 - 「간호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③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상황 공유
의료 이외에 가사지원·주거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의료지원팀의 사회복지사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공유
- ④ 정기 팀 사례회의 참여
빈도 : 최소 월 2회 이상 실시
케어플랜 수립 : 포괄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목록 도출하여 해결방안 마련
상태변화 점검 : 서비스 제공과정 중 확인된 질병 상태 및 환경변화 공유를 통해 케어플랜 재조정

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개요

- 퇴원(예정)환자가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마친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불필요한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의 욕구에 따라 신속하게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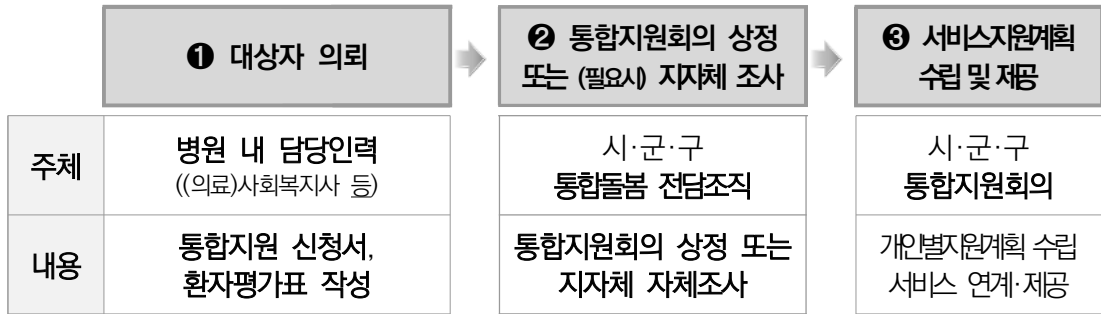
▶ 사업 대상

- 골절·낙상 등으로 수술 또는 치료 후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하는 환자 중 재가복귀를 위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포함

▶ 제공기관 및 인력 운영

- 지자체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병원 중에 협력병원 선정하여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 실시 (관련 사항 MOU 체결 권고)
 - * 예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환자지원팀을 갖춘 종합병원급 병원
- 지역특화서비스로 운영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의 보충적 제도로 운영되므로,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 관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의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관외 환자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관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력 의료기관은 퇴원(예정)환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등 담당인력 지정
 - 병원 내 사회복지사 등 담당인력은 시·군·구 전담부서에 의료·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대상자 의뢰

▶ 사업수행 절차



① (병원 내 담당인력 → 시·군·구 전담부서) 대상자 의뢰

- 병원의 담당인력은 퇴원(예정) 환자 중 통합돌봄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 발굴된 환자에 대해 신체·기능상태, 돌봄 욕구 등에 대한 환자평가를 실시
-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 전담부서에 의뢰(통합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자평가표(지자체 자체조사표와 동일) 등)

② (시·군·구 전담부서) 통합지원회의 상정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 실시

- 협력병원으로부터 환자평가표 등 퇴원환자 의뢰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접수한 이후 신속한 통합지원회의를 상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병원의 환자평가표 등의 서류가 완비된 경우, 지자체의 자체조사는 생략 가능
- 병원에서 환자 조사 없이 대상자만 의뢰한 경우,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자체조사 실시
→ 자체조사 결과를 통합지원회의에 상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③ (시·군·구 전담부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모니터링

- 통합지원회의에서 승인한 개인별지원계획에 기반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계·제공 및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수행

▶ 퇴원환자 연계 시 인센티브 단가

- 협약병원에서 선별평가-대상자 동의서-자체조사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로 의뢰 시 연계수당(2.5만원~5만원) 지원 가능 (기존 국가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 수가 수준 고려)
※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퇴원환자 통합돌봄 메뉴얼」참고

다 일상생활돌봄

▶ 개요

- 공적제도권에 진입하기 전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
 - ※ 단,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동일한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공통사항

- 제공기관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 활용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상생활돌봄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을 겸직할 수 있음. 다만, 2027년 3월까지 취약지 지자체(참고)에 한함
- 서비스비용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되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고려하여 적용 권고
 - ※ 평일 오전 9:00~18:00 외에 토·일·공휴일에 서비스가 진행된 경우 50% 할증 적용
 - (본인부담금) 원칙적으로 이용자 부담원칙이나, 저소득층 등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중심 일부 지원 가능
 - 지역상황에 맞추어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가능
 - *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등으로 활용 가능

| 참고. 통합돌봄 서비스 취약지 리스트 |

구분	시도	시군구
통합돌봄 취약지 기준(안) *114개	부산(4)	서구, 동구, 영도구, 기장군
	대구(4)	서구, 남구, 군위군, 달성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울산(1)	울주군
	경기(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강원(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10)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충남(12)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논산시
	전북(11)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김제시, 완주군
	전남(18)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7)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안동시, 칠곡군
	경남(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1)	서귀포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① 응급의료분야 취약지(98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1호 ('24.12월~)
- ② 인구감소지역(89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8호 ('24.2월~)
- ③ 성장촉진지역(70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4호 ('24.11월~)
- ④ 의료취약지역(56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 ('24.2월~)
- ⑤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군 지역

1) 가사지원

▶ 사업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욕구판정 결과(노인 통합판정조사,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 장애인 종합판정조사)에서 가사 관련 욕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돌봄인력 등 지자체 내 다양한 인력 활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가사공백을 지원
 - *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가사 전반 지원

▶ 서비스 비용(예시)

구분	일반수가	휴일수가
가사지원	- 1시간 24,000원 * 장기요양 방문요양 1시간 수가	- 1시간 36,000원(50% 할증)

※ 평일 오전 9:00~18:00 외에 토·일·공휴일에 서비스가 진행된 경우 50% 할증 적용

ㄷ 본인부담금(예시)

서비스 구분	서비스 단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률 20%~80%	본인부담률 100%
가사지원	1시간 24,000원	면제	4,800원~19,200원	24,0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초연금 등 기존 사업 수급기준 활용 가능

2) 식사지원

▶ 사업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욕구판정 결과(노인 통합판정조사,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 장애인 종합판정조사)에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신체활동 등 식사 관련 욕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 영양사, 조리원, 보조원 등 지자체 내 다양한 인력 활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상자 건강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정보를 바탕으로 식단을 마련하여 밑반찬, 식재료, 도시락 등 배달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비용(예시)

구분	일반수가	휴일수가
식사지원	- 1식 10,100원(배달비 포함) * 서울시 돌봄SOS사업 참고	- 1식 13,500원(50% 할증)

※ 평일 오전 9:00~18:00 외에 토·일·공휴일에 서비스가 진행된 경우 50% 할증 적용

ㄷ 본인부담금(예시)

서비스 구분	서비스 단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률 20%~80%	본인부담률 100%
식사지원	1식 10,100원	면제	2,020원~8,080원	10,1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초연금 등 기존 사업 수급기준 활용 가능

3) 동행이동지원

▶ 사업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욕구판정 결과(노인 통합판정조사,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 장애인 종합판정조사)에서 자립적인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지원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게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이동지원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 방식으로, 다른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제공 가능

▶ 제공인력 또는 제공 방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지자체 내 다양한 돌봄 인력을 활용한 이동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등을 위해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돌봄인력 등이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동행하여 이동을 지원*
 - 장기지자체 이동지원센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공공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예약곤란, 배차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택시를 이용한 동행 지원도 가능하며, 이동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비 등은 이용 대상자가 부담

▶ 서비스 비용

- 돌봄인력 지원 시(예시)
 - (제공인력 이용 수가)

구분	일반수가	휴일수가
이동지원	- 1시간 17,000원 *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참고	- 1시간 25,500원(50% 할증)

※ 평일 오전 9:00~18:00 외에 토·일·공휴일에 서비스가 진행된 경우 50% 할증 적용

※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지침 개정 전 단가로 이미 제공기관을 모집한 경우 해당단가로 운영 가능

ㄱ. 본인부담금(예시)

서비스 구분	서비스 단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률 20%~80%	본인부담률 100%
이동지원	1시간 17,000원	면제	3,400~13,600원	17,0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초연금 등 기존 사업 수급기준 활용 가능

4) 개인위생 지원

▶ 사업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욕구판정 결과(노인 통합판정조사,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 장애인 종합판정조사)에서 일상생활수행상 개인위생 유지를 위한 관련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전문기술을 가진 지역주민 등 지자체 내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단, 이미용 서비스의 경우 이미용 자격증 필요

▶ 서비스 내용

- 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지원을 위해 개인위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제공

▶ 서비스 비용(예시)

구분	일반수가	휴일수가
개인위생지원	- 방문목욕 1회 77,000원 * 장기요양 방문목욕수가 참고 - 이미용서비스 1회 24,000원 * 지자체에서 교통 지원시 18,000원	- 방문목욕 1회 115,500원(50% 할증)

※ 평일 오전 9:00~18:00 외에 토·일·공휴일에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50% 할증 적용

ㄱ. 본인부담금(예시)

서비스 구분	서비스 단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률 20%~80%	본인부담률 100%
개인위생 지원	방문목욕 1회 77,000원	면제	15,400원~61,600원	77,000원
	이미용 1회 24,000원 * 지자체에서 교통 지원시 18,000원	면제	4,800원~19,200원 * 단, 지자체에서 교통수단 지원시 3,600원~14,400원	24,000원 * 단, 지자체에서 교통수단 지원시 18,0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초연금 등 기존 사업 수급기준 활용 가능

라 주거환경개선

▶ 개요

-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설비나 부품 설치, 교체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및 돌봄제공자의 편리성 향상

▶ 사업 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욕구판정 결과(노인 통합판정조사,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 장애인 종합판정조사)에서 지역생활 유지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자에게 제공(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 (서비스 제외 대상) 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은 가구 (LH수선급여사업, 장기요양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등) 또는 비주택 및 거주불가가구(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 제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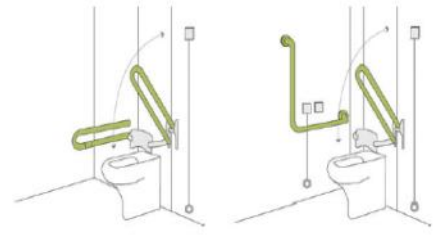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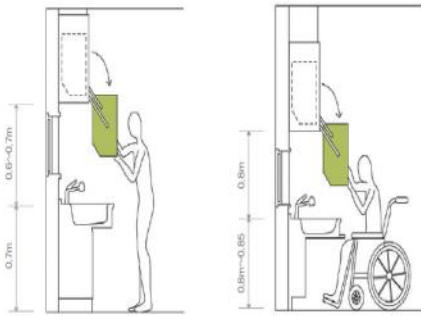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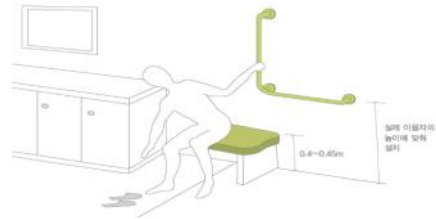
- 공모, 협약 등을 통해 선정된 공공 또는 민간 시공업체 활용 가능

▶ 서비스 비용

- 급여품목 시공시 1인당 생애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자체별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가능

구분		급여품목
안전 (12)	낙상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가스자동 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 손잡이, 문 교체

예시 주거환경 개선 항목 및 시공	
구분	내용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확보, 넓이 유효폭(1.2m)확보, 풋라이트 설치, 안전손잡이, 지붕설치 그 밖의 단차 및 장애물 제거 등
현관/출입문	출입문 유효폭(85-90cm)확보, 문 옆 공간(60cm) 확보, 센서등, 경사로, 트렌치 설치, 휠체어 보관 공간(1.5×1.5) 확보, 각종 보조 손잡이 설치 등 * 여닫이문의 경우 90도 이상 열림 확인
거실/복도	이동간 각종 손잡이 설치, 휠체어 방향전환공간(1.5m)공간확보, 비디오폰 설치, 비상연락장치, 조명(600~900럭스, 청각), 시각경보기 설치, 단차제거 등
주방	좌식싱크대, 취사용밸브, 회전공간 확보, 휠체어 적응형 가구, 각종 수납장 높낮이 조절, 높낮이 조절형 주방가구 등
화장실	센서등, 욕실문 유효폭(80cm)확보, 미닫이 미서기문 설치, 높낮이조절 세면대 및 샤워기(수전 등), 좌변기 안전손잡이 설치 및 공간(75cm)확보, 휠체어 회전공간(1.4×1.4) 확보, 바닥 난방 등
바닥/발코니	미끄럼 방지 마감, 방풍턱 및 마루귀틀, 창호틀 등



I
예시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구분	내용
문	레버형 손잡이, 문하부 파손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각종 높이조정, 리모컨 스위치 설치 등 

* 출처: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서(행안부, 2021)의 주택개조사업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마 케어안심주택

▶ 개요

- 돌봄필요도가 있는 대상자가 안전한 돌봄환경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 제공

▶ 서비스 대상

- 지역 내 거주를 원하는 퇴원환자 및 지역 내 거주가 불완전한 돌봄대상자

📖 4대 구성 요소

- (대상) 특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입주자격 중심이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케어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임(보편적 성격, 돌봄서비스 욕구 사정 중심)
- (주택) 자가나 임대계약이 입주자 명의로 이루어진 **주택의 거주**를 의미하며, 그 형태는 공공임대주택 이거나 민간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단, 시설거주 미포함**)
- (주거지원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개조(집수리)**, 주거비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
- (통합돌봄 서비스 및 사례관리) 주거지원 이외 **통합돌봄 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지속

▶ 운영방식

- 집합적 건설 주택 활용 유형
 - 케어안심주택 용도로 설정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방식을 통해 공급하여 활용
- 산재형(근접형) 케어안심주택 확보 유형
 -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포함)의 일정 물량을 케어안심주택 용도로 설정하여 공급받아 활용
- 중간집
 - 퇴원(소) 후 임시적으로 단기적(3개월 이내 권고)으로 주거·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단기입주형으로 케어안심주택 활용

중간집 세부 사항 안내

1) 개요

- 병원·시설 퇴원·퇴소 후 돌봄 필요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돌봄환경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 제공

주요 개념

- **(지원주택)**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위해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기존의 케어안심주택)
- **(중간집)**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등에 병원·시설 퇴원·퇴소 후 단기간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지원하여 재가 복귀를 도모하는 주거 모델로, 지자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활용하여 임시적으로(통상 3개월 이내)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단기 회복형 지원주택’

- 중간집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의 통합돌봄전담부서에서 총괄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거복지팀과,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에는(방문보건업무나 지역사회 중심 재활업무 관련팀 등) 보건소 협업 권고
 - LH나 지방공사 협의 및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자원 활용을 위해서 주거복지팀 등 주거복지 관련 부서가 주택 확보 등에 관한 총괄 역할 수행

2) 주택 인프라 유형

- LH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고령자복지주택 등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주택 : 도시재생사업 통한 신축리모델링, 지자체 공유재산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장기 임차한 민간주택(민간주체 소유 사회주택, 무상 임대차계약 등 포함)

3) 중간집 운영 형태 및 운영 기관

- 운영 형태
 - 집합형 : 주택(건물) 전체를 중간집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기관이 주택 내에 입주하여 전담인력이 상주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상 자체 서비스 제공·상시 케어가 용이
 - 분산형 : 영구임대아파트 등 일반 세대 중 일부를 중간집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기관의 주택 입주는 어려우며 지역 내 돌봄자원 연계가 필수
- 운영 기관 : 지자체 담당 과(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해당 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해당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 * (예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4) 입주 대상자

- 퇴원환자(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로, 단기간 의료·재활·요양·돌봄 등 서비스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고령자 (이하 예시)
 - 고관절 골절, 척추골절 등이 있는 사람(기타부위 골절의 경우 담당자 판단에 의해 입주 가능)
 -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사람
- 기타 지역거주자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기능 회복을 위한 돌봄이 필요하나 주거 조건 등이 열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 등
- ※ (추가 고려 가능사항) 단, 24시간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지·정신장애로 단기간 개입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으며, 64세 이하라도 노쇠·질병·사고·장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중간집 입주자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

중간집 입주자 발굴	중간집 신청, 입주자 접수	사전(자체)조사, 통합판정조사 등	입주자 적격성 심사·선정	선정결과 통보, 입주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건보공단 등	입주 희망자 본인 혹은 가족 등이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전조사 (읍·면·동으로 접수되는 경우) → 자체 조사 (시·군·구) 또는 통합판정조사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결정	시·군·구 → 입주자

5) 지원 서비스

- 입주자의 기능회복 역량, 욕구, 사적·공적 자원 등을 파악하여 지원(통합돌봄사업의 개인별지원계획 연계)
- 지원서비스 내용
 - 중간집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중간집에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서비스는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서비스 또는 기존 복지사업 서비스를 다양하게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예시: 일상생활돌봄(청소·세탁·식사 등), 정서 및 상담지원, 의료·재활·일상생활훈련(재택의료, 방문진료·간호, 영양상담·관리, 복약지도 등), 동행 지원, 안전(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원 서비스 등
 - ※ 1인당 한도액·단가 등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정 가능하며, 이 외 내용은 지역 특화서비스 모델(?p) 또는 연계서비스(95p) 목차를 참고하여 운영

6) 중간집 운영기관 인력

- 연계 인력(비상주 인력): 다학제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운동치료사 등) 협조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
- 전담 인력(상주 인력):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7) 중간집 운영 예산

- 통합돌봄 사업예산(지역 특화 서비스)으로 활용
- KB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지원 예정('26년, 별도 공모)

참고 고령자 대상 국토부 공공임대주택공급 사업 현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건설형	(영구임대)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고령자·고령자 부양가구에 1순위로 공급하여 시세의 30%로 50년 이상 임대
		(국민임대) 평균소득 70% 이하 저소득 고령자·고령자 부양가구 등에 우선공급하여 시세의 60~80%로 30년 이상 임대
		(행복주택) 평균소득 100% 이하 고령자에 공급하여 시세의 70~80%로 20년 임대
		(통합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자에게 우선공급(150% 이하 일반 공급)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임대
	매입형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고령자에 1순위로 시세의 30%로 기간 제한없이 임대
	전세형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고령자에게 1순위로, 기간 제한없이 지원 (세대당 6천~1.2억원 지원)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무장애설계 적용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에게 공급 * 주거복지동사업('11~'16) → 공공실버주택('16~'17) → 고령자복지주택('19~)	
	(고령자리모델링) 도심 내 노후주택 등을 매입·리모델링(철거 후 신축 포함)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후 시세 50% 이하로 공급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 LH 등 주거 공급자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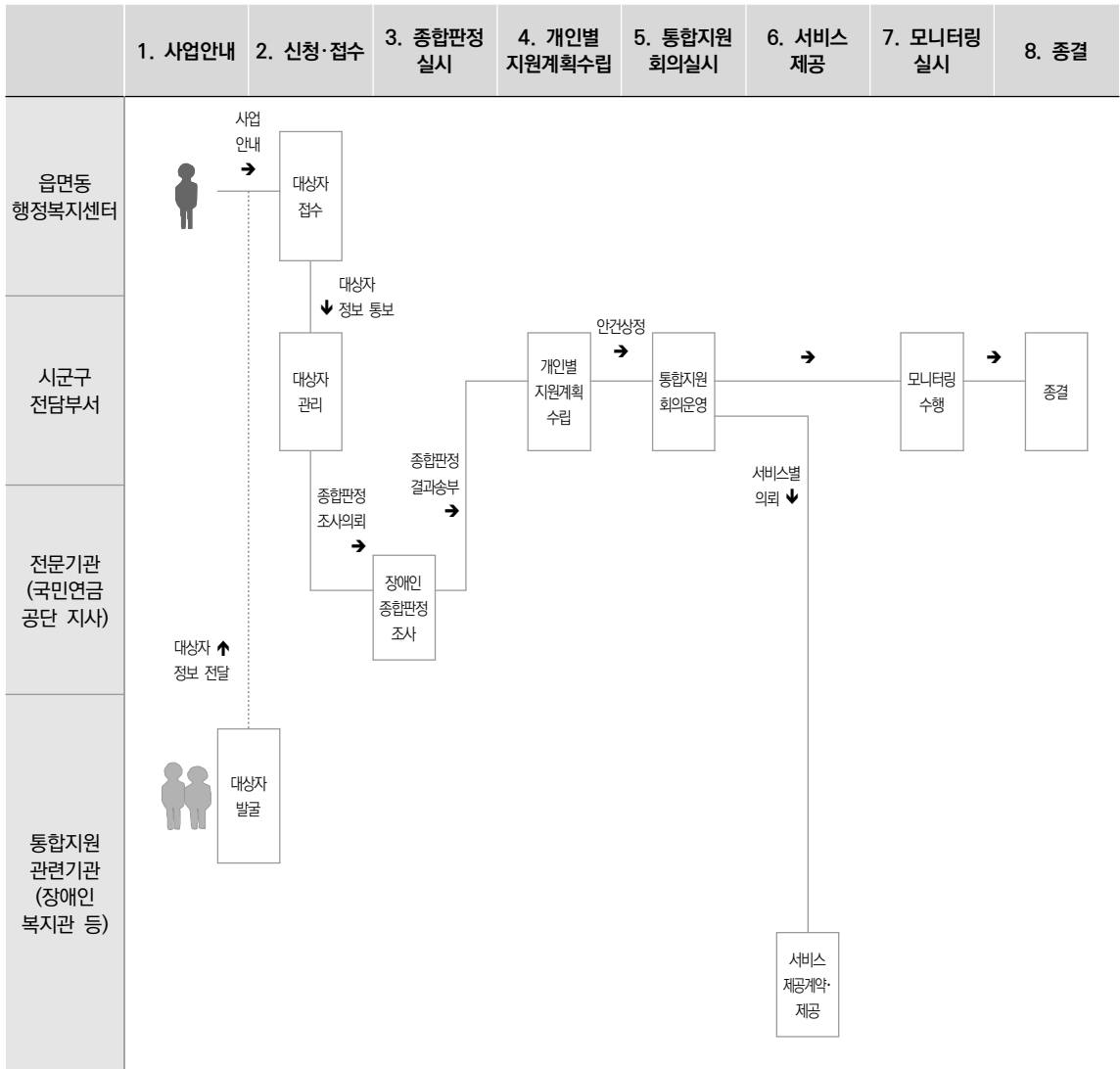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01 업무절차 개관

1 업무 절차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절차 : 장애인 대상 |



| 장애인 통합돌봄 업무 절차 |

㉑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사업 안내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사업 안내 및 사업 참여 희망자에 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대상자 정보 전달
㉒ 신청·접수·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시·군·구 전담부서에 통보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대상자의 신청정보 확인 및 접수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종합판정조사 의뢰
㉓ 종합판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 종합판정조사 실시* 및 결과를 시·군·구 전담부서에 통보 *필요시 지자체 동행조사 실시
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판정조사 결과(통합지원판정서 등)를 토대로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 포함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에는 시·군·구 담당자,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민관협의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개발원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논의
㉕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개인별지원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별 가용 자원 (인력, 일정 등)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3개월 단위 주기적 실시, 모니터링 실시 전과 비교하여 대상자의 상황 등 변화된 결과 기록
㉖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입원·입소, 사업 참여 목표 달성 및 단순 서비스만 잔존하는 등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종결

02 세부 추진절차

1 대상자 신청·접수

▶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 ④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인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④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 신청인 및 필요서류

- ④ (신청인)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 신청가능 가족의 범위 :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 단, 신청 대상자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기 2개월 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노인 편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노인 편에 따라 접수 등의 절차 진행
- (신청 가능자)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다음의 각 기관(시설)의 담당자가 통합돌봄사업 신청 가능

 -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③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 외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도 신청 가능)
- (직권신청)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아래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합돌봄을 신청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시·군·구가 직접 신청(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4조)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⑥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 직권신청 처리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 확인 필요(신청서 서식 중 직권신청 동의란 활용)

☉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전담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필요서류) 통합돌봄 신청서 등 신청서 서식 내 필요서류 준비 ... 서식5 서식6

▶ 접수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및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대상자 신청과정에서 복지멤버십을 활용하여 가입 및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 연계 가능여부 우선 확인 → 시·군·구 전담부서에 통보

※ 복지멤버십 활용 서비스 우선 연계

• 대상자별 연계가능 서비스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규 대상자의 통합돌봄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시 동시신청 안내
- 행복이음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을 통해 대상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조회(약 80종* 구비 중)
- 상담 또는 개인별 개인별지원계획 대상자 통보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공기관에 연계·의뢰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가입 시 가구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

④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상담 접수시 안내사항

사전 고지 및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통합돌봄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통합돌봄서비스 종결사유에 해당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추가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 안내 후,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장애인 담당자(복지행정팀)에게 안내

④ 읍·면·동 장애인 담당자(복지행정팀) 상담 접수시 협조사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신규, 갱신)한 대상자의 경우
※ 추가적으로 통합돌봄사업 안내 후,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안내

[참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사업개요_근로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IV

참고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서비스 |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파악 • 맞춤형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 계획에 따라 이용 가능 기관 및 서비스 안내 • 계획 진행 상황 모니터링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 활동: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 음악, 영화·공연 관람 등 • 이용 시간: 기본형(1달에 132시간), 확장형(1달에 17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 활동: 모임, 직업 준비, 자립생활 준비, 미술활동, 음악, 영화·공연 관람 등 • 이용 시간: 1달에 66시간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부모교육: 발달장애 자녀(만 0~9세)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시행 • 성인전환기 부모교육: 발달장애 자녀(만 12~18세)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 취업준비, 자립 등 성인이 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교육 • 성인권 교육: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에게 성교육과 관련 정보 공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중 선택하여 이용 •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관광지 방문, 문화체험, 산이나 바다 여행 등 • 자율여행: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일정, 장소, 프로그램을 정하는 여행
긴급돌봄서비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 서비스: 낮 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타 기관 연계 등), 주거 생활지원(식사지원, 야간 돌봄 등) • 이용 기간: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이 다름. 한 번 입소 시 최대 7일까지 이용 가능
권리구제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이 겪은 피해, 문제 조사하여 해결 • 피해 발달장애인 안전 지원 • 경찰서에 가거나 재판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 동행 • 필요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후견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은행 이용, 돈 관리, 병원 진료, 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여러 가지 신고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 체육활동, 요리활동, 예술활동, 야외활동 등 지원

▶ 신청의 취소

- 의료·요양 돌봄통합 지원 결정 이전,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조사의뢰 중 신청이 취소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부서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취소 처리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송
 -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부서가 아닌 신청인 등으로부터 종합판정조사 신청취소 의사를 확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부서에 신청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취소 요청에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조사의뢰를 반려할 수 있음
- ※ 신청인의 포기 의사 표명, 신청인 사망, 신청인의 특별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등

▶ 종합판정조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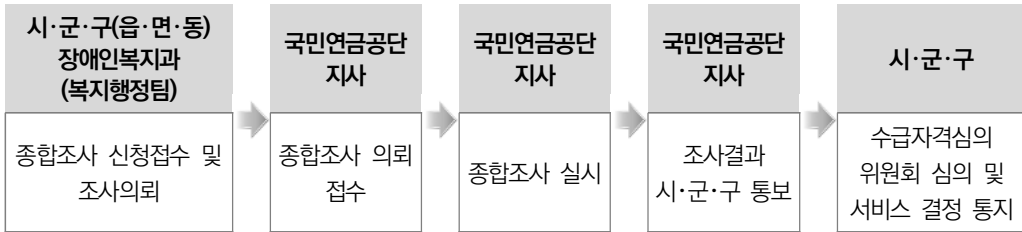
- 시·군·구 전담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종합판정조사 의뢰
- 시·군·구 전담부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종합판정조사 의뢰 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장애인 활동지원 동시 신청 여부, 종합판정조사 시 지자체 동행 여부도 함께 체크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 ... **서식11**
 - ※ 신청 제외대상자는 조사 의뢰대상자가 아니어서 조사의뢰가 불필요
 -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종합판정조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경우 지자체 동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종합판정조사가 지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와 지사 담당자가 협의하여 조사 방식(대면, 비대면) 변경·결정 가능
- 조사 등 의뢰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접수 ... **서식11**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행복e음에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종합판정조사 의뢰

활동지원 신청 여부 확인
<p>㉔ □예(□수급자, □등급외자)</p> <p>①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급여가 발생한 경우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서식11]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내의 활동지원 신청 여부에 [☑예(☑수급자)] 체크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전송</p> <p>②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서식11]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내의 활동지원 신청 여부에 [☑예(☑등급외자)] 체크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전송</p>
<p>㉕ □아니오(□미신청, □신청중)</p> <p>① 통합돌봄 서비스만 신청한 경우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서식11]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내의 활동지원 신청 여부에 [☑아니오(□미신청)] 체크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전송</p> <p>② 통합돌봄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한 경우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서식11]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내의 활동지원 신청 여부에 [☑아니오(☑신청중)] 체크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전송</p>
동행요청 필요 여부 확인
<p>①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동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서식11]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내의 동행요청 필요 여부에 [☑예] 체크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전송</p>
<p>②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동행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 → [서식11]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내의 동행요청 필요 여부에 [☑아니오] 체크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행복e음을 통해 전송</p>

| 서비스 신청 사례별 업무절차 |

④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활동지원 등 8종)만 신청한 경우(시·군·구=장애인 담당부서)



⑤ 통합돌봄사업(의료·건강, 지역자원)만 신청한 경우(시·군·구=통합돌봄 전담부서)



※ 서비스별(④, ⑤) 업무절차를 각각 진행하여 조사 결과를 대상자에 통지

참고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8종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1	활동지원 서비스	-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2	거주시설 서비스	- 종합조사 결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
3	주간활동 서비스	- 18세 이상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4	보조기기 서비스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
5	이동지원 서비스 (주차표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
6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
7	응급안전 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
8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적응도 향상

사업개요_근로면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서적

2 대상자 발굴

▶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대상자 발굴

- ⦿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관련 사업대상자 중 복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대상자 발굴
 - (읍면동 단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에서의 발굴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협업
 - (시군구 단위)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복지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대상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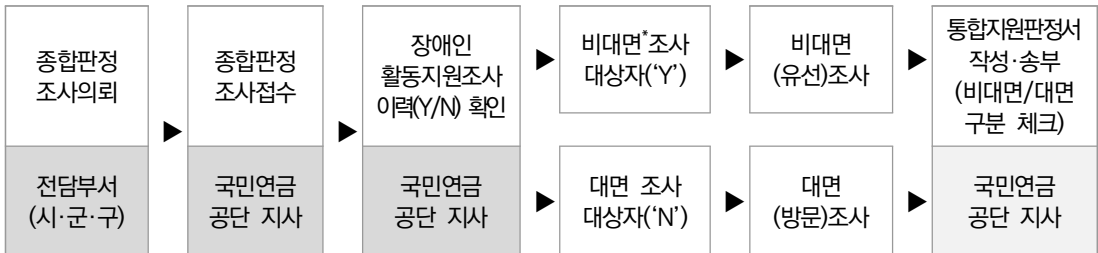
- ⦿ (민·관 협력 강화) 민·관 또는 민·민 등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한 복합적인 의료·돌봄의 욕구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자 발굴
- ⦿ (발굴경로의 다각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병원, 장애인단체 등으로 발굴경로를 다각화하여 장애인 대상자 발굴
 - 예시: 장애인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퇴원 예정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으로부터 잠재적 의료·돌봄의 복합적인 욕구 장애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돌봄이 필요한 욕구 및 대상자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 (수행방안) 시·도, 시·군·구 등과 협업하여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리적 특성, 장애유형, 연령, 장애특성 등을 반영한 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 장애 관련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3 종합판정조사 실시

▶ 종합판정조사(비대면/대면) 업무처리 절차



* 통합돌봄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한 국민연금공단의 유효한 활동지원조사 이력이 있는 경우(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조사 유효기간은 결과값을 행복e음으로 송신한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임)

▶ 수행주체 및 방법

- ① (수행주체) 국민연금공단 지사
- ② (조사수행방법) 통합돌봄 신청자 중 활동지원조사 이력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후 비대면/대면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대상자 욕구 및 상태 확인
 - (비대면 조사) 유효한 공단 활동지원조사 이력이 있는 대상자

체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조사대상 중 활동지원조사 이력 확인이 불가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전화조사가 불가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비대면 조사시 주거환경영역은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대면 조사) 대상자 중 공단 활동지원조사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종합판정조사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시군구 전담조직 담당자의 동행방문 가능 ... **서식15**
 - (지자체 담당자 동행 시)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는 대상자의 생활상태 및 본인부담 가능여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의사 여부 등을 확인 ... **서식13**

- ④ (통합지원판정서 작성) 장애인 종합판정조사표(서식15)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판정서 작성
 -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를 확인하여 의료건강서비스 및 지역자원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기초 의견 제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 활용
- ④ (수행기간) 종합판정조사 의뢰서 접수일 이후 통합지원판정서 연계까지 20일 이내 (근무일) 기준
 - ※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 거주 등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10일(근무일 기준)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④ (결과 안내) 종합판정조사 결과는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이후 계획 내용과 함께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 ④ (종합판정조사 결과 통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시·군·구 전담부서로 행복e음을 통해 통보... **서식17**
 - ※ 이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종합판정조사표의 내용을 시·군·구 전담부서의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판정서를 함께 전송

4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개요

- ④ (개념) 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의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목표 설정, 필요서비스 내용 등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서식18**
- 장애유형, 특성 등에 맞는 복합욕구를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④ (법적 근거)

법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 ④ (수립주체) 시·군·구 전담부서
 - ☞ (기술지원) 시군구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술 지원
- ④ (대상자) 종합판정조사 결과 회신자 전체
- ④ (수립방안)

- 종합판정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장애인의 주요 욕구 내용과 요청하는 욕구 간 상이한 경우 담당자가 객관적인 대상자의 현황 기술,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 개인별지원계획 구성 내용은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전 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 방법, 기관 등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확인
- 장애인의 주요욕구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개입 시기와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주기, 서비스 목표, 제공기관 등 기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구성 및 내용

① (개인별지원계획 구성 내용)

구분	주요내용
0.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가구형태, 사회보장 수급권, 주수발자, 대상자 유형(65세 미만 장애인: 장애정도, 장애유형, 활동 지원 신청여부, 시설퇴소 여부)
1. 주요 욕구(문제)	노인: 기능, 인지행동, 사회행동, 간호관리, 주거환경 장애인: 기능동작, 건강상태, 영양상태, 구강상태, 주거환경
2. 서비스 제공목표	우선순위
3. 필요서비스 내용	가. 의료 및 건강 나. 일상생활 돌봄 다. 자립·주거 라. 기타
4. 기타	종합의견(오픈기입), 본인동의 및 보호자 설명, 차기 계획검토일자

② (서비스 제공목표) 장애인의 사회·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달성 가능하고 구체적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체크 참고 개인별지원계획 목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

- 종합판정조사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동 사례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장애인의 욕구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등 확인
-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등 확인
- 장애인의 서비스 단기, 장기목표, 필요서비스, 개입 목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 등 확인

- ③ (필요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통합지원판정서에서 장애인의 욕구목록을 토대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의 특화서비스를 포함한 영역별 서비스 (보건의료, 건강, 생활지원, 주거복지 등)를 대·중·소분류로 구분하여 기재
 - 장애인에게 제공될 서비스별 제공 주기와 제공기관 등 기재
- ④ (종합의견 등) 상기 작성 내용 외 추가 검토 필요 의견 등 기재

예시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계획수립일		2025년 9월 xx일		담당자		김00	
■ 대상자 기본사항							
성명	강00			생년월일	1990년 XX월 XX일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0아파트 00동 00호						
실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0아파트 00동 00호						
연락처	자택 02-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비상 연락처	①성명 xxx	관계 부	연락처 010-1111-1111	②성명	관계	연락처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비독거(<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노부모 <input type="checkbox"/> 성인자녀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가구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구원 수 (1 명)		가구 내 등록장애인 수 (명)				
사회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보훈) <input type="checkbox"/> 일반가구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수발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input type="checkbox"/>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친구·이웃 <input type="checkbox"/> 사적간병인 <input type="checkbox"/>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수발자의 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예(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수발자의 사회활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상자 유형	[]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input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5등급 <input type="checkbox"/> 인지기원 <input type="checkbox"/> 등급외(A, B) <input type="checkbox"/> 기각·각하 <input type="checkbox"/> 등급판정 신청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돌봄군 <input type="checkbox"/> 중점돌봄군				
	[] 장애인 (65세 미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실외 보행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주일 이내 퇴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자폐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자폐성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 중복시 모두 체크				
		활동지원 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예(<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등급외) <input type="checkbox"/> 아니오(<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중 <input type="checkbox"/> 신청 예정)				
		시설퇴소 (예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주요 욕구(문제)							
노인							
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어려움 존재,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 존재.						
	간호지원이 필요한 상태. 주기적인 건강관리 필요.						
	저체중과 영양결핍 존재.						
	잇몸질환 존재. 의치사용 중임.						
■ 서비스 제공목표							
1순위	방문진료	2순위	건강관리	3순위	영양관리		

사업개요_연동편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서식

■ 필요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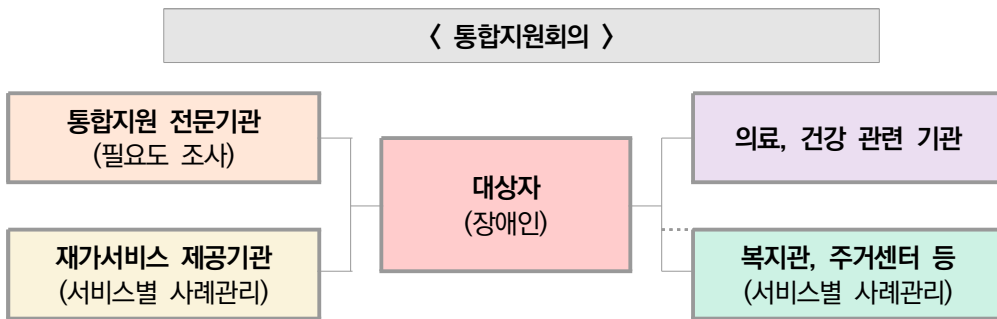
구분 (대분류)	서비스 내용(중분류)	서비스내용 (소분류)	서비스 제공주기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의료 건강	방문진료, 방문재활, 건강관리, 구강진료		[<input type="checkbox"/>]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1) 회	재택의료센터, 의원, 병원,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기요양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생활지원	가사지원, 식사지원, 영양관리		[<input type="checkbox"/>]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3) 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			[] () 회	
기타 (타사업)	[] 기타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자율가입/오픈기술방식)
종합의견	○ 담당자 의견 및 특이사항: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태로, 방문의료가 시급함 ○ 이용 중인 서비스: 복지관 무료 도시락 배달(1주 1회, 식사지원) ○ 희망 서비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본인동의 및 보호자 설명	[<input type="checkbox"/>] 실시 [] 미실시		차기 계획검토일자	2025 년 XX 월 XX 일

5 통합지원회의

▶ 개요

- ⊕ (개념)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개최·운영관리
- ⊕ (구성) 시·군·구 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장애 등),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 장애인복지관,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등
 - ☞ 필요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석

Ⅰ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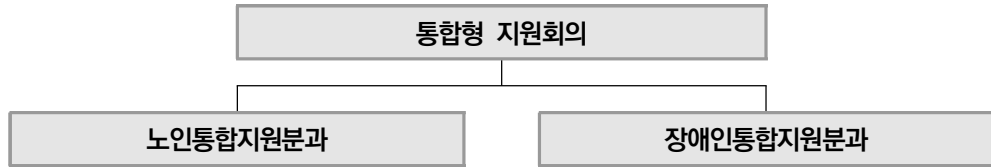
- ⊕ (운영주기 및 방법) 월 2회 이상 정기적(대면회의) 개최를 권장하나, 신속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 필요시 비대면 회의 가능 ... 서식19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회의 운영방법(대면 회의 & 비대면회의)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통합지원회의시 외부위원에게 통합지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작성 ... 서식20
- 지자체의 여건과 자율성에 따라, 통합형 회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 통합지원회의의 예시

- (1안) 통합지원회의를 개최일에 노인과 장애인의 안건을 시차를 두고 운영

차시	시간 배분	내용	비고
1차시	(10:00 ~ 11:00)	노인 사례 논의	노인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참석 유도
2차시	(11:00 ~ 12:00)	장애인 사례 논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참석 유도

- (2안) 안건이 많을 경우, 지자체는 세부 분과 설치 및 운영



▶ 주요 내용

- ◎ (통합지원계획 승인) 종합판정조사결과에 따라 계획된 서비스 내용의 적합성 논의 및 추가적인 검토의견 등 제시 → 최종 확정
 -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원계획 내용 설명, 참석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회의 진행
 - ☞ 통합지원회의 시,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 ◎ (통합지원계획 변경)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과정에서 욕구·상태변화 확인, 서비스 부적합 시 통합지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변경
- ◎ (대상자 종결)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거나 대상자의 참여 거부 등 종결사유에 해당될 경우 통합지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종결 처리

▶ 개인별지원계획 확정·통보

- ◎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안내 ... 서식21
 - (계획내용 통보) 종합판정서 안내일 이후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대상자(보호자)에게 최종 승인된 개인별지원계획 안내(통보서 발송)
- ◎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보공유 및 서비스 의뢰 ... 서식22

6 서비스 의뢰 및 제공

▶ 서비스 의뢰

- ④ (개념)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상황 및 장애인의 사회 환경 및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는 과정
 - *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 ④ (운영시기)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후 종결까지
- ④ (시·군·구 전담부서)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승인된 개인별 각 서비스 제공을 의뢰 ... **서식22**
 - * 서비스 의뢰시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모니터링 엑셀 양식(이하 모니터링-서비스 제공기관 기록지)도 서비스 의뢰시 송부
- 대상자에게 연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 본청 및 보건소 등 해당 사업부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및 의뢰

▶ 서비스 제공 및 실적 관리

- ④ (서비스제공) 제공기관은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서비스 내용 접수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추가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 그 결과를 기록지*에 기술 및 보관... **서식24**
 - *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록은 기록물(문서 또는 데이터)로 보관
- ④ (실적관리) 시·군·구 전담부서는 제공기관 및 건보공단에서 회신된 서비스 실적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전담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내용을 시·군·구 전담부서에 제출 ... **서식24**
 -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시군구 전담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

7 모니터링

▶ 개념

- 제공기관별 계획 및 결과를 기록하여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지 점검하는 과정

▶ 대상자

-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이 확정된 자

▶ 모니터링 내용

- (정기 모니터링) 통합지원회의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 (주체) 시·군·구 전담부서(모니터링 실시 및 총괄관리)
 - (운영주기)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기로 실시
 * 다만 개인별지원계획의 내용이 대상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모니터링을 개인별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할 것을 권고
 - (확인사항) 서비스 목표·제공계획 등을 점검 및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종결을 위해 서비스 이용현황, 만족여부, 상태변화 등을 파악... 서식23
 - (서비스 이용현황) 개인별지원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 불일치, 미제공 사유, 계획 변경 필요성 등 파악
 -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만족여부)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시 만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대상자 상태변화) 모니터링 대상자의 상태변화 여부를 확인
 - (서비스 목표 및 제공계획 변경여부)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대상자의 상태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존 계획의 변경필요여부 확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내용/제공기관/종결 등의 사유를 체크하여 기록
 - (종합의견) 모니터링 실시결과 관련 담당자의 추가적인 의견 제시
 - (방법) 유선 및 대면방문을 통해 서비스가 연계된 대상자의 상태변화, 서비스 이용여부 등의 모니터링 수행결과를 시스템 입력
 * 모니터링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력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생활환경 확인 등은 지자체 내 다양한 모니터링 지원인력(지역주민조직, 노인일자리사업 등) 활용 가능

- ④ (수시 모니터링) 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시군구 전담부서로 통보되는 경우, 시군구에서 즉시 모니터링 수행
 - * 수행주체, 역할, 절차 등 정기 모니터링과 동일
 - (제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내용 확인 요청 시 자료 제공 등 협조
- ④ (모니터링 결과 반영) 대상자의 상태변화로 서비스 추가, 서비스 종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또는 종결 처리
 -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신속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 시,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선제공 후 통합지원회의로 사후 승인 가능

▶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 65세 도래시 절차**

- ④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65세에 도달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서식 14)를 활용하여 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욕구목록을 개인별지원계획 종합의견에 작성하고, 필요 서비스 보완 후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노인 관련 서비스 추가 연계
 - * 장애인 모니터링 이후 노인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의 시스템 입력은 제한되므로, <표>(77p)를 참고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종합의견에 욕구목록 작성

8 대상자 종결

④ 대상자

- 통합지원회의를 거친 서비스 연계 대상자 중 종결사유가 발생한 자

④ 종결사유

※ 3개월 미만의 병원(시설) 입원(소),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시에는 종결이 아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이후 3개월 이상 사유 존재시 종결처리

- 사망, 전출
-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원(시설) 입원(소)
 - ※ 병원(시설)에 입원(소)하여 최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에서 종결. 단, 모니터링과정에서 병원(시설)의 입원(소)가 확인된 경우 종결처리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 그 외 통합지원회의에서 종결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예시 : 복합적인 욕구해소로 1가지 서비스 이용만으로 가능한 경우
(건강관리+ 방문요양+ 주거환경개선→방문요양서비스만으로 생활가능)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만 이용할 경우 시·군·구 전담부서의 자원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종결여부 결정 가능

④ 종결기준일

- 사망과 전출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일을 종결일로 적용
- 사업참여 중단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논의가 완료된 날을 종결기준일로 적용

④ 종결 처리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종결사유(사망, 중단 의사 표시, 전출, 입원(소),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등) 발생 시 바로 종결로 처리 및 시·군·구 전담부서에 내용 전달
 - * 대상자 종결을 시스템에 입력시 종결사유 및 담당자 입력
- 시·군·구 전담부서
 - 통합지원회의 안건 상정 및 논의 후 최종 대상자 종결 처리

▶ **종결 후 재신청, 전출 등에 따른 행정사항**

- ① 지원 종결 후 재신청하거나 ② 전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받던 자가 새로 전입한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종합판정조사를 생략하고 기존 종합판정조사 결과 활용 가능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 기존 종합판정조사 결과가 대상자에게 조사결과가 안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 시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직전 전출 지자체 담당자에게 대상자의 통합돌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전 전출 지자체 담당자는 이에 협조

03 연계서비스

▶ 장애인 대상 공통 서비스

- (전국서비스) 2대 핵심서비스 + 13대 추가서비스로 구성

- (핵심서비스) 전국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공가능한 9가지 기본서비스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동지원,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으로 구성
- (추가서비스)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13가지 서비스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프로그램,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수어통역,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보육·교육, 언어발달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으로 구성
- (신규서비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 도입될 서비스로 구성 예정

Ⅰ 장애인 통합돌봄 주요서비스 목록

구분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	
전국 서비스	9대 핵심 서비스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영양·구강·육창·피부 건강 관리, 사회참여,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 목욕)	
		•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건강지원)	
		• 장애인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 활동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감지로 구조, 구급 지원)	
			• 이동지원(주차표지, 특별교통 수단 등) (주차표지 및 장애인콜택시, 리프트 특장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주거편의, 집수리 지원)	
			• 보조기기 지원 (보행차 등 보조기기 무상지원)	
	13대 추가 서비스	•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 치과) (건강관리 및 전문적 장애관리)	•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시설 등 갖춘 기관 지정)	• 수어통역 (농아인 수어 지원)
		• 장애 친화 산부인과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기관 연계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 지원)
		•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시설 등 갖춘 진료센터 지정)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체력점검 및 체육활동 연계 상담)	• 장애인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교육, 청소년 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
		• 장애인 공공재활프로그램 (권역재활병원 통해 재활프로그램 제공)		• 언어발달지원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임산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사업개요_연도별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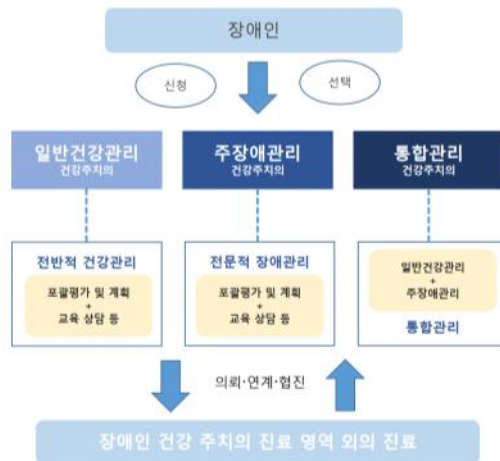
사업

1 보건의료·건강관리

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목적

- ①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②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본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 등 미충족 의료수요 충족
- ③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를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 건강문제의 예방적 관리 강화를 통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합병증 및 2차 장애로의 이환 방지



| 건강주치의 서비스 체계도 |

▶ 서비스 대상

- ⊕ 만성질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또는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
- ⊕ (교육·상담)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 ⊕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
- ⊕ (방문 서비스)
 - 방문 진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내용

-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방문간호: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
- ④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
- ④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④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 ※ 환자 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외에 진료(검사료, 처치료 등)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

분류	내용	산정 횟수	금액(원)
장애인 건강 관리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일반건강관리 - 의원(중증) - 의원(경증)	연간 1회 이내	62,950 49,270
	(2) 주장애관리 - 의원(중증) - 병원급 이상(중증)		62,950 62,950
	(3) 통합관리 - 일반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변경된 경우 - 의원(중증)		31,480 94,430
중간점검료	(1) 일반건강관리 - 의원(중증) - 의원(경증)	연간 1회 이내	35,410 27,500
	(2) 주장애관리 - 의원(중증) - 병원급 이상(중증)		35,410 35,410
	(3) 통합관리 - 일반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변경된 경우 - 의원(중증)		17,710 53,120
교육·상담료 <small>주: 1. 의원은 질병교육, 건강 교육 또는 장애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2개 이상 실시한 경우에 교육·상담료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병원·정신병원·종합 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장애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small>	(1) 교육상담료 I (10분 이상 20분 미만) - 의원(경증·중증) - 병원급 이상(중증)	1일 1회 이내 연간 8회 이내	14,620 14,620
	(2) 교육상담료 II (20분 이상 30분 미만) - 의원(경증·중증) - 병원급 이상(중증)		25,730 25,730
	(3) 교육상담료 III (30분 이상) - 의원(경증·중증) - 병원급 이상(중증)		36,840 36,840

사업개요_공동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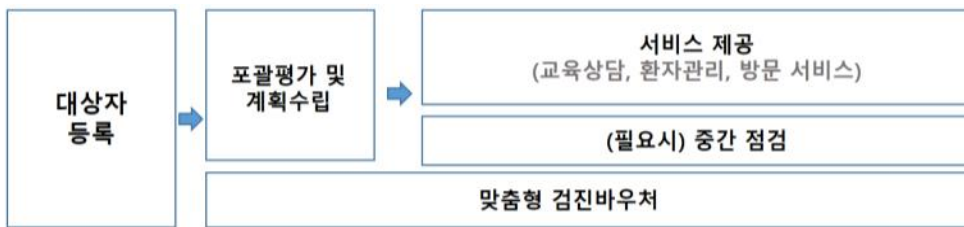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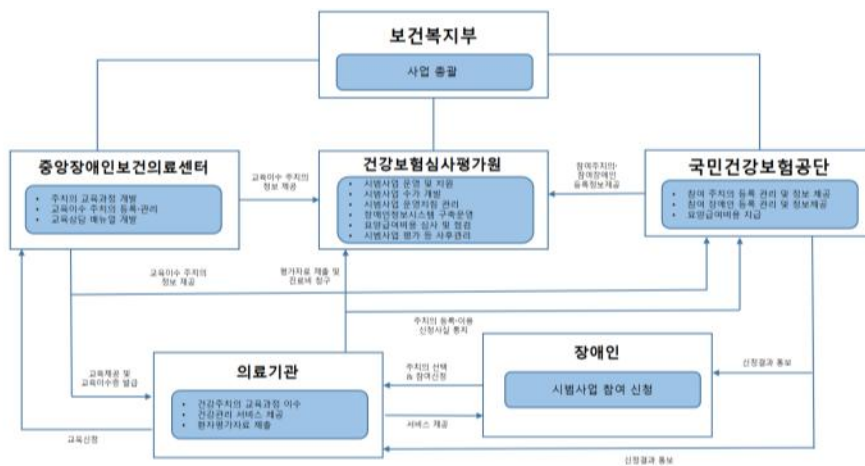
서식
IV

분류	내용	산정 횟수	금액(원)
환자관리료	- 의원(경증·중증)	연간 12회 이내	10,470
	- 병원급 이상(중증)		10,470
방문료	(1) 방문진료료 I	중증: 연간 24회 이내 경증: 연간 4회 이내	- 의원(중증) 192,090
	- 병원급 이상(중증) 192,090		
	- 의원(경증) 128,960		
	(2) 방문진료료 II		- 의원(중증) 152,840
	- 병원급 이상(중증) 152,840		
	- 의원(경증) 89,720		
(3) 방문간호료	- 의원(경증·중증) 79,810		
- 병원급 이상(중증) 79,810			

▶ 서비스 제공절차



▶ 업무 흐름도



▶ **업무 체계**

- ④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 ④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교육 이수 정보 제공
-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등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수가 세부사항 마련 및 급여기준 개발
 - 시범사업 운영지침 관리
 -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사업평가 수행
- ④ 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참여 건강 주치의 등록 및 교육이력 내역 관리
 - 시범사업 참여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변경) 관리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등록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참여기관·시설 현황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정보 제공
 - 건강 주치의와 참여 장애인 이용등록 정보제공
- ④ 시범사업 참여기관(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 시범사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서비스 내역 등록·관리
 - 요양급여비용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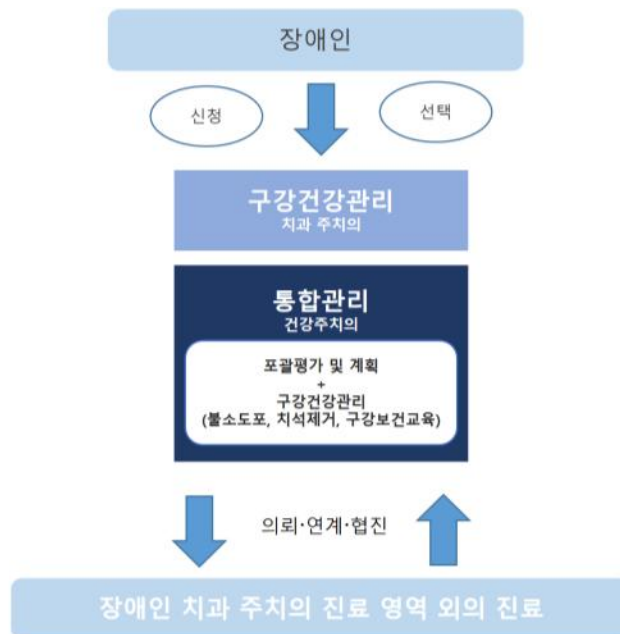
▶ **사업 담당부서**

기관명	내용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관련	1644-2000

나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목적

- ⊕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상급의료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낮춰 장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감소
-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 확대



| 치과주치의 서비스 체계도 |

▶ 서비스 대상

-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또는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뇌병변·정신 장애인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여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약물 진정, 행동 조절이 필요 없이 물리적 숙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

▶ 서비스 내용

- ④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 제공
- ④ (구강건강관리)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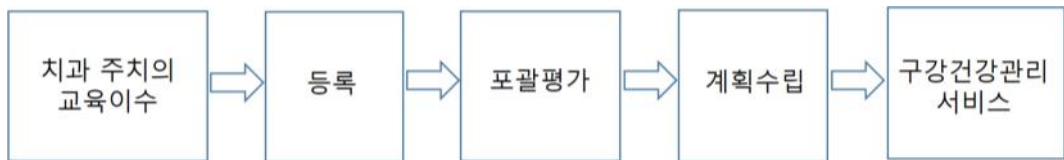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모형 |

- ④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대상자 혹은 피부양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면제

분류	내용	산정 횟수	금액(원)
장애인 구강관리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치과 의원	연간 1회 이내	34,050
	- 치과 병원		34,050
	- 병원		34,050
	- 종합병원		34,05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4,050
구강건강관리료	(1) 구강건강관리료 I (불소도포(전약)+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전약))	연간 2회 이내	
	- 치과 의원		92,030
	- 치과 병원		95,290
	- 병원		95,290
	- 종합병원		95,29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95,290
	(2) 구강건강관리료 II (불소도포(전약)+구강보건교육)		
	- 치과 의원		50,300
	- 치과 병원		51,740
	- 병원		51,740
- 종합병원	51,74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51,740		

▶ 서비스 제공절차



④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 건강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또는 건강공단(지사)에 신청사실 통지서 제출

▶ 업무 체계

④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④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지원 및 운영
-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자 자격관리 및 정보 제공
- 교육과정 개발 및 홍보 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장애인치과학회와 협력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수가와 관련된 세부세항 마련
- 시범사업 운영지침 관리
-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사업평가 수행

④ 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참여 치과 주치의 등록 및 교육이력 내역 관리
- 시범사업 참여 치과 주치의 이용신청(변경) 관리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등록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참여기관·시설 현황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 제공
- 치과 주치의와 참여 장애인 이용등록 정보제공
- ⊕ 시범사업 참여기관(장애인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 이수
 - 시범사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서비스 내역 등록 및 관리
 - 요양급여비용 청구

▶ 사업 담당부서

기관명	내용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관련	1644-2000

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목적

-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서비스 대상

-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예비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①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활용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사업은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짐.

②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발굴 및 연계(의료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되는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건강) 지역 내 의료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치료기관, 보조기기센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 (복지)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등 • (지자체 전달체계) 지역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좋은 이웃들, 사회적 경제기업 등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적 복합문제(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가 있으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 (의료접근성 저하 포함),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돌봄자 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사정, 욕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대상자 거주지역 보건소와 함께 사전 서비스 계획 수립 • (일반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적 문제에 대해 단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교육, 정보제공(복지정책, 관련기관 안내 등) 등 서비스 제공 • (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지원)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제공,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다과 등 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주민이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모집 및 활용
중·장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 및 연계 확대 • 장애유형별 자조모임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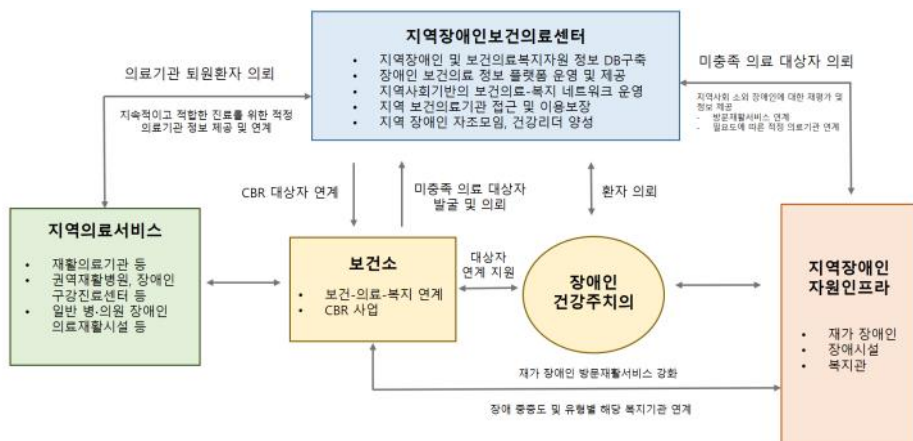
③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구분	내용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 연계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수행을 위한 현황조사로 개선점 도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지역 내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연계하여 방문진료 지원
중·장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장애인 대상 의료 행위 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

④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

구분	내용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의료이용 실태 모니터링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 등 자원연계 지역 내 의료이용 현황조사 후 개선점 도출
중·장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또는 시외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편의 연계 지원 및 유관기관 구축체계 마련

⑤ 업무흐름도



②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①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 구축)
	•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당사자 및 가족 교육)

※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은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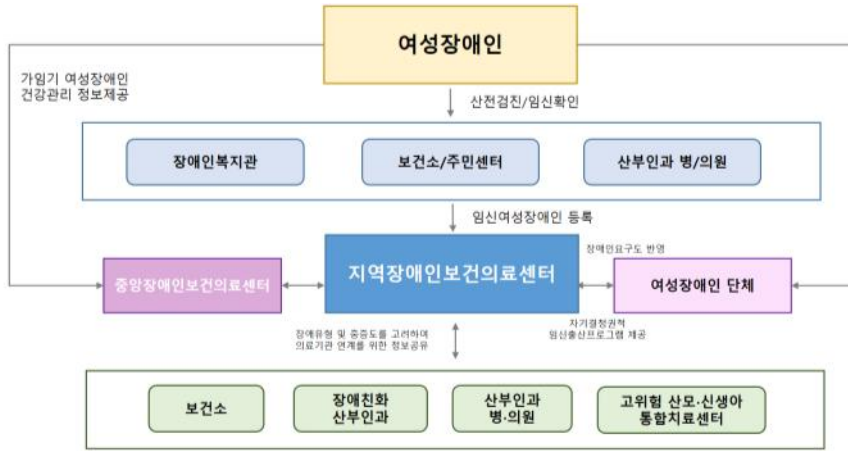
②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클리닉(의료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대상	• 임신준비 및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분만 후 6개월까지(유·사산 포함) * 단, 담당자의 종합적 판단하에 필요시 분만 후 1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세부 사업	• 전문의(산부인과·여성건강전문의)에 의한 임신준비 및 산전·산후관리와 건강관리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 포함 •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 여성건강(산부인과) 진료, 보건교육(학대 폭력 등 포괄적 사정 포함), 심리상담 및 진료 의뢰, 전화상담, 통합사례관리와 연결
중·장기 추진	•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으로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

③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당사자 및 가족 교육)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특화된 당사자, 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교육 운영
사업 대상	• 지역 내 여성장애인과 가족
세부 사업	•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장애유형별 임신·출산계획, 임신 전 주의사항, 산전 프로그램, 검진 방법, 약물관리, 의료기관 선정방법 등 • 청소년기, 갱년기 등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중·장기 추진	•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의 산모 및 건강관리교실 내실화

④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①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운영
사업 대상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관련 보조인력 등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1~2시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내용: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관리, 보조기기, 재활운동 등
중·장기 추진	• 장애유형별 교육 대상 및 내용 확대

② 교육사업 수행 과정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① 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진료, 재활 의료 서비스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 서비스 지원
	• 장애인 건강 주치의·치과주치의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건강검진	• 건강검진 서비스(직접 또는 연계)

②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 대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세부 사업	•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해당 대상자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에게 공유되도록 조치 • 장애유형별로 의뢰 시점에서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퇴원계획 수립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지역사회관련 서비스 연계 실시
중·장기 추진	• 의료체계(급성기-회복기)에서 의뢰되어 오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코디네이터 기능(회복기-유지기의 연계) 내실화

③ 장애 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소아청소년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업 대상	•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장애인
세부 사업	•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해당 대상자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에게 공유되도록 조치 • 장애유형별로 의뢰 시점에서 대상자 평가, 서비스 제공, 퇴원계획 수립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지역사회관련 서비스 연계 실시
중·장기 추진	• 의료체계(급성기-회복기)에서 의뢰되어 오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코디네이터 기능(회복기-유지기의 연계) 내실화

④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직접 또는 연계)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로 직접 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 내 주치의로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사업 대상	• 장애인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기센터 이용자
세부 사업	• 직접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일반건강관리, 주장애편리, 통합관리로 구분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포괄적 관리 - (장애인 치과 주치의)구강관리 및 예방진료 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연계 서비스 제공: 지역 내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정보제공 및 주치의-환자 연계·의뢰
중·장기 추진	• 만성질환, 2차 장애 관리율 제고에 따른 건강지표 개선 • 의뢰·연계, 협진 등을 통한 의료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⑤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하여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장애인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기센터 이용자
세부 사업 계획	• 치과,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 연계 필요시 의뢰 및 연계
중·장기 추진	• 의뢰·연계, 협진 등을 통한 의료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⑥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직접 또는 연계)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연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자 또는 기센터 이용자
세부 사업	• 직접수행일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유소견 수검자의 요청 시 직접 진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축 • 연계수행일 경우, 지역 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안내·홍보 및 사후관리서비스 의뢰체계 지원
중·장기 추진	• 지역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예방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표준화

사업개요_근동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IV
서식

라 장애친화 건강검진

▶ 목적

- ◎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개선 또는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증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 도모
- ◎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예방의료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건강검진 환경 조성
 - 유소견 수검자의 요청 시 후속 진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보건소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
- ◎ 중증장애인의 예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
 - 중증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관련 콘텐츠 개발, 건강검진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를 위한 정책사업 협력

▶ 서비스 대상

- ◎ 등록 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
 - ※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지참해야 함

▶ 서비스 내용

- ◎ 장애인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는 안내인력 배치
-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
- ◎ 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 ◎ 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진장비
- ◎ 장애인의 부담이 적도록 검사 시간 및 자세, 검진과정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

- 불가피한 경우, 검사 진행 중단
- 장애유형별 지원서비스

장애유형	지원서비스
지체, 뇌병변 장애	•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
청각장애	•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 통역(사전예약 필요) 지원 • 필담(문자)이 가능한 진료시간 확보
시각장애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는 안내인력 배치
발달장애	• 검사받기가 무섭다면 가족(보호자)과 함께 검사 가능 • 아프거나 힘든 검사를無理하게 강요하지 않음. • 의사와 간호사들이 쉽게 말하고 기다림.

- 건강검진 내용: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과 동일

구분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대상자(주기)	
일반 건강검진	공통 검사	비만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매년), 사무직(격년)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시력, 청력 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성·연령별 검사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4년 주기)
		B형 간염항원, 항체	만 40세
		골밀도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사업개요_연동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서식
IV

구분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대상자(주기)
암검진	위암	만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	만 40세 이상(고위험군)(6개월 주기)
	대장암	만 50세 이상(1년 주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폐암	만 54~74세(고위험군)(2년 주기)

📍 지원내용

- (시설개보수비) 장애친화 탈의실, 접수대 등
- (장애친화 건강검진장비비)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등 총 9개 품목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 검진 시 기본검진 비용 이외 검진 건당 37,770원 추가 지급
- (건강검진기관 홍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홍보

▶ 서비스 제공절차



마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대상

-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 대상자 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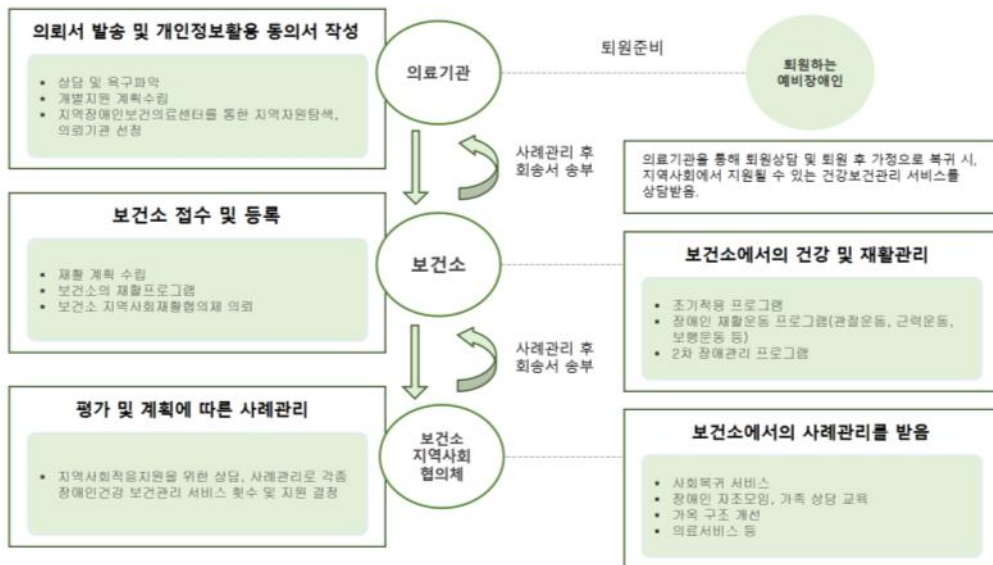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기준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기준	기능평가(MBI) 49점 이하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미만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이상	기능평가(MBI) 75점 이상
퇴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정기관리군으로 전환 서비스 미제공기간 총 2년 초과 시 전출, 사망, 말소, 주거 불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전환 서비스 미제공기간 총 2년 초과 시 전출, 사망, 말소, 주거 불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종료 시 전출, 사망, 말소, 주거 불명 시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평가 횟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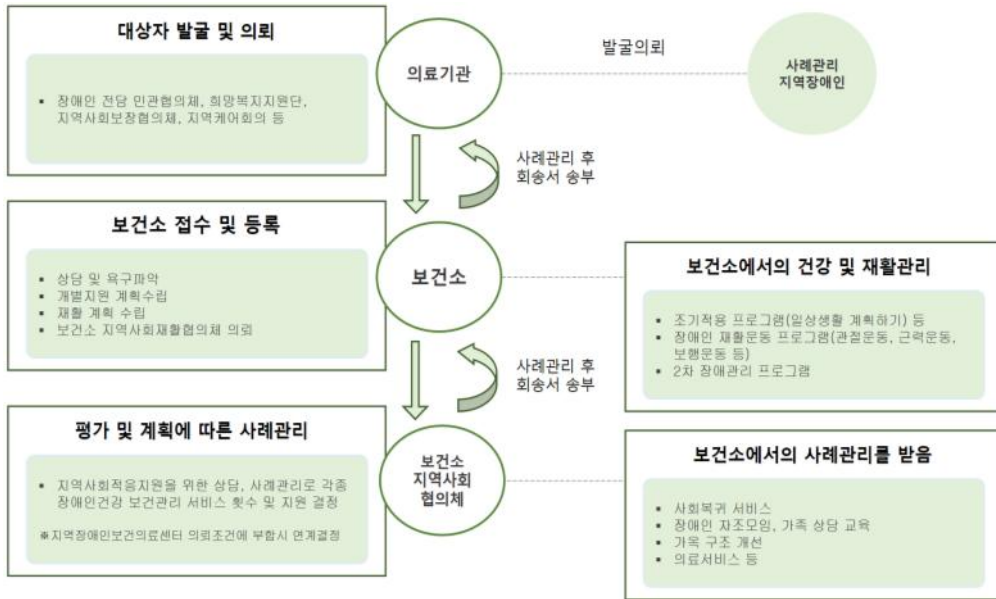
-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퇴원관리 상담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관리 등
- ⦿ (지역자원 연계 사업)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및 사례관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 ⦿ (지원 사업) 장애인 운전 지원,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 ⦿ (홍보) 사업홍보, 장애체험 등

▶ 서비스 제공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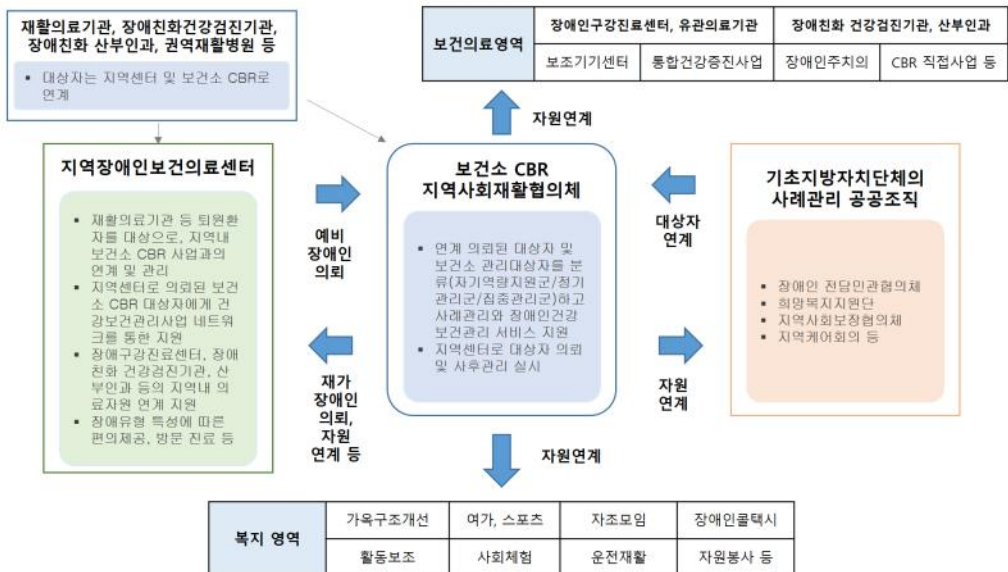
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예비 장애인의 경우



② 사례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경우



▶ 업무체계



I 사업개요_공동편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목적

-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 목적으로, 대학(치과) 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위탁·운영지원
- ☉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 서비스 대상

- ☉ 진료비 지원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 진료비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1~6급)
지체장애	중증(1~3급)
정신장애	중증(1~3급)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1~5급)
지적장애	중증(1~3급)
자폐성장애	중증(1~3급)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업무체계**

⊙ 보건복지부

- 구강보건사업 총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예산확보 및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및 지도감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도감독

⊙ 시도

- 구 시도 구강보건사업 총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신청) 확보 및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도감독

⊙ 해당치과병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장애인치과진료 제공
- 장애인 및 보호자(기관) 대상 구강보건교육 실시
- 장애인 구강보건담당자와 진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사업 담당부서(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

기관명	연락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사 장애친화 산부인과

▶ 목적

-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서비스 대상

- 등록된 여성장애인 누구나
 -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장애인
 - 여성질환 치료나 검진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진료
 - ① 권역 내 여성장애인 진료의 거점 역할 수행
 - 일반 산부인과를 이용하기 힘든 중증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운영을 목표로 산과 및 부인과 진료 제공
 - 여성장애인의 임신, 분만, 신생아 관리까지 연속적인 치료 제공
 - 합병증이 수반된 장애인의 분만 등 모자의료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 수행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율신경반사부전, 경련, 방광 및 장 관련 문제, 근골격계 질환 등의 합병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다학제적 진료협력체계 구축
 - 장애(척수, 뇌병변, 장기관련 등)와 관련 합병증(신경인성 방광, 동반 만성질환, 다발성 근골격계질환, 정신건강 등)의 통합적 관리 제공
 - 권역 내 개인병원에서 거점병원으로 유기적인 연계체계 마련

② 24시간 365일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 응급진료 시행

- 당직체계 운영을 통해 24시간 분만 가능한 진료체계 유지
- 항시 진료 가능한 준비체계, 전용시설 및 장비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③ 여성장애인 평생 건강관리 연계서비스 제공

- 부인과 정기검진, 갱년기 호르몬 치료, 노년기 골다공증 및 비뇨생식계질환 등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및 장애관련 만성질환 관리 담당

④ 교육

① 원내 의료인력 교육

- 여성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주요 합병증 등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원내 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장애인건강권법 및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방법 및 진료 시 고려사항 등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협의하여 시행
- 교육 종류
 - 정기 연수교육: 연 1회
 - 임시 연수교육: 새로운 진료지침이나 치료기법 등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워크숍: 운영 사례 공유, 기관 간 교류 등을 통해 역량 강화 도모(연 1회 이상)

② 지역 내 의료인력 교육(권장)

- 지역 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관할지역 산부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보건소와 연계·협의하여 시행
- 교육 종류
 - 정기 학술 집담회: 연 1회
 - 여성장애인 진료 연수교육: 연 1회

③ 일반인 교육(권장)

- 지역사회 내 여성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산전교육, 신생아 관리, 생애주기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보건소와 연계·협의하여 시행
- 교육 종류(예시)
 -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행 사업)

- ④ 기타 여성장애인 진료와 관련된 심포지엄 및 세미나,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성과 보고회 등 개최(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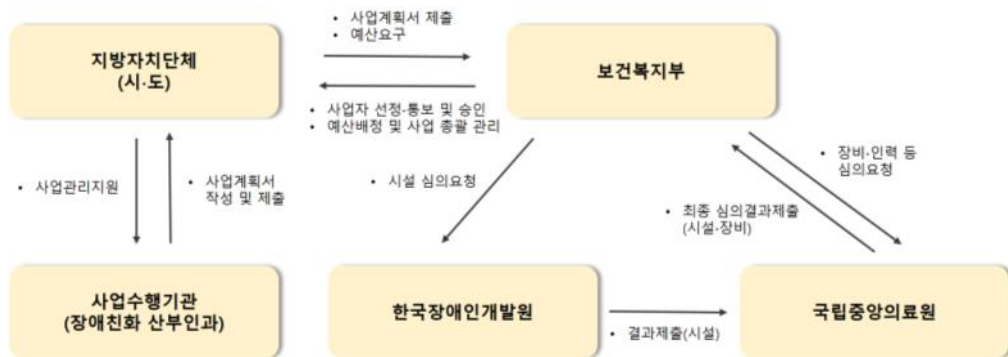
● 연구

- ① 여성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타 권역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과 협력하여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연구 수행(권장)
 - 연구 결과는 정기연수 교육, 워크숍 등에서 교육교재로 활용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개시 전인 경우에도 사례연구, 매뉴얼 개발 등 운영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경우 운영비 집행 가능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과의 연계

-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
 - 건강검진 결과 여성장애인 유소견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의뢰 시, 해당 소견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계
 - 해당 지역 내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상호 연계하여 포괄적인 여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전문의료서비스, 지속적인 건강관리, 자원연계 등)
-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기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 업무 흐름도



▶ **업무체계**

- ⊕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 사업 총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지역 내 참여기관 지원
 - 사업 관리
- ⊕ 국립중앙의료원(중앙모자의료센터)
 - 사업 지침 개발 및 개정
 - 시설 및 장비 계획(변경) 심의
 - 사업 추진 상황 관리
 - 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등
-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시설계획 사전컨설팅, 시설기준 적합성 심사
-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종사자 교육

▶ **제공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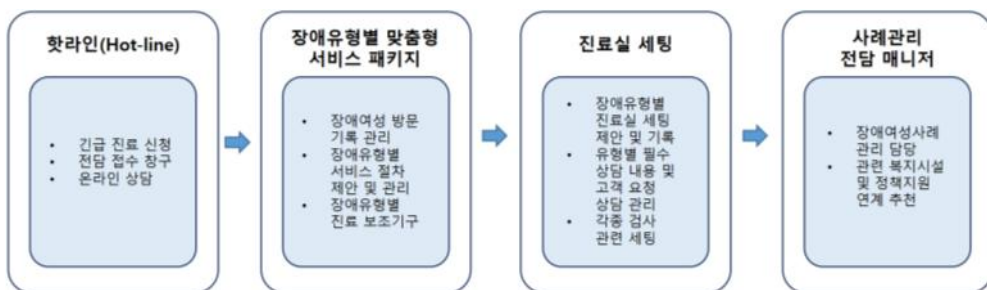
⊕ 필수인력기준

직종		인원(명)
전문의	산부인과	2
	소아청소년과	1
	마취통증의학과	1
간호사		6(외래, 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합산 인원)
임상병리사		1
방사선사		1

직종		인원(명)
약사		1
원무		1
행정		1
운영 보조 인력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최소 기준이며 외래, 분만부, 병동에 배치하여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수어통역사	1(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따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여성장애인의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교육, 상담, 연계, 진료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 가능함. 다만, 진료 전 예진 등의 절차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가 수행해야 함.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겸직 가능함. 다만,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코디네이터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함.
- 단,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필수 인력 기준인원 외 추가인력 중에서 행정직도 지정(채용)가능하나 최대 1명을 넘을 수 없음.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필수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장애여성 전담 코디네이터의 업무



아 권역재활병원

▶ 목적

-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
 - 잠재적 장애유발 질환이나 손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잔존장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
- 국립재활원과 현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의 공공의료재활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화 시켜 조기 사회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내용

- 진료 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척추손상재활) 척추 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기능 마비, 배뇨 및 배변기능 손상, 성기능 장애, 호흡기능 장애, 혈류기능 이상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위한 재활 의학적 관리와 활동장애에 대한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 (뇌손상재활) 뇌질환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마비, 감각·인지·지각·삼킴 등의 복합장애에 대한 검사 평가 및 의학적 관리와 기능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신경인지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 (소아재활) 뇌성마비·근육질환 등 소아의 발달장애 개선, 장애와 관련된 의학적인 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의학적 관리, 생리적인 발달과정을 거쳐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진료서비스를 제공
 - (근골격계재활) 척추나 사지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기능이상을 진단 평가하고 이에 수반되는 통증을 관리하여 관련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비수술적 또는 중재적 처치를 수행
 - (기타 재활) 이외에도 호흡재활, 심장재활, 암재활, 절단장애재활, 노인재활, 여성재활, 장애인의 성재활 분야 등의 의료재활 수행

● 기능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운동 및 기능 재활치료)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또는 근골격계의 이상으로 유발된 근력 감소·감각기능 저하·협동운동기능장애·보행장애·관절의 가동범위제한 등의 장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환자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동 및 훈련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관절 가동성운동, 스트레칭, 근력강화운동, 심폐지구력운동, 조절 및 협조운동, 보행훈련, 동작훈련 등을 수행
- (작업치료) 기능적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이동, 가사활동, 취업 전 작업치료를 통한 작업능력 향상, 상지 장애에 대한 훈련, 발달 기능 평가, 수부 보조기 제작, 연하장애 치료, 인지 및 지각기능(주의, 집중, 시각적 지각이상, 언어·기억·추리·문제해결 능력의 이상과 실행기능 이상 등)의 평가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 (언어치료) 언어 표현, 언어 이해력, 음성발생 이상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
- (임상심리치료) 지적능력평가·심리평가·행동관찰 등을 통해 환자들을 평가하고 통찰치료·행동치료·생물의학적치료 등을 병행하여 환자의 사회 적응과 사회적기능 실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및 진단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진료분야별, 기능분야별의 재활치료 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 관련 상태의 진단, 진행경과, 치료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사선촬영, 임상진단검사,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연하장애검사, 폐기능검사, 근전도검사 등과 같은 검사 및 진단을 할 수 있음
- 다만, 재활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고가장비가 필요한 검사인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촬영, 골밀도검사 등은 연계된 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일반 진료서비스 제공 (선택사항)

-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진료과목을 개설할 때에도 장애 예방 또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과목을 운영
- (장애인 구강 치과) 일반 치과에서 뇌병변 등 일부 장애인 대상 치과진료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구강질병에 대한 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 (장애여성 지원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서비스(임신 전 상담 및 산전관리, 산후 관리, 일반 부인과진료, 소수술 및 처치)를 제공

- (저시력 진료 안과) 시각장애를 지닌 저시력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각기능 재활, 저시력인의 직업재활, 저시력 보장구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청각재활과) 소아를 위한 청각 장애 진단 및 예방, 인공와우술 등을 통해 청각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청각장애인의 청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 (한방진료과) 뇌신경질환, 척수손상, 근골격계질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양·한방 협진진료서비스를 제공
- (내과) 장애인의 일차의료,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내과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정의학과로 대체 할 수 있음

●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공공재활프로그램이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권역별 재활병원 개원·운영 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 있음.

- 권역재활병원은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권역거점 공공재활운영단을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지역장애인의 요구 반영 등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개별 권역재활병원이 조정 가능
-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
- 재활의료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후소아마비, 성인뇌성마비, 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프로그램 제공

● 재활치료를 위한 연구수행

- 장애인과 재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립재활원 및 타권역 재활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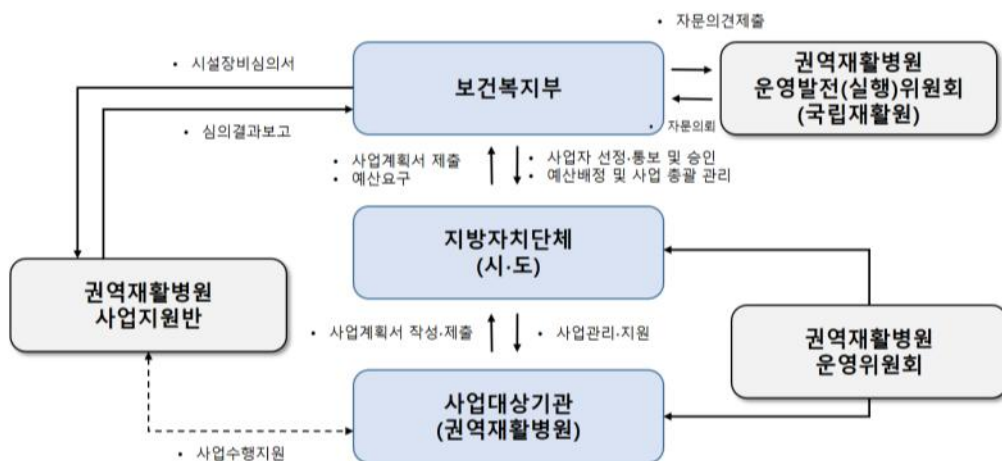
▶ **제공인력**

- 권역 재활병원은 척수손상, 뇌병변, 소아발달장애, 호흡장애, 심장장애, 절단장애, 근골격계 장애 등의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해야 함.

④ 권역 재활병원 인력기준

구분	인원수	비고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5인 이상	가동병상수/재활의학전문의를수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간호사수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충족기준 4:1 미만)	연평균1일 입원환자수/간호사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의료 보건직	물리치료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물리치료사수로 나눈 수 (충족기준 6:1 미만)	연평균1일 입원환자수/물리치료사수 (외래환자 중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수 포함)
	작업치료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작업치료사수로 나눈 수 (충족기준 8:1 미만)	연평균1일 입원환자수/작업치료사수 (외래환자 중 작업치료를 받은 환자 수 포함)
	언어재활사	2인 이상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자격증1, 2급 모두 인정
	사회복지사	2인 이상	사회복지사 1급만 인정
	임상심리사	1인 이상	임상심리사 1, 2급 모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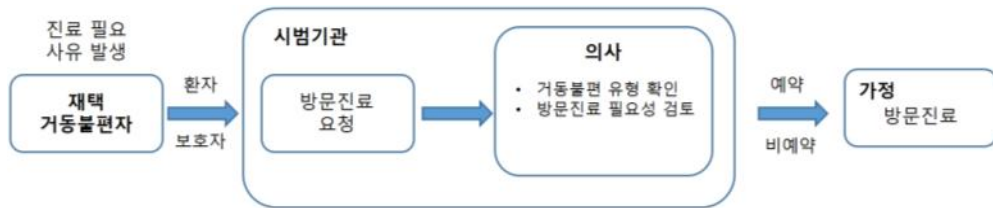
▶ 업무 흐름도



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목적

- ⊕ 지역 내 시범기관의 의사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 마련으로 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 케어 기반 확보



| 방문진료 개념도 |

▶ 서비스 대상

-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단,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
- ⊕ (예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 서비스 내용

⊕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내용

-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 (처방) 내복약, 외용제 등에 대한 처방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교육 실시
 -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 단, 장기요양 1,2등급 외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종: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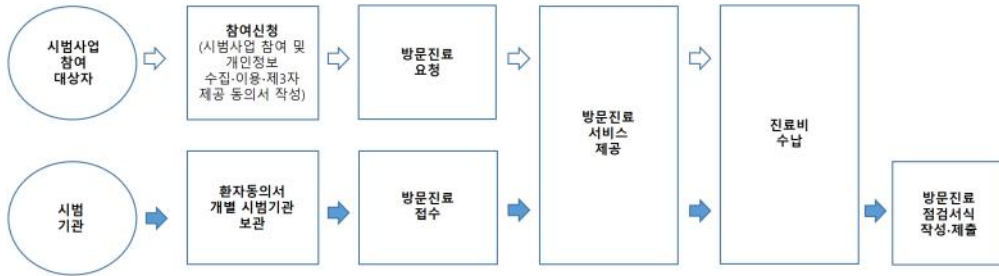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 차상위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0분 5

분류	내용	산정 횟수	금액(원)
방문진료료	(1) 방문진료료 I - 의원 - 병원급이상	환자 1인당 주 3회 산정 (단, 말기 암환자 등 집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초과 산정 가능)	128,960
	(2) 방문진료료 II - 의원 - 병원급이상		136,240
			89,720
			94,070

- 주: 1. 동일 건물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소정 점수의 75%를 각각 산정한다.
 2.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첫 번째 방문진료료는 소정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두 번째 방문진료료로부터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3. 방문진료 시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을 동반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한다.
 4.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1.56점,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8.88점을 가산한다.
 5.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의 경우 방문진료료 I 은 275.56점, 방문진료료 II 는 191.70점을 가산한다.

▶ 서비스 제공절차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절차 |

▶ 업무체계

- ④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 ④ 심평원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시범사업 운영 지침·관리
 -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④ 사업 자문기구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학회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④ 시범사업 참여기관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 청구 등
 - 시범사업 안내 및 제공
 - ④ 공단
 - 자격확인시스템 관리(장기요양 등급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 사후관리(장기요양 등급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자격 불일치 등)
 - 요양급여비용 지급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사업개요_근동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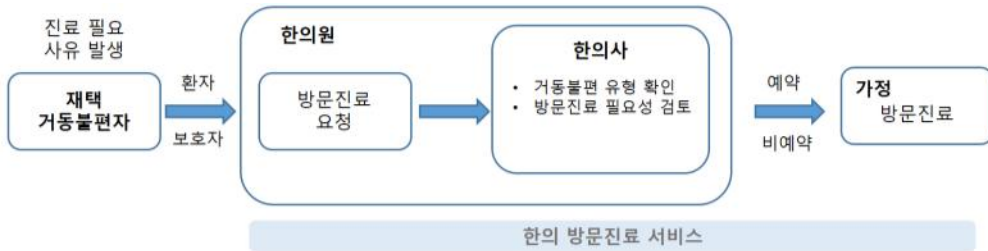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IV
서식

차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목적

-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지역 내 시범기관의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



| 한의 방문진료 개념도 |

▶ 서비스 대상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자
 - 단, 축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단,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시범기관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
- (예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한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 서비스 내용

● 한의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내용

- (진찰) 문진(問診), 문진(聞診), 망진(望診), 촉진(觸診), 청진(聽診), 타진(打診), 안진(按診), 맥진(脈診) 등
- (처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한약제제
- (질환관리) 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구술, 부항술 등)
- (검사) 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교육·상담) 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당 요양급여비용(한의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30
 ※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종: 해당 요양급여비용(한의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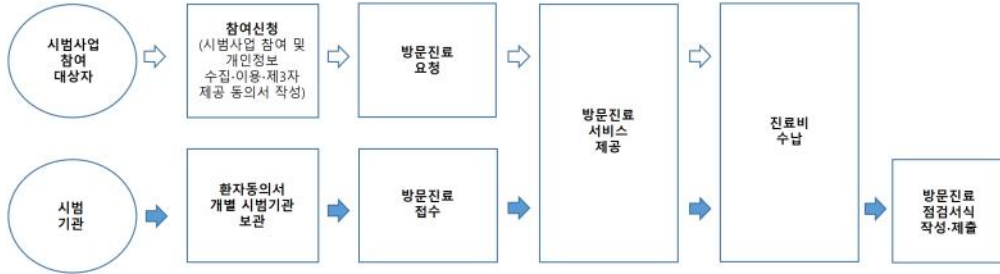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 차상위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해당 의료급여비용총액(한의 방문진료료)의 100분

분류	내용	산정 횟수	금액(원)
한의 방문진료료	한의 방문진료료	한 의사 1인당 한달에 60회까지 산정 가능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 의사 1인당 한달에 100회까지 산정 가능)	106,290

주: 1. 동일 건물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소정 점수의 75%를 각각 산정한다.
 2.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첫 번째 방문진료료는 소정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두 번째 방문진료료부터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3.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1.56점,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8.88점을 가산한다.
 4.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의 경우 방문진료료 I 은 275.56점, 방문진료료 II 는 191.70점을 가산한다.

▶ 서비스 제공절차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절차 |

▶ 업무체계

- ④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 ④ 심평원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시범사업 운영 지침 관리
 - 시범기관 관리
 -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④ 사업 자문기구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④ 시범사업 참여기관
 -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청구 등
 - 시범사업 안내 및 제공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확인시스템 관리(장기요양 등급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 사후관리(장기요양 등급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자격 불일치 등)
 - 요양급여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사업개요

- ① 목적
 -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
- ②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③ 제공인력
 - 사업 참여의원 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업 참여의원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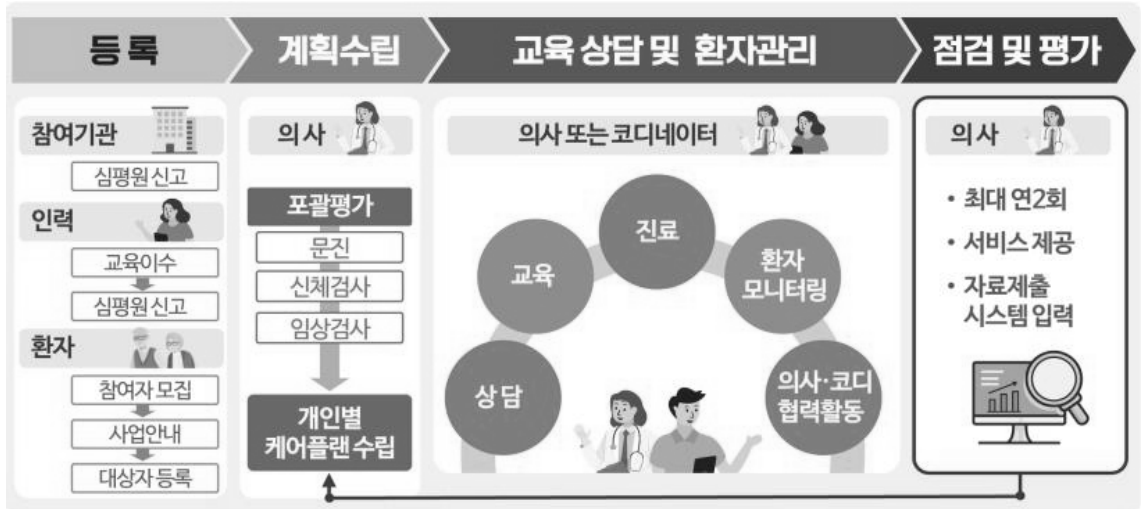
- 기존 내원하는 의원에 사업 참여 여부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 항목 ‘일차의료’ → 상세항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건강e음 앱 → HIRA 건강지도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종류 ‘일차의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 25시 앱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관 검색

▶ 서비스 내용

- ①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 수립
- ②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를 통한 교육·상담 제공
- ③ 혈압·혈당 측정정보 및 약물 모니터링 등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 확인
- ④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등 주기적으로 생활습관 모니터링

▶ 서비스 흐름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절차 |



▶ 연계방안

-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자를 지역 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의원으로 연계

▶ 사업 담당부서

문의내용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업총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11, 2815
사업운영, 급여기준, 평가, 전산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5, 1672, 1673, 1695, 1696
사업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만성질환사업부 1팀 ☎ 033-736-3730~3732
서비스제공자 교육운영(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의사) 대한의사협회 • (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 • (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02-3781, 8500 • (의사) 대한의사협회 KMA 에듀센터 1566-2844 • (간호사)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 1588-6262 • (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KDA 에듀센터 02-823-5680

타 가정간호제도

▶ 목적

- ⊕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
- ⊕ 양질의 치료와 간호
- ⊕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모
- ⊕ 국민의료비 절감

▶ 서비스 대상

- ⊕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 ⊕ 만성 호흡기질환자
- ⊕ 산모 및 신생아
- ⊕ 뇌혈관질환자
-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분야	내용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외에 온·냉요법, 체위 변경 등으로 가정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행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환, 유치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사 제거, 방광 세척 등 건강보험진료수가 항목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
검사관련 업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처방한 검사 중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
투약 및 주사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투약 및 주사
교육·훈련	가정에서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처치법, 기구 및 장비사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
상담	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 방법, 질병의 진행 과정 및 예후, 주보호자와 가족문제, 환경 관리, 말기환자의 완화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의뢰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희망에 따라 공공보건기관 등으로 의뢰

⊕ 가정간호신청

환자 유형	신청 방법
입원환자	퇴원 계획 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퇴원환자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 가정간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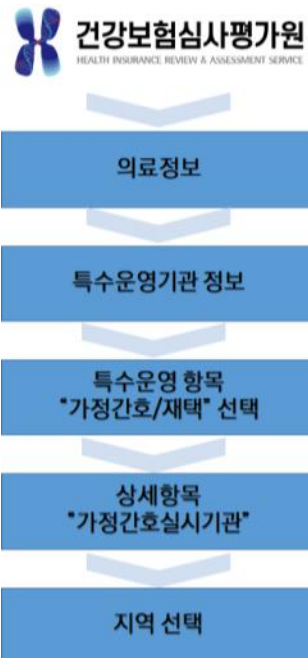
환자 유형	신청 방법
가정간호 비용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건강보험(20%), 회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
진료행위별 수가 (치료/재료비)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 병원 구분(종별) 적용

▶ 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제공기관

- 가정간호실시기관(병의원)
- 가정간호실시기관 검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I 사업개요_공통편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 **파** 가정형 호스피스

▶ 목적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
- 법적 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하여 국립암센터는 완화의료 제공 및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호스피스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 말기로 진단받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환자 등

▶ 서비스 내용

- ⦿ 환자의 전신 상태,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돌봄 계획을 주기적으로 상의
- ⦿ 통증 및 신체적 증상조절, 배액관 관리와 상처, 욕창관리 등 제공
- ⦿ 투약 및 증상 관리 등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하여 교육하여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안내
- ⦿ 증상 악화 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연계하고,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 임종 돌봄을 안내
- ⦿ 방문 인력
 -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
 - 필요한 경우 성직자,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등을 연계하여 호스피스 돌봄서비스를 제공
 - 방문 지역, 횟수와 서비스 범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마다 상이함
 - 이용할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에 문의 필요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과정

-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및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인력 추가교육과정

교육 과정	내용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을 위한 법정 필수교육인 호스피스 기본교육과정과 추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호스피스 기본교육과정은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이론교육, 40시간)과 표준교육과정 II(실무교육,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정 60시간 교육과정임. 가정·자문·소아청소년 추가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정 16시간 교육과정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 (이론교육)	법정 필수교육인 보건복지부 인정 60시간 교육으로 2010년에 간호사 과정, 2012년에 의사 과정, 2013년에 사회복지사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표준교육과정(이론교육)으로 개편하여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대상 :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 교육 시간 : 총 40시간(총 40차시) • 교육 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전인적 평가, 통증 및 증상관리, 심리 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임종 및 사별가족 돌봄, 의사소통 등

교육 과정	내용
<p>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II (실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 : 표준교육과정(이론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교육 시간 : 총 20시간 • 교육 기관 :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 교육 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통증 및 증상관리, 의사소통 및 실습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교육 •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원 내용 : 표준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 교육자 교육 실시를 통한 강사양성 지원 *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전문과정도 동일한 과정임 *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력님 이수자들은 표준교육과정II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p>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인력 추가교육과정</p>	<p>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실무 담당 또는 예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각 유형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p> <p><추가교육 운영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 : 호스피스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교육 시간 : 총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 교육 내용 : 가정형(가정형 호스피스의 이해, 가정형 호스피스 돌봄, 가정에서 증상관리, 가정 임종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관리, 가정형 호스피스의 팀협력과 연계, 직종별 역할교육), 자문형(자문형 호스피스의 운영, 상담과 자문,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 돌봄계획 수립, 임종 돌봄의 질 관리, 기관 내 완화의료 체계 구축, 직종별 역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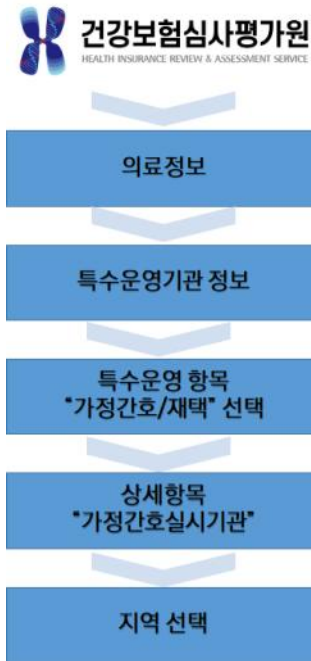
☉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별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운영 지원

- 우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담당자를 양성하도록 운영 지원
- 운영 방식: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방문 교육단이 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후 사후자가 점검지표를 작성하여 피드백 제공

구분	내용
교육위원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멘토 자문단
교육내용	호스피스 사업 및 호스피스 등록에서 평가, 돌봄 수행, 퇴원, 임종, 사별 관리 등 전반적인 직종별 교육 진행

▶ 서비스 이용 기관

- ▶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검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
사업개요_공통편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하 중증소아재택의료시범사업

▶ 목적

- ⊕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소아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
- ⊕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서비스 대상

- ⊕ 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 대상 환자
 - 시범기관의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이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
 - * 단,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24세 이하 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념	설명
기본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단계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미 가정에 있지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 서비스, 재택의료 서비스 및 상시적 환자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재택의료 관리계획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로 안정적 이행(transition)을 지원 • 퇴원 예정환자 또는 외래(재택) 환자 중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한 환자 및 가족의 심층면담을 통해 의료적 요구를 평가하여 체계적·포괄적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 • 의료처치 또는 의료장비 관리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재택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의료팀 방문을 통한 환자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 제공 • 의료진이 환자관리를 위한 정기적 방문 서비스 • 계획수립에 따른 정기방문 외, 환자상태 및 보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방문서비스를 실시
상시적 환자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의료팀의 전화 상담 등을 통해상시적으로 환자상태 점검, 의료적 상황 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조치가이루어지도록 환자관리를 조정·지원
중간평가 및 의료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중간평가 및 서비스 변경을 실시하고, 필요시 대상자 거주지중심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

● 급여의 비용부담

- 시범기관이 중증소아 재택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동 지침의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각장의 행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점수”라 한다)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점수당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
- 시범기관이 중증소아 재택의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사업개요_근동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IV

④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2025년 기준, 분류번호: 중증소아재택의료 관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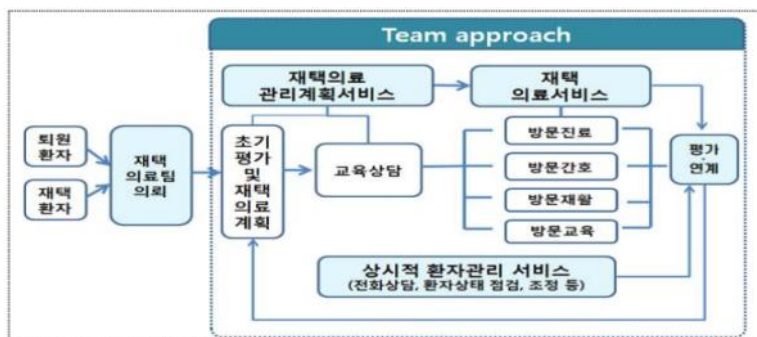
코드	분류	점수 (점)	금액 (원)
IA510	가.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2,084.76	171,370
IA511	*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2,084.76점을 산정		
IA520	나. 교육·상담료	368.98	30,330
	다. 방문료		
IA530	(1) 의사 방문료	1,829.39	150,380
IA531	(2) 간호사 방문료	1,079.32	88,720
IA532	(3)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911.02	74,890
	라. 환자관리료		
IA541	(1) 기본 환자관리료	403.59	33,180
IA542	(2) 집중 환자관리료	784.6	64,490
IA560	마. 재택의료 평가·연계료	654.19	53,770

⑤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적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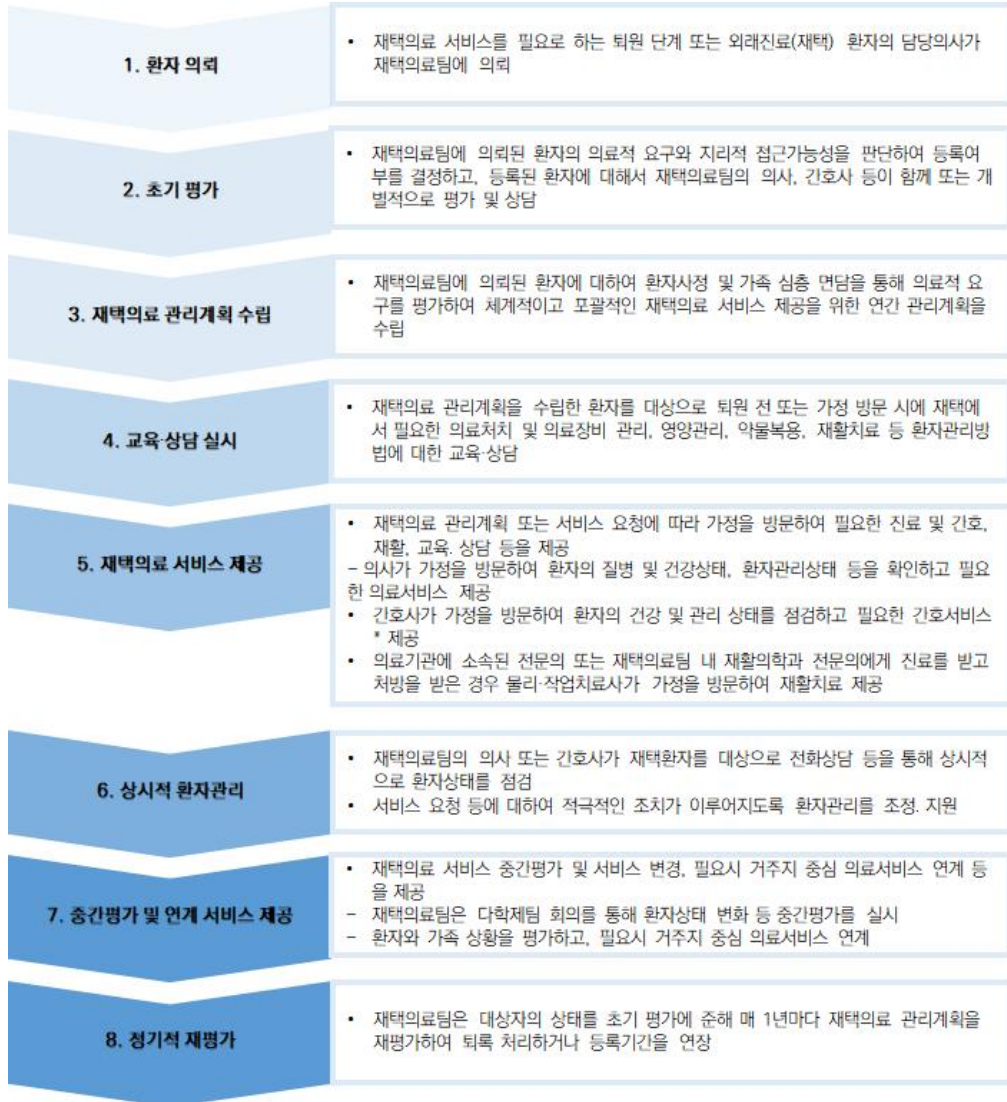
재택의료 제공 서비스의 예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 기도흡인(Suction)
-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 장내영양(Enteric Feeding)
-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 도뇨(Catheterization)

⑥ 서비스 흐름도



●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제공인력

● 중증소아 재택의료팀

- 의미: 대상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
- 구성: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간호사(가정방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자 수요에 따라 팀 구성

④ 인력 유형 및 자격

인력 유형	세부 유형	자격
필수 인력	전문의	전문의 자격
	재택의료 담당 간호사 (2인) - 가정방문을 담당하는 가정방문간호사 1인 이상, - 환자관리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1인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2년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선택 인력	물리·작업치료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업 자격 소지

▶ (시범)사업 운영체계

④ (시범)사업 운영관리

- 시범사업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시범기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수시 논의

④ (시범)사업 운영체계



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목적

- ①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 예방
- ②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③ 시범사업 기간: 2020. 12. 21. ~ 2026. 12. 31.
- ④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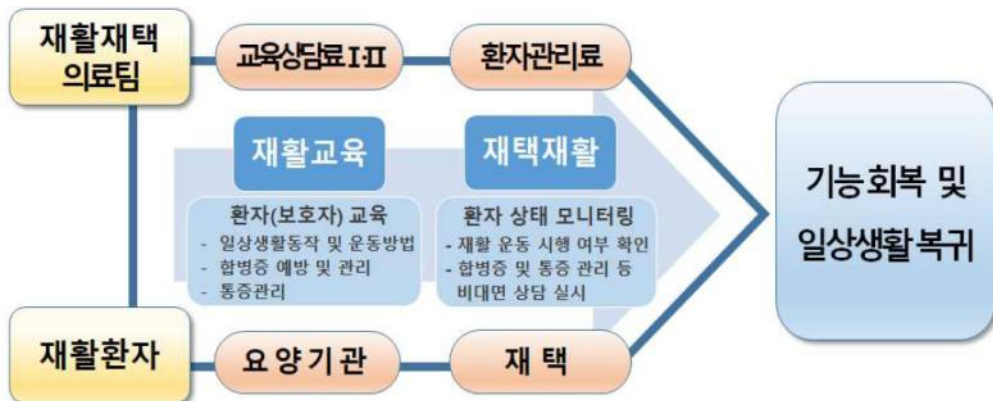
- ① 대상 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재활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② 대상자
 -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환자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자로서 아래 시범사업 참여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④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건

급여방식	대상 질환 및 수술	참여기준	
		참여시기	적용기간
근골격계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수술 후 90일 이내	참여 동의 후 90일 이내
	하지 골절 수술		
중추신경계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후 12개월 이내	참여 동의 후 6개월 이내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뇌척수 중복지손상 6개월 이내 ※ ASIA Impairment Scale(AIS) A, B, C 등급인 대상자		

▶ 서비스 내용

④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④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념	설명
교육상담	의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II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 제공
환자관리	재택의료팀이 재활운동 시행 여부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운동법 및 합병증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점검 등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추진 절차도

● 수행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 지침·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시범사업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역할)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시범기관	시범사업 안내 및 재활환자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재활환자 재택 의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청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I
사업개요_공동편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보건복지부, 심평원
필요 시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시범사업 협의체
시범기관 선정	시범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등록	시범사업 기관 등록	심평원
시범사업 수행	대상 환자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환자등록)	시범기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기관
자료제출 및 급여비용 청구·지급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제출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공단
사업평가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심평원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793)

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 만 18세 미만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 발달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7만원	8만원

▶ 서비스 제공절차

① 신청방법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신청서
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가구원 수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
통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②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③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더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 목적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이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서비스 내용

-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포괄평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 원칙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서비스별 세부 내용
 - ① 초기 상담
 - 사회복지사 등이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여부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징구, 다학제 팀 방문일정 조율
 - ②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
 -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욕구파악, 주거 환경, 생활 모습과 가정배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가 되도록 계획 수립

③ 정기 팀 사례회의

- 최소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긴급문제 발생 시 수시 실시
-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공유, 문제목록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상태변화 점검) 서비스 제공 과정 중 확인된 질병 상태 및 환경 변화 공유를 통한 케어플랜 재조정

④ 주기적 방문진료·간호

- 최소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케어플랜에 따른 건강상태별 진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 (방문진료)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 검사·처치 등
- (방문간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처치, 영양 및 생활습관 관리 상담 등

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 의료 이외 사회·환경적 돌봄 지원 수요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지자체-장기요양기관-지역 복지관 등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돌봄 기관 등과 통합 사례회의 실시

⑥ 점검 및 평가

- 1년 단위로 포괄평가 실시 및 케어플랜 재수립

⑦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종: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 차상위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해당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 재택의료 기본료와 지속관리료는 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분류	내용	산정 횟수	금액(원)
방문진료료	- 의원	의사 1인당	129,650
	- 병원급이상	월 최대 100회	137,920
재택의료 기본료	수급자 1인당 월 1회	수급자 1인당 월 1회	140,000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종결 시 50% 산정		70,000
지속관리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당 6개월 단위	60,000
추가간호료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월 2회 초과하여 방문간호 제공한 경우	방문당 (월 3회 한정)	52,310

▶ 업무 체계

- ④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 재택의료센터 업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과정 개발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방문진료료 이외 급여비용 심사·지급
 -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④ 시범사업 참여기관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
 - 시범사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비용 청구
- ④ 지자체
 -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
 - 참여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지역사회 돌봄 자원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지역협의체 운영 등)
-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방문진료료 심사·점검

2 지역자원

가 수어통역센터 운영

▶ 목적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라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타 서비스 대상

-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청각·언어장애인
- 청각·언어장애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 서비스 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서비스 제공절차(예: 강남구수어통역센터)

- ⦿ 지역수어통역센터의 서비스별 이용 절차

서비스	수어통역	수어상담	수어교육	기관견학
대상	강남구 관내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및 심리 상담이 필요한 관내 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수어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강남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선진지 견학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내용	관광서, 금융기관, 병원, 방송 장애인 행사 등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 전반 의사소통에 관한 수어통역 및 전화 통역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발생하는 가족 내 갈등(부부, 자녀, 고부간의문제 등) 및 심리적 우울감 등에 대한 초기상담 진행 및 사례 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자체 수어교육 과정(기초, 중급, 국제) 진행 및 장애인 식개선 교육 출강 진행	시설 라운딩 안내
이용 방법	1. 통역예약 신청접수 2. 일정·통역내용 확인 3. 통역사 배정 4. 통역지원	1. 상담예약 신청접수 2. 상담 및 사정 3. 개입계획수립 4. 상담지원	전화접수 및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1. 기관견학 신청접수 2. 일정 확인 3. 확인안내 문자발송 4. 시설견학진행

▶ 사업 주체 및 지역센터

-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시·도 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 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설치
- ⦿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단,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소재지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협회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수어통역센터에 즉시 보고 해야 함.

▶ 수어통역센터의 조직 및 인력

- ⦿ 센터는 각 시·도 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고,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④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협회 시·도협회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설치의 수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

④ 센터 인력 지원 기준

- 5명 이상[센터장 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종사자 배치기준(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수어통역사 채용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 청각 장애인 통역사를 대체 채용할 수 있음.

④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수어통역사 :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청각장애인통역사: 중계통역,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어통역사 및 일반수어통역사로 둘 수 있음.

④ 센터의 인력은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위원회의의결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

▶ 업무체계

- ④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④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어통역업무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수어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 ④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 사업 담당 부서

주체	역할	연락처
중앙수어 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교육, 상황별 통역 지침, 전국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조사 및 데이터, 사업실적 취합 등	전화: 02-6925-0175 팩스: 02-451-2651 이메일: 17nsl@17nsl.com
해당지역 시군구청	서비스 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소관기관: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지원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나 장애인 보조기기(건강보험, 의료) 급여사업

▶ 목적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 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 서비스 대상

-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액: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지급기준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교부 제한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됨.

-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 서비스 내용

⊕ 보험급여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2025년 2월 4일 기준)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 (년)	비고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930,000	4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1,530,000	4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1,020,000	4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1,530,000	4	
	위팔 의지-미관형	740,000	4	
	위팔 의지-기능형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720,000	3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1,640,000	3	
	아래팔 의지-미관형	650,000	3	
	아래팔 의지-기능형	980,000	3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520,000	3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830,000	3	
	손 의지-미관형	330,000	1	
	손 의지-기능형	610,000	2	
	손가락의지-미관형	150,000	1	
다리의지	골반 의지	2,26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	4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 (년)	비고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950,000	3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2,960,000	5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1,930,000	3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2,610,000	5	
	종아리 의지-일반형	1,380,000	3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2,230,000	3	
	발목 의지-일반형	680,000	2	
	발목 의지-실리콘형	1,440,000	3	
	발 의지-일반형	280,000	1	
	발 의지-실리콘형	790,000	2	
팔보조기	어깨 보조기	29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24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110,000	3	
	손가락 보조기	60,000	3	
척추 보조기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90,000	3	
	목 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70,000	3	
	목 보조기-자켓형	380,000	3	
	등-허리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200,000	3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460,000	3	
허리 보조기-코르셋	100,000	3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150,000	2	
다리 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620,000	3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1,020,000	3	
	무릎-발목-발 보조기	530,000	3	
	무릎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	3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410,000	3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190,000	3	
	발목-발 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310,000	3	
	발목-발 보조기-관절형(금속형)	330,000	3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	3		

사업개요_공동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IV
서식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 (년)	비고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	3	
	발 보조기-양쪽	200,000	1	18세 이하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19세 이상	250,000 /250,000	1/2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	5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활동형	1,000,000	5	
	수동휠체어-틸팅형	800,000	5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안	62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5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
	개인용 음성증폭기	500,000	5	
	전동휠체어-가군	2,36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자세보조용구-앉기형-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	3	
	자세보조용구-앉기형-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	3	
	자세보조용구-앉기형-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170,000	3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차-전방	50,000	3	
	보행차-후방	30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전동휠체어-나군	3,800,000	6	
	수동휠체어-리클라이닝형	800,000	5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2,200,000	3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 (년)	비고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190,000	1.5	2개 1세트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	-	
	넓적다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	-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416,000	-	
	종아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	-	

● 서비스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 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
 - ①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②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③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 공단의 등록업소 급여 물품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 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

● 공단의 등록업소 급여 물품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청구신청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지사로 신청.

④ 수급내역 및 내구연한 종료일 확인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
- 유선: 공단 고객센터 전화상담(1577-1000)

④ 상시신청 구비서류

급여 물품	구비서류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한 보장구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서비스 제공절차 및 해당 기관

④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1

절차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조기기 처방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 ※ 현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 (전지)는 제외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
사전급여 신청(건보) 신청(의급)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 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불가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건보) 보장기관의 수급 자격판단(급여)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 여부 결정.통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구입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구입 ※ 보조기기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절차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조기기 검수확인(건보) 보조기기 검수(의급)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검수확인서 발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목발/흰지팡이/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수동휠체어/전·후방 보행차/욕창 예방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는 검수확인서 면제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구입비용 지급청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구입비용 지급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지체없이 확인한 후 지급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 업자에게 지급 가능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조 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 서비스 업무체계



- ※ 처방전 불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 승인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텀링형, 리클라이너형)
- ※ 검수 대상: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사업 담당부서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129
-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신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 ☎1577-1000
-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 문의: 중앙보조기기센터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6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	☎ 1577-1000(대표번호) 033-736-4663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관할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중앙보조기기센터	☎ 1670-5529(대표번호)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 사업

▶ 목적

- 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②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 ③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제공기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 서비스 대상

- ④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즉,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④ 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 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④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대상자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설명
일반대상자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감경대상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율 없음

* 관계법령

-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50%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서비스 내용

④ 급여방식

급여방식	설명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 급여 품목

장애 유형	품목 및 기기명	설명	내구연한	급여 한도 (개)
구입 품목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	1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	1
	성인용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	2
	안전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10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2
	지팡이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2	1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	1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5
	요실금팬티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없음	4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액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없음	6/5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5	1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0	1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0	1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5	1
	목욕리프트	입욕시 높낮이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3	1
	배회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등)	5	1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	1
	경사로(실외용)/경사로(실내용)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8년(실외용-대여)/2년(실내용-구입)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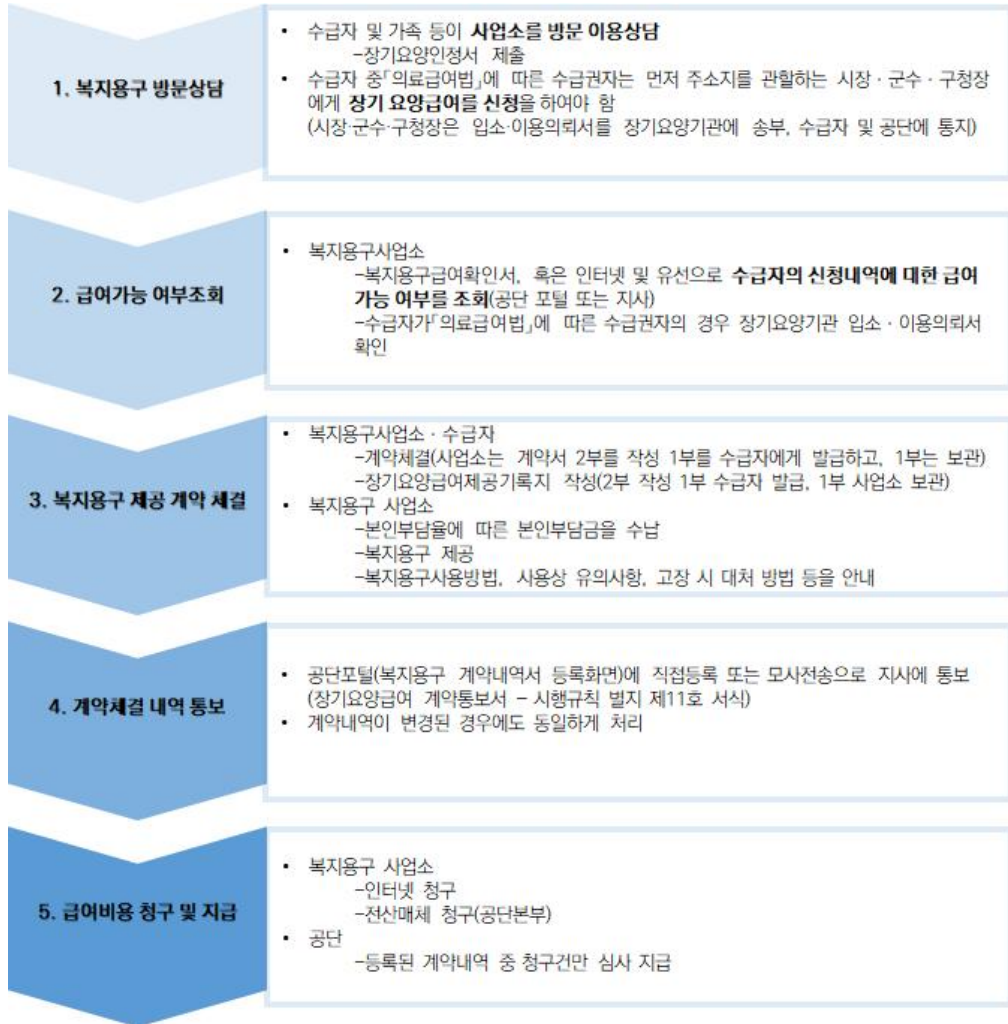
사업계획_공동편
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II

서식
IV

▶ **제공인력 서비스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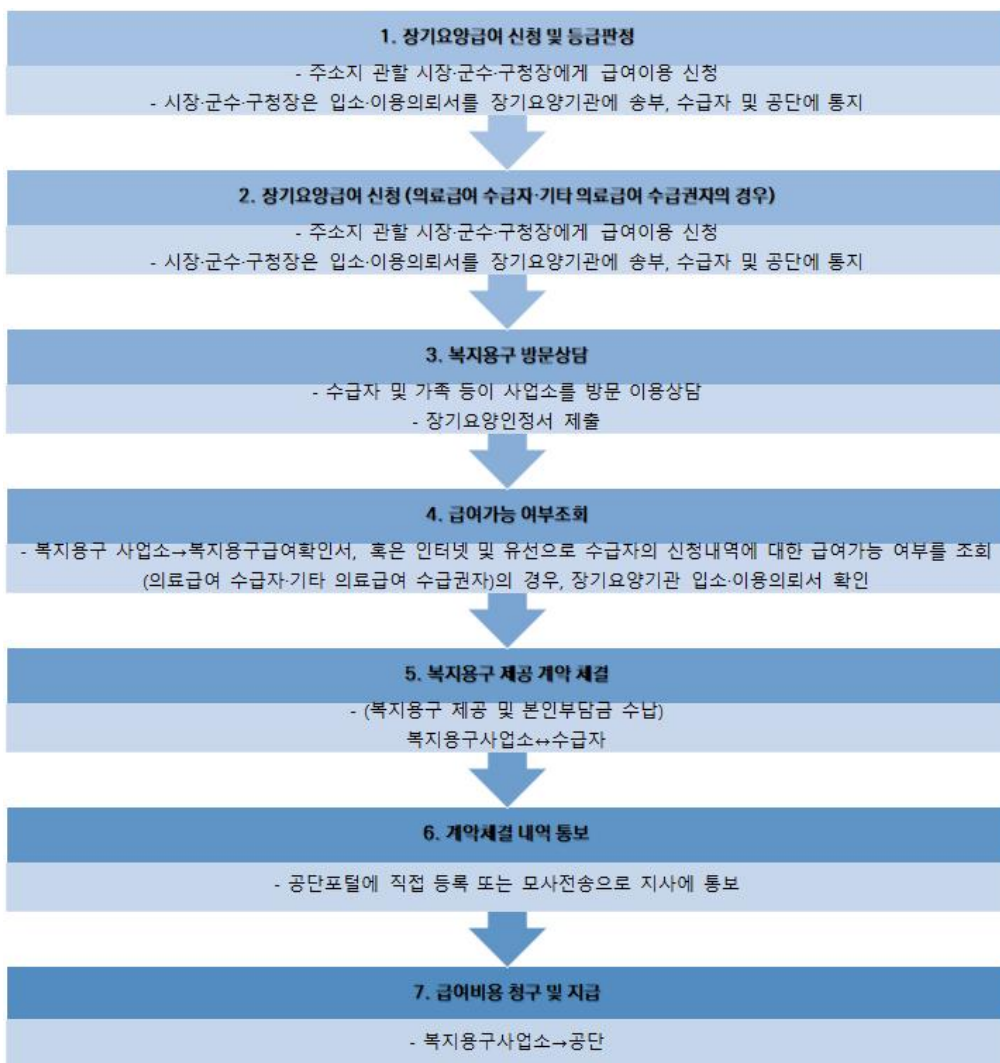


▶ 사업담당 및 업무체계

① 사업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업무체계



사업개요_공동편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서식

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 목적

- ◎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른 가족 갈등 해소 필요
 -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 법적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서비스 대상

-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서비스 지원내용

-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돌봄 및 부모의 휴식지원
- ◎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금액; 12,180원
-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구 분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2,180원 (전액 본인 부담)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870원 (본인부담 40%)		
이용료 산출근거	시간당 이용료×월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4,870원 × 월 60시간 = 292,200원 • 연 1,080시간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본인 부담금) 시간당 12,180원× 월 60시간 = 730,800원 		

▶ 서비스 절차

연간계획 수립	• 사업예산, 배정사업량 및 서비스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
이용가정 정보 확인, 서비스 욕구조사, 서비스 기본사항 안내	• 이용 아동으로 선정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전화 및 면담으로 확인
이용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일정 수립	• 연간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일정 수립
서비스 연계 (장애아 돌보미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요청 시간 및 장소, 서비스내용,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요건에 맞는 돌보미 선정 • 이용가정 및 돌보미에게 서비스 시간 및 장소 등 서비스 연계 내용 통보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시간에 가정 및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 이용 • 현장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 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이용가정 부모에게 확인 받음
사후관리	• 서비스 실태 점검 및 서비스 질 관리

▶ 장애아돌봄미 역할

-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이동 포함*)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부모 등이 노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음
 - 이용자에게 장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 해당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마 언어발달지원

▶ 목적

-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서비스 대상

- ◉ 자격기준: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 내용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 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

- ⦿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심사없이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 ⦿ 제공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준용

▶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카드결제 또는 현금납부 가능)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목적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 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서비스 진행 절차



▶ 관련 문의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원,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절차



▶ 사업 담당부서

- ⦿ 교육부 전화문의: 02-6222-6060
- ⦿ 웹사이트: <https://www.moe.go.kr/main.do?s=moe>

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목적

-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서비스 대상

- 만 5세~69세 장애인 지원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만 5세~ 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상이

▶ 서비스 내용

-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 간 지원

▶ 서비스 이용 절차



▶ 사업 담당부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1551-0078

자 장애아보육료 지원 사업

▶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 서비스 이용 절차



▶ 사업 담당부서

-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차 저소득 장애인주거편의증진사업

▶ 목적

- ☉ 장애인의 가정 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집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비스 대상

- ☉ 저소득 장애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 (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장애중증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전문가 실사(60%), 선정심의위원회 심사(40%) ⇒ 최종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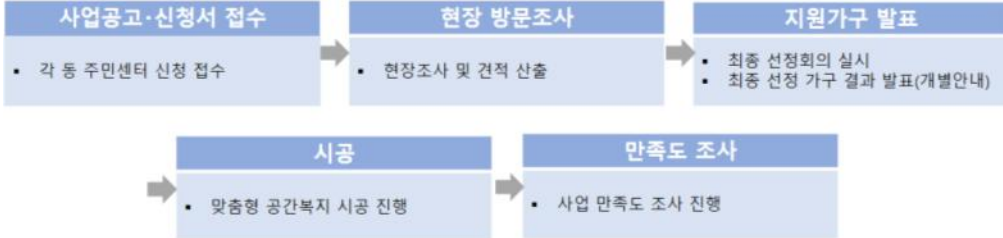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 ☉ 주거환경 개선(문턱제거, 도어락, 조명교체 등)
-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설치 (1가구당 평균 4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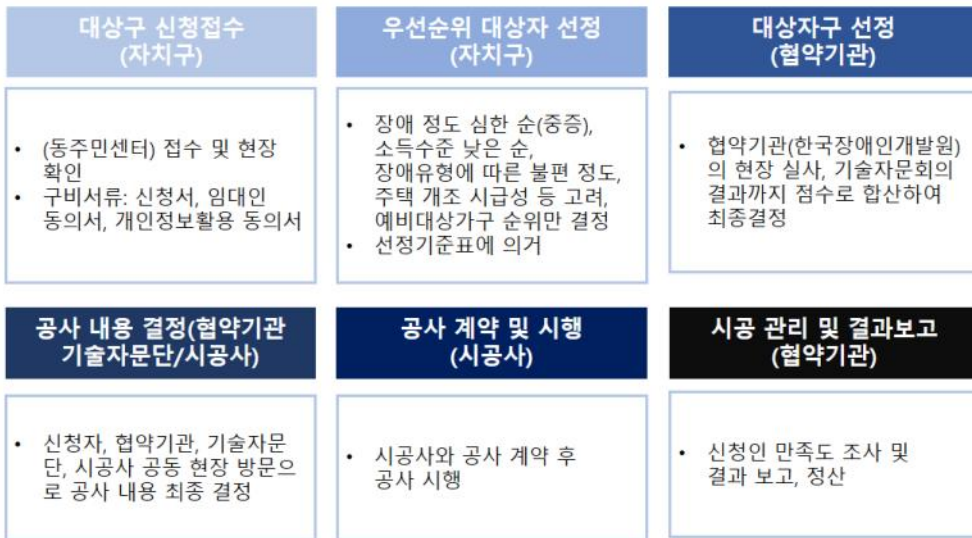
구성	개조 범위
안전성	거주자(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편의성	경사로, 출입문 교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물리적 불편요소 제거
위생환경	곰팡이, 누수 등 실내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소 제거
에너지효율 개선	LED 등 교체,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공간활용	공간 부족이나 공간 재구성 등 공간활용 개선
스마트홈(IoT)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원격제어 지원

▶ 서비스 제공절차

- ①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연계 → 매년 초(2~3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업무 흐름도



카 영구임대주택

▶ 목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 서비스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⑫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서비스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기본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공급규모: 전용면적 40m² 이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평균 보증금 190만원, 평균 임대료 4만 5,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료 지원

▶ 서비스 제공절차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입주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입주자 신청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계약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계약체결 (공급자→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업무 흐름도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사업 담당부서

기관명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1600-1004
마이홈	1600-0777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타 국민임대주택

▶ 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 서비스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3천 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전용면적 50㎡ 미만	전용면적 50~60㎡	주거약자용 주택	고령자 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신체 장애 등급 1~14급자, 고엽제 후 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서비스 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 가능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서비스 제공절차

- ①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시행



▶ 업무 흐름도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사업 담당부서

기관명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1600-1004
마이홈	1600-0777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 ② 마이홈(<https://www.myhome.go.kr/>)

Ⅱ 통합공공임대

▶ 목적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 대상

-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청년) 18~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모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종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 피해자, 폐탄광 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 2025년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서비스 제공절차

-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 신청



▶ 업무 흐름도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공공주택사업자에 서비스 신청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공공주택사업자에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공공주택사업자에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서비스 지원)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⑤ (서비스 사후 관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사업 담당부서

기관명	연락처
마이홈	1600-0777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붙임. 서비스 메뉴판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보건 의료	보건 복지부	장애인건강 주치의사업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애인)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일반건강관리: 중증·경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 • 주장에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제공 • 통합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전문적 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	연 1회 이내 - 일반건강관리: 62,950원 - 주장에관리: 62,950원 - 통합관리: 94,430원 * 의원급, 중증 장애인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방문 진료	보건 복지부			중간점검	연 1회 이내 - 일반건강관리: 35,410원 - 주장에관리: 35,410원 - 통합관리: 53,120원 * 의원급, 중증 장애인 기준	
				교육상담	1일 1회 이내, 연간 8회 이내 - 10분 이상 20분 미만: 14,620원 - 20분 이상 30분 미만: 25,730원 - 30분 이상: 36,840원 * 의원급, 경증·중증 장애인 기준	
				환자관리	연간 12회 이내 - 10,470원 * 의원급, 경증·중증 장애인 기준	
				방문	중증: 연간 24회 경증: 연간 4회 이내 - 방문진료료 I(행위 약제 등에 대한 비용 포함): 192,090원 - 방문진료료 II(행위, 약제 등에 대한 비용 불 포함): 152,840원 - 방문간호료: 79,810원 * 의원급, 중증 장애인 기준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처방: 내복약, 외용제 등에 대한 처방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검사: 혈액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 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30 본인부담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1·2종, 의료 급여 수급권자 1·2종 대상자: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 부담 환자 1인당 주 3회 산정(단, 말기 임환자 등 집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초과산정 가능) - 방문진료료 (행위·약제 등에 대한 비용 포함): 의원급 128,960원, 병원급 이상 136,240원 - 방문진료료 II(행위, 약제 등에 대한 비용 불포함): 의원급 89,720원, 병원급 이상 94,070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일차의료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찰: 문진, 망진, 촉진, 청진, 타진, 안진, 맥진 등 처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상의 한약제제 질환관리: 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 검사: 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관리 등에 대한 환자, 보호자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30 본인부담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1·2종, 의료 급여 수급권자 1·2종 대상자: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 부담 한의원 1인당 한달에 60회까지 산정 가능 - 한의 방문진료료: 106,290원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가정형 호스피스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환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인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주기적 상담 통증 및 신체적 증상조절, 배액관 관리와 상처, 욕창관리 등 제공 증상 악화 시 호스피스 병동 입원 연계 임종을 원하는 경우 임종 돌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환자(산정특례):본인부담 5% 비입환자: 본인부담 20%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범기관의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라 24세 이하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 교육·상담료 • 방문료 • 환자관리료 • 재택의료 평가·연계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부담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면제 연 1회 산정: 171,370원 연 최대 6회 이내 산정: 30,330원 - 의사: 150,380원 - 간호사: 88,720원 - 물리·직업치료사: 74,890원 월 1회 산정, 연 12회 이내 - 기본 환자관리료: 33,180원(월 1회 제공 시) - 집중 환자관리료: 64,490원(월 4회 제공 시) 월 1회(연간 최대 10회 이내 산정): 53,770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가정간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 만성 호흡기질환자 • 산모 및 신생아 • 뇌혈관질환자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비유관 교환, 유지 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 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 치료 등), 감사관련 업무, 투약 및 주사, 교육·훈련, 상담, 의뢰	• 가정간호 비용: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진료 행위별 추가(치료/재료비)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비용총액의 20% 본인부담 - 회귀/중증·난치질환자: 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부담 - 임환자: 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부담 • 진료행위별 추가(치료/재료비):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으로 병원 종별 적용	가정간호 실시기관 (병의원)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 의료자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자역회 자원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상담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정기 팀 사례회의 • 주기적 방문진료·간호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 점검 및 평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해당 급여 비용의 100분의 30 -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대상자 1,2종: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5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5	의원급 의료기관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건강 관리	보건 복지부	장애진화 산부인과	등록된 여성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 -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 여성질환 치료나 검진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의 임신, 분만, 산후 관리까지 연속적인 치료 제공 24시간 365일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 응급진료 시행 임신·출산과 장애 관련 합병증 관리를 위한 다학제적 진료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부인과 검진 및 갱년기, 노년기 치료) 		장애진화 산부인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예비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등록 장애인 누구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의사소통을 돕는 안내 인력 배치 시정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 원활한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진장비 장애유형별 지원서비스 마련 	국가건강검진 내용과 동일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개시 기관	
	지역재활병원	지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능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검사 및 진단서비스 제공 일반진료서비스 제공(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금이 전액 부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연간 1회 이내 -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35,810원 - 지속 계획수립: 28,090원 점검 및 평가료 (연간 2회 이내): 28,090원 환자관리료(월 1회, 연간 12회 이내) - 저위험군: 11,310원 - 중위험군: 11,910원 - 고위험군: 13,100원 교육·상담료(1일 1회, 연간 10회) -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15,650원 - 생활습관개선: 13,920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기관	
보건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돌봄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자를 지역 내 사업 참여원으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관리: 환자의 체계적 질환관리를 위해 주기적 내원진료 F/U, 환자 모니터링, 교육, 상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실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기관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방문 재활	보건 복지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CBR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등록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집중관리군: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 정기관리군: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자기역량지원군: 건강 및 복지 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퇴원관리 상담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인관리 등 지역지원 연계: 사업지역사회재활 협의체(회) 및 사례관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계, 통합건강증진 사업 연계 등 지원 사업: 장애인 운전 지원, 가옥 내 편의 시설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홍보: 사업홍보, 장애체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정기적(연 2회 평가) 정기관리군: 정기적(연 2회 평가) 자기역량지원군: 비정기적(연 1회 평가) 	보건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뇌병변장애 및 뇌진증 장애 전체, 중증 지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구강 진료	보건 복지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간 1회 산정: 34,050원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 정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전악)+구강 보건교육+치석제거(전악))	연간 2회 이내 - 치과의료원 92,030원 - 치과병원 이상 95,290원	
방문 재활	보건 복지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 환자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시 아래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근골격계: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추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 - 중추신경계: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추손상, 뇌척수액 증복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상담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교육상담 II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 관리 등 교육·상담 제공) 환자관리(재택의료팀이 재활운동 시행 여부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운동법 및 합병증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점검 등 재택 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골격계) 연간 2회 이내 산정 (중추신경계) 연간 3회 이내 산정 수가 41,790원(환자 본인부담률 1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상담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교육상담 II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 관리 등 교육·상담 제공) 환자관리(재택의료팀이 재활운동 시행 여부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운동법 및 합병증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점검 등 재택 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2회 이내 - 치과의료원: 50,300원 - 치과병원급 이상: 51,740원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발달 재활	보건 복지부	장애이동 발달재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놀이 심리, 행동발달, 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 운동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8회(주2회) - 회당 30,000원 기준 	장애인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 하여 장애아동 돌봄 및 부모의 휴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 서비스 이용금액: 12,180원 	
보조 기기	보건 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사업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9개 분류 90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대상자: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 대상자: 지급기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10개 품목 • (대여) 6개 품목 • (구입 또는 대여) 2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15% -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9% - 보험료순위 25% 이하인 자: 6% - 기초생활수급자: 0% 	국민건강 보험공단 콜센터
기타	보건 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 언어 장애인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연 한도액 160만원	수어통역 센터
주거 환경 개선	한국 장애인 개발원	저소득 장애인주거편의증 진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문턱제거, 도어락, 조명교체 등)	무료	관할 주민센터 연계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 (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거지 미련	국토 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반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현물지급	

중분류	소분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원대상(현행기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단가	서비스 제공 기관 유형
	보건 복지부	국민임대주택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이거나 총자산(이)계급(중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이하)이거나 자동차 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등 사회 보호계층 등이 우선공급대상자가 됨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현물지급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통합공공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가구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세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현물지급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기타	보건 복지부	언어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체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여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8회(주2 회), 회당 27,500원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만 5~69세 장애인 지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12개월 간 지원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장애인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반 편성아동: 587,000원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587,000원 지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 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지원 	



서식



서식 1. 시·도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305
서식 2. 시·군·구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309
서식 3. 통합돌봄 대상자 의뢰서(보건소→읍면동)	323
서식 4. 통합돌봄 대상자 의뢰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건소용)	324
서식 5. 통합지원 신청서	325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27
서식 7. (노인용) 사전조사지	329
서식 8. (노인용) 통합돌봄 접수결과 안내서	330
서식 9. 긴급돌봄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서	332
서식10. (노인용) 조사 등 의뢰서(통합판정조사 의뢰용) (지자체→건보지사)	333
서식11. (장애인용)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지자체→건보지사) ..	334
서식12. (노인용) 통합판정조사표	335
서식13. 통합(종합)판정조사 관련 지자체 연계조사 서식	344
서식14. (노인용) 지자체 자체조사 서식	345
서식15. (장애인용) 장애인 종합판정 조사표	348
서식16. (노인용)통합판정서(건보지사→시군구)	352
서식17. (장애인용)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판정서	354
서식18. 개인별지원계획서	355
서식19.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357
서식20. 통합지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358
서식21. 대상자별 개인별지원계획 확정 통보 서식	359
서식22. 서비스 제공(변경) 의뢰서(지자체→서비스제공기관)	360
서식23. 모니터링 서식	362
서식24. 모니터링-서비스 제공기관 기록지(서비스제공기관→지자체)	363
서식25. 건보공단 서비스 이용정보 확인 의뢰서	364
서식26. 건보공단 서비스 이용정보 기록지	365
서식27. 대상자 중단 확인서	366

서식 1 ▶ 시·도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0000년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

2026. .

○○○ 시·도

I
공계연수

II
사업추진절차_노인
복지사업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
복지사업

IV
서식

I	비전과 목표
비 전	
목 표	□
추 진 과 업	□
핵 심 사 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성 양식 <input type="checkbox"/> 편집용지 : (A4)왼쪽·오른쪽 20,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input type="checkbox"/> 글자모양 : △(대·중 제목) HY헤드라인(글자크기 : 20p), △(□·○·-) 휴먼명조(글자크기 : 15p), △(그 외) 중고딕(글자크기 : 12p) △(표) 맑은고딕(글자크기 : 13p) <input type="checkbox"/> 문단모양 : 줄 간격 160, 문단 위·아래 0pt

II 추진체계

□ 통합돌봄사업 담당 및 지원조직 현황

○ 통합돌봄 수행 제공기반(전체도)

-

○ 시·도 본청 및 협업부서

구분	기관명	팀명	담당인력			(담당)직렬구성				
			계	전임	겸임	계	복지	간호	행정	기타
계	00개 기관	00개 팀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	00과	00팀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	00동	00팀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 통합지원 관련기관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담당부서
공공	00공단 00지역본부	시도단위 보건의료-장기요양 자원연계 등 통합돌봄 추진 지원	000 부서 담당자 000
민간	00의료원	시도단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000 부서 담당자 000
...

□ 돌봄통합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통합지원협의체 세부 운영방안

-

-

-

Ⅲ

세부 추진내용

1

추진목적 및 목표

- (목적)
- (목표)
- (성과목표 제시)

2

시·군·구 단위 서비스 확보 지원방안

- 효과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시·군·구 단위 서비스 확보방안 등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기타)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 시·군·구 단위 효과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기관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도의 지원방안

4

시·도 단위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협업

- 시·군·구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단위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협업방안 구축

5

시·도 사회서비스원 협업

- 지역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품질관리, 통합지원 관련기관 교육 등 협업방안

서식 2 ▶ 시·군·구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0000년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

2026. .

○○○ 시·군·구

I
공백영역

II
사업추진절차_노인
복지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
인

IV
서식

I	비전과 목표
비 전	
목 표	<input type="checkbox"/>
추 진 과 업	<input type="checkbox"/>
핵 심 사 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작성 양식 <input type="radio"/> 편집용지 : (A4)왼쪽·오른쪽 20,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input type="radio"/> 글자모양 : △(대·중 제목) HY헤드라인(글자크기 : 20p), △(□·○·-) 휴먼명조(글자크기 : 15p), △(그 외) 중고딕(글자크기 : 12p) △(표) 맑은고딕(글자크기 : 13p) <input type="radio"/> 문단모양 : 줄 간격 160, 문단 위·아래 0pt

II 돌봄수요 및 자원현황

지역현황

○

돌봄수요 현황

○ 노인인구 현황

구분	인구현황			65~74세		75세 이상	
	계	남	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광역시							
시군구							

○ 장애등록 현황

구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65세 미만		-
65~74세		
75세 이상		

○ 치매환자 현황

구분	치매환자수
계	
65~74세	
7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계							
65~74세							
75세 이상							

I
시영가사
평가서

II
시영후진절차_노인
평가서

III
시영후진절차_장애
인
평가서

IV
서식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

구분	장기요양 등급외자 수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수		
	합계	등급외 A	등급외 B	합계	일반군	중점관리군
계						
65~74세						
75세 이상						

○ 우선관리 대상자 수

구분	노인					65세 미만 장애인		
	합계	재가 급여자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맞돌 중점군	합계	심한 지체 장애인	심한 뇌병변 장애인
계								
65~74세								
75세 이상								

□ 돌봄자원 현황

○ 의료기관 현황(퇴원환자 참여 의료기관, 방문진료 참여기관 등)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정신 병원	의원	요양 병원	치과 의원	한의원	부속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전소	약국
계													
00동													

- 방문의료기관

구분	합계	방문의료기관 수
계		
재택의료센터		00 의원, 00 한의원

○ 장기요양기관 현황

계	재가급여						시설	통합재가 참여기관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족지용구	주간보호		

○ 돌봄 관련 시설·기관 현황

계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맞돌수행기관	장애인 복지관	...	
						...	

○ 인력현황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의료기관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재가)			
의사	한의사	간호자	약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업기관
I

사업추진절차_노인
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
III

IV
서식

Ⅲ 그간 추진경과(~2025년)

조례제정 등 운영기반 구축

-
-

공공-민간기관 간 추진체계 구성

-
-

서비스 인프라 확보

-
-

주요 성과와 한계점

-
-

IV 추진체계

□ 통합돌봄사업 전담 및 지원조직 현황

○ 통합돌봄 추진체계도

○ 시·군·구 분청

- 시군구 전담부서

-

-

연번	부서	직위(직급)	주요역할
1	00과	과장(사회5)	-

·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일정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담당	비고
2026. 0월			

- 보건소 협력 업무 작성

연번	부서	주요역할
1		-

- 협업부서(복지, 노인, 주거, 장애인, 읍면동 등)

* 단, 동일과에서도 전담부서가 아닌 경우 작성

연번	부서	주요역할
1		-

○ 전문기관(건보공단 등)과 협업 방안

-

-

I
사업기안서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기관		주요 역할
공단	진천지사 (돌봄통합지원팀)	-
지자체	본청(전담팀)	-
	읍면(통합지원창구)	-

○ 통합지원 관련기관

-
-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담당부서
공공	00공단 00지역본부	-	000 부서 담당자 000
민간	00의료원	-	000 부서 담당자 000
...

□ 돌봄통합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통합지원협의체 세부 운영방안

-

□ 통합지원회의 운영체계

- 통합지원회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비고
시군구			
행정구, 권역	“	“	
읍면동	“	“	
민간	“	“	

- 통합지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

V

세부 추진내용

1

추진목적 및 목표

- (목적)
- (목표)
- (성과목표 제시)

2

대상자

- 목표대상자 설정
 - (노인)
 - (장애인)
 - (기타)
- 대상자 발굴 방법
 -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
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
편

IV
서식

3

통합돌봄 서비스 내역

1 지역특화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주거/일상생활돌봄 순으로 작성)

1) 보건의료분야

(1) 서비스명

사업 추진 필요성

○

-

사업 추진 주관기관(부서)

○

-

협력기관(부서)

○

-

주요내용(서비스 지원내용)

○

-

서비스 대상자 및 규모 추계(가능 시 작성)

○

-

사업 추진절차·방안

○

-

서비스 제공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

-

추진일정 (2026.1월-12월) * 구체적으로 작성

일정	주요 사업 내용	담당	비고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2026. 7월			
2026. 8월			
2026. 9월			
2026. 10월			
2026. 11월			
2026. 12월			

보건의료 등 연계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순으로 작성)

※ 보건소 관련 사업은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직접 작성

1) 방문의료 (예시)

(1)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부서)

○

-

주요내용

○

-

현황

○

-

확대계획

○

-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편

IV
서식

추진일정 (2026.1월-12월) * 구체적으로 작성

일정	주요 사업 내용	담당	비고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2026. 7월			
2026. 8월			
2026. 9월			
2026. 10월			
2026. 11월			
2026. 12월			

연계서비스 (장기요양/주거/일상생활돌봄/장애인 등)

1) 일상생활돌봄 (예시)

(1)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부서)

○

-

주요내용

○

-

현황

○

-

확대계획

○

-

추진일정 (2026.1월-12월) * 구체적으로 작성

일정	주요 사업 내용	담당	비고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2026. 7월			
2026. 8월			
2026. 9월			
2026. 10월			
2026. 11월			
2026. 12월			

3] 장애 연계서비스

1) 장애인 보건의료 (예시)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사업 추진 주관 및 협력기관(부서)

○

-

주요내용

○

-

현황

○

-

확대계획

○

-

I
사업기안서

II
사업추진절차_노인면
관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면
관

IV
서식

□ 추진일정 (2026.1월-12월) * 구체적으로 작성

일정	주요 사업 내용	담당	비고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026. 5월			
2026. 6월			
2026. 7월			
2026. 8월			
2026. 9월			
2026. 10월			
2026. 11월			
2026. 12월			

4

모니터링 수행계획

- 모니터링 수행 목적
- 모니터링 세부 운영내용
 - 모니터링 수행주기/주체/모니터링 주요 내용

서식 3 통합돌봄 대상자 의뢰서(보건소 → 읍면동)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의뢰서(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용)			
의뢰자	기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주소		
의뢰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 의뢰대상자를 돌보는 보호자(실제 연락가능한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보호자 란'을 작성합니다.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뢰사유			
<p>본 의뢰자(본인)는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기 의뢰대상자가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뢰자(본인) :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I
시영개사

II
시영추진절차_노인편

III
시영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4 통합돌봄 대상자 의뢰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건소용)

「통합돌봄 사업」의뢰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지자체는 귀하를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의뢰 및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지자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의뢰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의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의뢰 대상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지자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연구기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계획·제공·사후관리, 사업추진실적 및 운영평가
제3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인(또는 보호자) 성명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5 통합지원 신청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합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대상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주소와 다른 경우만 작성)		

※ 친족·후견인란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친족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족 · 후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배우자 []부모 []자녀 []그 외의 친족 []후견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 업무담당자란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업무 담당자	기관명	
	기관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안내방법	안내대상	[] 대상자 본인 []친족·후견인
	안내방식	[]서면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기타()

※ 보호자란은 대상자(본인)를 돌보는 보호자(실제 연락 가능한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 담당공무원(직권), []본인, []친족·후견인, [] 업무담당자 은(는) 위와 같이 통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직권)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
시정기간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공민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인 경우 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그 친족 또는 후견인 중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관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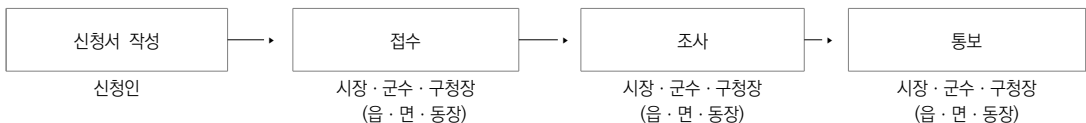
**직권신청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업무담당자에 의한 통합지원 신청
전문기관의 신청지원**

동의서

본인은 직권신청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업무담당자 () 또는 전문기관 이(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전문기관의 경우 지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상자	성명	성별	[] 남성 [] 여성	신청일자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연구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에 따른 제반(위탁) 업무 수행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요

■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업무위탁 기관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에 따른 조사·발굴·판정에 관한 업무, 퇴원·퇴소시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업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업무
제3자가 제공받는 민감정보의 항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의학적 정보(상병, 질환 등), 기능평가 정보, 사회경제적 상태, 지역연계 결과, 서비스 계획 및 사후관리 관련 내용 등
제3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수집됩니다.
-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요

■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업무위탁 기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에 따른 조사·발굴·판정에 관한 업무, 퇴원·퇴소시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업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업무
제3자가 제공받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수집됩니다.
-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요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본인(또는 보호자) 성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7 (노인용) 사전조사지

[기본정보]

기관명			진행일자			조사자			
대상자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대상자 특성	장기요양등급(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안등급 □ 장기요양 등급외(A, B) □ 기간·각하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반돌봄군 □ 중점돌봄군) □ 퇴원(예정)자(□ 의료기관 연계 □ 지역사회 발골) 장애등록/정도(□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기타() □ 해당 없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신청방법	신청자	○ 담당공무원(직권) ○ 본인 ○ 친족·후견인 ○ 업무담당자							
	신청경로	○ 지자체(□ 시·군·구 □ 읍·면·동) ○ 장기요양운영센터 ○ 병원 ○ 장기요양기관(□ 시설 □ 재가) ○ 기타()							

[선별항목] ※ 최근 한 달간 본인의 상태에 대해 아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문항		
치매	현재 치매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에 체크하신 경우 통합돌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 '아니오'에 체크하신 경우 일상생활수행 능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 최근 한 달간 본인의 상태에 대해 아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수행 능력		도움 필요 정도		
1) 의자나 소파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 가능	① 보조도구(지팡이 등)를 잡고 수행 가능	② 타인이 도와줘야 수행 가능	
2) 집안에서 6걸음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 가능	① 보조도구(지팡이 등)를 잡고 수행 가능	② 타인이 도와줘야 수행 가능	
3) 등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씻을 수 있습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 가능	① 필요 도구를 준비해 주면 수행 가능	② 타인이 도와줘야 수행 가능	
4) 상의를 입고 단추를 잠글 수 있습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 가능	① 상의를 준비해 주면 수행 가능	② 타인이 도와줘야 수행 가능	
5) 하의를 입고 지퍼를 올릴 수 있습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 가능	① 하의를 준비해 주면 수행 가능	② 타인이 도와줘야 수행 가능	
6) 소변실수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① 요실금 없음	① 주 1회 정도 실금함	② 주 2회 이상 실금함	
7)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볼 수 있습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수행 가능	① 보조도구(지팡이 등)를 잡고 수행 가능	② 타인이 도와줘야 수행 가능	
총계				

[통합돌봄 지원기준]

※ 아래의 경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치매 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의 합산 점수가 1점 이하이면 지자체 사업 안내로 종결됩니다. 2~3점이면 지자체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점 이상이면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시각기능

II
시력추진절차_노인편

III
시력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노인대상) 통합돌봄 접수결과 안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전조사 대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전조사 비대상자					
안내사항	1. 귀하의 통합돌봄 신청절차가 진행되어 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접수결과 안내 이후, 귀하는 시군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원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환자평가 여부에 따라 자체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직급				성명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I
시군구
공개

II
시군구
사전조사
노인

III
시군구
사전조사
전체

IV
서식

서식 10 (노인용) 조사 등 의뢰서(통합판정조사 의뢰용) (지자체 → 건보지사)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조사 등 의뢰서

의뢰처 (지자체)	소속	의뢰일 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의뢰 대상자 목록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신청(실거주지, 보호자 정보 등), 사전조사 결과 값 지자체 동행정보 등 포함하여 의뢰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담당자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11 ▶ (장애인용) 조사 등 의뢰서(종합판정조사 의뢰용) (지자체 → 연금공단)

조사 등 의뢰서

의뢰처 (지자체)	소속 담당자	의뢰일 연락처	년	월	일
--------------	-----------	------------	---	---	---

의뢰 대상자 목록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활동지원 신청여부	동행요청 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자폐성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 중복시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등급외 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중)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담당자명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2 (노인용) 통합판정조사표

통합판정조사표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장 앞면)

1. 일반사항								
①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통합판정신청		<input type="checkbox"/> 갱신		<input type="checkbox"/> 등급변경		<input type="checkbox"/> 심사청구	
② 조사원	성명				소속(지사)			
	조사장소				조사일시			
③ 신청인(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전화번호				도서·벽지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도서지역		
	건강보험자격					<input type="checkbox"/> 벽지지역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④ 주수발자	주수발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명				전화번호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며느리	<input type="checkbox"/> 딸	<input type="checkbox"/> 사위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친무이웃	<input type="checkbox"/> 사적간병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⑤ 참석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⑥ 주거상태	□재가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아들 <input type="checkbox"/> 며느리 <input type="checkbox"/> 딸 <input type="checkbox"/> 사위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친무이웃 <input type="checkbox"/> 사적간병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복수체크 가능					
	주택 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가구주택 <input type="checkbox"/> 비주택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지원주거(공공실버주택, 민간실버주택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일반) <input type="checkbox"/> 자가(공공실버주택, 민간실버주택 등 서비스 지원주거)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포함) <input type="checkbox"/> 양로시설 <input type="checkbox"/>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병원·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⑦ 등록장애								
〈참고사항〉								

I
시각기능

II
시력추진절차_노인편

III
시력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제1장 뒷면)

2. 질병 및 증상

■ 무의식 대상자 입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현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 또는 증상에 √표로 표시함

	질병 및 증상	질병 및 증상 유무	
		있음	없음
뇌신경계	1)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2) 파킨슨병		
	3) 치매		
	4) 우울증		
	5) 불면증		
	6)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7) 다발경화증		
심혈관계	8) 고혈압		
	9)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10)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11) 울혈성 심부전		
내분비계	12) 당뇨병		
소화기계	13) 간질환(간경변증, 간염)		
	14) 위/십이지장 궤양		
암	15) 암(악성신생물)		
호흡기계	16)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17) 폐결핵		
비뇨기계	18)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 포함)		
	19) 배뇨장애(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근골격계	20) 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21) 요통, 좌골신경통		
	22)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23) 기타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골다공증 등)		
기타	24) ()		

■ 위 질병과 관련하여 상시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표로 표시함 예 (□10개 이상 □복약 비순응) 아니오

■ 시력, 청력 저하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표로 표시함

① 시력 예 (□경증 □중증) 아니오 ②청력 예 (□경증 □중증) 아니오

■ 신청인은 현재 마비와 구축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표로 표시함

항목	해당부위
① 마비	<input type="checkbox"/> 있음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편마비 (□좌측 □우측) □기타마비 ())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구축	<input type="checkbox"/> 있음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수지 □무릎 □엉덩관절 □발목)
	<input type="checkbox"/> 없음

(제2장 앞면)

3. 인지와 의사소통 능력		
■ 현재 치매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대해 ✓표로 표시함		
항목	증상	
① 계절 감각이 떨어져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하루 중 시간 때를 혼동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자주 만나는 돌봄 제공자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져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이해력이 떨어져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경함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심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물건의 이름과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경함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심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경함 <input type="checkbox"/> 심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⑪ 최근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경함 <input type="checkbox"/> 심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⑫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모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경함 <input type="checkbox"/> 심함)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⑬ 한곳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면
관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면

IV
서식

4. 신체기능

■ 현재 이동시 보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사용하고 계신 보조기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예 (자팡이 보행기 휠체어) 아니오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타인에게 도움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영역	항목	도움 정도				
		완전자립	준바지사시 도움	일부 도움	많은 도움	완전 도움
이동성/ 운동성	① 돌아눕기					
	② 일어나 앉기					
	③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④ 이동하기					
신체청결	⑤ 세수하기					
	⑥ 양치질하기					
	⑦ 몸 씻기					
탈의/착의	⑧ 상의 입고 입기					
	⑨ 하의 입고 입기					
배설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조절하기					
	⑫ 소변조절하기					
식사	⑬ 식사하기					
	⑭ 삼키기					

(제3장 앞면)

5. 행동심리증상

- 현재 신경정신행동 증상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대해 심각도, 빈도에 대해 표시함
- 1) 심각도: ① 없음 ① 경함 ② 심각
- 2) 빈도: ① 없음 ① 드물 ② 가끔 ③ 보통 ④ 자주 ⑤ 항상

항목	심각도	빈도
① 타인이 자기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하거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등 환각 증상이 있다.		
③ 집이나 방 밖으로 자주 나가려 하거나 집 밖에서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④ 행동이나 말을 반복한다.		
⑤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행위를 한다.		
⑥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		
⑦ 욕설이나 폭언 등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고함을 친다.		
⑧ 침을 뱉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다.		
⑨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⑩ 수발이나 치료를 거부 한다.		
⑪ 불안하고 초조하여 안정부절 못한다.		
⑫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⑬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⑭ 감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 모든 일을 귀찮아한다.		

I
사양개요

II
사양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양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제3장 뒷면)

6. 질병관리와 간호	
■ 최근 1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제공된 의료·간호처치에 대해 √표로 표시함	
항목	제공 여부
① 기관절개관 간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흡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기관절개관 흡인 <input type="checkbox"/> 구강·비강 흡인)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산소요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 산소 투여일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인공호흡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네블라이저 요법(흡입 요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피부조직 손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궤양 <input type="checkbox"/> 발의 감염(당뇨 합병증) <input type="checkbox"/> 수술창상)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 궤양 종류	<input type="checkbox"/> 압박성 궤양(욕창) (<input type="checkbox"/> 1단계 <input type="checkbox"/> 2단계 <input type="checkbox"/> 3~4단계)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궤양(울혈성·허혈성·말초신경변증궤양) (<input type="checkbox"/> 1단계 <input type="checkbox"/> 2단계 <input type="checkbox"/> 3~4단계)
2) 피부간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압력 완화도구 <input type="checkbox"/> 체위변경 <input type="checkbox"/> 피부문제 해결 영양공급 <input type="checkbox"/> 도레싱 <input type="checkbox"/> 수술창상차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경관영양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비유관 <input type="checkbox"/> 위유관(<input type="checkbox"/> 수술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출혈, 감염 등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통증 ※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10 아프지 않음 조금 아플 조금 더 아플 보통 이상 꽤 많이 아플 굉장히 아플
1) 통증 빈도	<input type="checkbox"/> 통증 없음 <input type="checkbox"/> 통증 있으나 매일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매일 통증이 있음
2) 통증 약물 치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일반 진통제 <input type="checkbox"/> 마약성 진통제(<input type="checkbox"/> 패취경구 <input type="checkbox"/> 주사제(<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암성 통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배뇨 관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유차도뇨 <input type="checkbox"/> 단순도뇨 <input type="checkbox"/> 요루(<input type="checkbox"/> 수술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출혈, 감염 등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⑨ 투석 간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복막투석 <input type="checkbox"/> 혈액투석)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장루 간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수술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출혈, 감염 등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⑪ 관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⑫ 인슐린 요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 혈당검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투여 일수	<input type="checkbox"/> 매일 1회 <input type="checkbox"/> 매일 2회 이상

(제4장 앞면)

7. 일상생활 영위

가.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타인에게 도움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① 식사준비하기			
② 빨래하기			
③ 집안일하기			
④ 물건사기			
⑤ 교통수단 이용하기			
⑥ 약챙겨먹기			

나. 활동 수준

지난 7일간 신체활동 수준(걷기, 체조, 프로그램 참여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1~3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3~4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4시간 이상
신체기능 향상 가능성	신청인(본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발 제공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input type="checkbox"/> 없음	
신체기능 변화(최근 6개월)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향상됨 <input type="checkbox"/> 감소됨)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input type="checkbox"/> 없음	

다. 구강건강과 영양상태

구강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틀니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구강 위생 불량	<input type="checkbox"/> 저작 불편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구강 내 증상(구취, 건조, 잇몸출혈부종) <input type="checkbox"/> 구강 외 증상(구순염, 턱 관절 통증)		
영양 관련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식욕부진	<input type="checkbox"/> 체중감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하루 1끼 이하 섭취	<input type="checkbox"/> 수분섭취 부족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평소 어육류, 과일, 채소 등 불충분한 섭취		

라. 사회적 관계

혼자 있는 시간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하루 종일	<input type="checkbox"/> 오전(6-12시)	<input type="checkbox"/> 오후(12-18시)	<input type="checkbox"/> 저녁(18-24시)	<input type="checkbox"/> 심야(24-6시)
사회적 교류	<input type="checkbox"/>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이웃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지지 체계	외로움,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일상적 어려움 발생 시 도움 받을 사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마. 안전성 평가

낙상 경험(지난 3개월)	<input type="checkbox"/> 있음(<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checkbox"/> 없음	낙상 두려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재가)화기관리 위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야간보행 위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
사양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제4장 뒷면)

바. 정신건강 및 건강행동 문제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지난 1년)	<input type="checkbox"/> 예 (경험내용)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가족 사망 <input type="checkbox"/> 친구 사망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법률문제 <input type="checkbox"/> 가족 갈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살 생각(지난 1년)	<input type="checkbox"/> 예 (빈도)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매일	
음주 여부(현재)	<input type="checkbox"/> 예 (빈도)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매일	
흡연 여부(현재)	<input type="checkbox"/> 예 (강도)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경도 <input type="checkbox"/> 중증도 <input type="checkbox"/> 고강도	<input type="checkbox"/> 없음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는 의약품	<input type="checkbox"/> 예 (빈도)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예 (약물 의존성)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 주거환경 평가(재가인 경우)

영역	환경	상태	영역	환경	상태
주거공간 구조-상태	벽, 바닥, 천장 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주거 안전	화재경보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조명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가스차단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화장실 위치	<input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미끄럼방지 장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부엌 위치	<input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실내 장애물(문턱, 계단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엌 상태(노후)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실외 장애물(문턱, 계단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생활 설비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실내 위생	환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온수 사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곰팡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양변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해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샤워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약취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쓰레기 관리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아. 서비스 이용과 희망

■ 신청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용 중인 서비스로 충분하십니까? 있음 (충분 불충분) 없음

■ 신청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와 희망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표로 표시함

서비스 종류		현재 이용	이용 희망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병·의원 <input type="checkbox"/>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치과병·의원 <input type="checkbox"/> 방문진료 수가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주치의	<input type="checkbox"/> 병·의원 <input type="checkbox"/>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치과병·의원 <input type="checkbox"/> 방문진료 수가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주치의
	치매관리	<input type="checkbox"/> 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자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복약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운동지도 <input type="checkbox"/> 방문구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복약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운동지도 <input type="checkbox"/> 방문구강관리
건강 관리	방문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건강지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건강지원
	일반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건강백세운동교실 <input type="checkbox"/> 시·군·구·읍·면·동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 <input type="checkbox"/> 건강돌봄학교	<input type="checkbox"/> 건강백세운동교실 <input type="checkbox"/> 시·군·구·읍·면·동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다제약물관리 <input type="checkbox"/> 건강돌봄학교
장기 요양	시설급여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공동생활거점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공동생활거점
	재가급여 (시범사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욕 <input type="checkbox"/>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단기보호 <input type="checkbox"/>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방문요양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욕 <input type="checkbox"/> 방문간호 <input type="checkbox"/> 주간보호 <input type="checkbox"/> 단기보호 <input type="checkbox"/> 복지용구
		<input type="checkbox"/> 통합재가 <input type="checkbox"/> 재택의료(시범) <input type="checkbox"/> 주택개조(시범) <input type="checkbox"/> 병원동행(시범)	<input type="checkbox"/> 통합재가 <input type="checkbox"/> 재택의료(시범) <input type="checkbox"/> 주택개조(시범) <input type="checkbox"/> 병원동행(시범)
일상 생활 돌봄	가사(생활) 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지원
	그 외	<input type="checkbox"/> 식사지원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안전지원	<input type="checkbox"/> 식사지원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안전지원
그 밖의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보호재가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여가복지서비스(복지관, 경로당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보호재가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여가복지서비스(복지관, 경로당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5장 앞면)

자. 복지용품

■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품에 ✓ 표로 표시함

용품		보유	희망	용품		보유		희망	
						구입	대여	구입	대여
1)	이동변기			13)	배회감지기(태그형)				
2)	목욕의자			14)	고관절보호대				
3)	성인용보행기			15)	수동휠체어				
4)	안전손잡이			16)	전동침대				
5)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액, 양말)			17)	수동침대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18)	욕창예방 매트리스				
7)	지팡이			19)	이동 욕조				
8)	욕창예방 방석			20)	목욕리프트				
9)	자세변환 용구			21)	배회감지기				
10)	요실금 팬티			22)	경사로				
11)	구강세척기			23)	이송보조기기				
12)	기저귀센서			24)	기타()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13 통합(종합)판정조사 관련 지자체 연계조사 서식

통합(종합)판정조사 관련 지자체 연계조사 서식

■ 대상자 기본사항						
성명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령	만 세	생년월일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		핸드폰:			
	비상연락처 :			(관계:)		
주수발자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input type="radio"/> 손자녀 <input type="radio"/> 친인척 <input type="radio"/> 친구·이웃 <input type="radio"/> 사적 간병인 <input type="radio"/>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등)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자원봉사자 <input type="radio"/> 기타 ()					
가구형태	<input type="radio"/> 독거 <input type="radio"/> 비독거(<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노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보장수급권	<input type="radi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보훈) <input type="radio"/> 기초연금 <input type="radio"/> 일반가구					
	주수입원	<input type="checkbox"/> 공적연금 <input type="checkbox"/> 사적지원(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부담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부담가능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담가능 <input type="checkbox"/> 부담어려움				
대상자 유형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input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5등급 <input type="checkbox"/> 인지등급) <input type="radio"/> 장기요양 등급외(A, B) <input type="radio"/> 기간·각하 <input type="radio"/>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중 <input type="radio"/>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돌봄군 <input type="checkbox"/> 중점돌봄군) <input type="radio"/> 퇴원(예정)자(<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발굴) <input type="radio"/> 활동지원 신청여부(<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중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등급외) *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만 해당 <input type="radio"/> 장애등록/정도(<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radio"/> 장애유형(<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자폐성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 중복시 모두 체크 <input type="radio"/> 기타()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input type="radio"/> 없음		필요서비스 미이용 사유		(사유확인)	
	<input type="radio"/> 있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급식 및 도시락 반찬 []활동보조 []말벗 []보건소 사업 []주거개선사업 []건강운동교실 []목욕·이미용 []이동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무료진료연계 []가사간병방문도움 []여가, 문화, 교육 []기타()					
희망서비스						
■ 서비스 유형별 필요여부 (조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 조사자(지자체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와 동행 시 확인한 사항을 기술하고, 이를 통합지원계획 종합의견에 반영함						

서식 14 (노인용) 지자체 자체조사 서식

지자체 자체조사 서식

■ 대상자 기본사항										
성명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령	만	세	생년 월일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		핸드폰:							
	비상연락처 : (관계:)									
주수발자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input type="radio"/> 손자녀 <input type="radio"/> 친인척 <input type="radio"/> 친구·이웃 <input type="radio"/> 사적 간병인 <input type="radio"/>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등)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자원봉사자 <input type="radio"/> 기타 ()									
가구형태	<input type="radio"/> 독거 <input type="radio"/> 비독거(<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노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보장수급권	<input type="radi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보훈) <input type="radio"/> 기초연금 <input type="radio"/> 일반가구									
대상자 유형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input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5등급 <input type="checkbox"/> 인지등급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등급외(A, B) <input type="checkbox"/> 기각·각하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돌봄군 <input type="checkbox"/> 중점돌봄군) <input type="checkbox"/> 퇴원(예정)자(<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발굴) 장애등록/정도(<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급식 및 도시락 반찬 [활동보조 [말벗 [보건소 사업 [주거개선사업 [건강운동교실 [목욕·이미용 [이동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무료진료연계 [가사간병방문도움 [여가, 문화, 교육 [기타()									
■ 주거환경상태 (※ 현장조사 시 조사자가 확인 / 병원조사인 경우 생략 가능)										
생활방식	<input type="radio"/> 단독보행 <input type="checkbox"/> 클러치사용 <input type="checkbox"/> 좌식생활 <input type="checkbox"/> 휠체어사용 <input type="radio"/> 와상생활									
주거상태	<input type="radio"/> 노후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양호	인터넷가능여부 (스마트폰 포함)	<input type="radio"/> 가능	<input type="radio"/> 불가능				
주택형태	<input type="radio"/> 단독주택 <input type="radio"/> 아파트 <input type="radio"/> 연립주택 <input type="radio"/> 다가구주택 <input type="radio"/> 비주택 <input type="radio"/> 기타()									
주거지상태	<input type="radio"/> 지하 <input type="radio"/> 1층 <input type="radio"/> 2층이상 (계단 <input type="checkbox"/> / 승강기 <input type="checkbox"/>)									
난방형태	<input type="radio"/> 가스보일러 <input type="radio"/> 연탄보일러 <input type="radio"/> 기름보일러 <input type="radio"/> 아궁이 (연탄 / 장작) <input type="radio"/> 난방없음 <input type="radio"/> 기타()									
화장실형태	<input type="radio"/> 공용 <input type="radio"/> 전용		<input type="radio"/> 수세식		<input type="radio"/> 재래식					
주요 주거환경	조명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문턱여부(현관, 방, 화장실)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계단(계단난간위치)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집안의 안전손잡이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I
시각장애

II
시각장애인
노인

III
시각장애인
장애인

IV
서식

■ 일상생활기능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옷 입기 (옷 꺼내기, 단추·지퍼·벨트 채우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대소변 조절하기			
차려 놓은 음식먹기							
■ 도구적 일상생활기능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몸단장 (빗질, 화장, 면도 등)				금전 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집안일 (실내청소, 집안정돈 등)				근거리 외출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식사준비 (음식재료준비, 요리 등)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빨래 (세탁후 널어말리기 포함)				전화 걸고 받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 식사기능							
1) 하루에 몇 끼니를 챙겨드십니까?(간식 제외)				① 1끼	② 2끼	③ 3끼	
2) 음식 씹는 기능				① 씹기 어렵다 ② 부드러운 음식을 잘 씹는다 ③ 어떤 음식이든 잘 씹는다			
3) 음식을 삼키는 기능 (연하곤란, 사레들림 등)				① 삼키기 어렵다 ② 부드러운 음식을 잘 삼킨다 ③ 어떤 음식이든 잘 삼킨다			
■ 인지심리기능							
1) 단기 기억력				① 정상	② 이상 있음	③ 확인 불가	
2) 일상생활 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기술				①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②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③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④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3) 우울정도					
(1)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일이나 취미 혹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대부분 흥미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병의원 이용					
1)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1년)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았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3번으로 이동)			
2-1)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거동이 불편해서 ③ 의료정보 부족 ④ 병원 예약이 어려워서 ⑤ 증상이 가벼워서 ⑥ 기타()					
3) 다른 사람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기타 통증 및 불편 사항		①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매우 심함			
5) 병명 및 복용 중인 약(지자체 조사인 경우 생략 가능)	병명:	복용약:			
■ 이동지원					
1)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실외 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기존 이동지원서비스 수혜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서비스 유형별 필요여부 (조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주요 욕구					
일상생활기능	인지심리기능	의료적욕구	주거환경		
[종합의견]					
※ 지자체 자체조사를 수행한 담당자가 대상자(보호자)의 현재 생활현황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조사결과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내용(조사자 판단)을 종합적으로 기입함					

I
사업개요서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15 ▶ (장애인용) 장애인 종합판정 조사표

1. 일반사항

①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조사방법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② 방문 조사원	성명1		소속(지사)		
	성명2		조사일시		
③ 신청인(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활동지원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주 수발자	주수발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명		전화번호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input type="checkbox"/>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친구·이웃 <input type="checkbox"/> 사적간병인 <input type="checkbox"/>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⑤ 주거상태	<input type="checkbox"/> 재가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노부모 <input type="checkbox"/> 성인자녀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가구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주단지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병원·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⑥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심한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⑦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자폐성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 중복시 모두 체크				
	주된 장애유형		중복 장애유형		

2. 서비스 욕구 조사

○ 신청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로 표시함

서비스 종류		이용 희망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8종)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주차표지, <input type="checkbox"/> 특별 교통수단)	<input type="checkbox"/>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기 <input type="checkbox"/> 응급안전 <input type="checkbox"/> 최종증 통합돌봄
의료건강 서비스	일반 보건의료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의료서비스(진료, 간호 등)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장애친화 산부인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관리 <input type="checkbox"/> 종합건강문제 상담 <input type="checkbox"/> 구강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구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치과치료)
	어린이 특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재활치료 <input type="checkbox"/>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원 서비스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가사지원(청소, 세탁,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동행지원(병원/관공서 등 목적지 이동) <input type="checkbox"/> 식사지원(밀반찬, 식재료, 도시락)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환경	<input type="checkbox"/> 바닥 미끄럼 <input type="checkbox"/> 문턱단차 <input type="checkbox"/> 대청소(약취, 곰팡이) <input type="checkbox"/> 화재 취약 <input type="checkbox"/> 벽지 상태 <input type="checkbox"/> 조명 상태 <input type="checkbox"/> 냉난방상태	<input type="checkbox"/> 욕실바닥 미끄럼 <input type="checkbox"/> 변기 등 안전손잡이 <input type="checkbox"/> 주방가스기구 <input type="checkbox"/> 방역·방충 <input type="checkbox"/> 누수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상태 <input type="checkbox"/> 창호 상태
	그 밖의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3. 기능동작영역(성인, 19세 이상)

※ 유효한 활동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 조사 생략

1) 일상생활동작(ADL)

구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1 옷 갈아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욕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식사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실외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배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배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구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1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청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빨래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인지행동특성

구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전적 지원필요
1 조울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기능동작영역(아동, 19세 미만)

※ 유효한 활동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 조사 생략

1) 일상생활동작(ADL)

구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1 옷 갈아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목욕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식사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걷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화장실 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구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1 전화사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학습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인지행동특성

구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1 의사소통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의료건강영역(건강상태)

구분			① 해당 있음	② 해당 없음
1	건강관리	관절구축, 보행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연하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배뇨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배변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호흡기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피부(욕창)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조절되지 않은 통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정서행동 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복합)만성질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0		약물복용	<input type="checkbox"/> 5종 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11	구강관리	구강문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지역자원영역

구분			① 해당 있음(불량)	② 해당 없음(양호)
1	영양상태	하루 1끼 이하 식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주거환경	방바닥 미끄럼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욕실바닥 미끄럼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문턱 단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변기 등 안전손잡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주방가스기구 차단설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청결한 주거환경 (악취, 곰팡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바이러스·해충 위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화재 취약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0		누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1		벽지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2		출입문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3		조명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4		창호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5		냉·난방 상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16 ▶ (노인용) 통합판정서(건보지사 → 시군구)

※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내용으로 본서식은 참고용

통합판정서

I. 대상자 기본정보

성 명		생년월일	
통합판정 관리번호		건강보험자격	

II. 통합판정결과 및 서비스안내

III. 통합판정위원회이견

IV. 대상자 상태군과 관리목표

V. 욕구·문제목록

기 능	생활기능		자기돌봄	
인 지 행 동	인지정신행동	정신건강		의사소통

의 료 · 간 호 처 치	기본요구처치	증상관리처치
건 강 관 리	건강관리행동	건강문제관리
사 회 지 지 · 주 거 환 경	사회·돌봄관계	주거환경

관리지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 내 사 항

1. 본 서식은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용으로 개발된 서식으로 통합판정결과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통합판정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군은 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또는 시설재가)가 필요한 대상임을 의미하나,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기요양인정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면
담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면
담

IV
서식

서식 17 (장애인용)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판정서

통합지원판정서

I. 대상자 기본 정보			
성명		생년월일	
II. 종합판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안내			
<input type="checkbox"/> 의료·건강 필요군			
<input type="checkbox"/> 지역자원 필요군			
III. 이용 희망 서비스 욕구조사			
장애인복지서비스			
의료 건강	일반 보건의료		
	어린이 특화		
지역 자원	생활지원		
	주거환경		
	그 밖의 서비스		
IV. 개별상태 및 환경목록			
영역	개별상태 및 환경목록		
기능동작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
의료건강	건강관리		구강관리
지역자원	영양상태		주거환경
관할지사 주소	국민연금공단 OO지사		전화번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안내사항

1. 본 서식은 종합판정조사결과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종합판정조사 결과 '의료건강 필요군'은 의료건강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임을 권고합니다.
3. 종합판정조사 결과 '지역자원 필요군'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임을 권고합니다.

V. 종합판정조사 종합의견

서식 18 개인별지원계획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계획수립일	년	월	일	담당자
-------	---	---	---	-----

■ 대상자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비상 연락처	①성명	관계	연락처	②성명	관계	연락처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비독거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노부모 <input type="checkbox"/> 성인자녀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가구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구원 수 (명)			가구 내 등록장애인 수 (명)			
사회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보훈) <input type="checkbox"/> 일반가구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수발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input type="checkbox"/>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친구·이웃 <input type="checkbox"/> 사적간병인 <input type="checkbox"/>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수발자의 장애여부			[] 예(장애유형:) [] 아니요			
	주수발자의 사회활동 여부 [] 예 [] 아니요						
대상자 유형	[]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등급외(A, B) [] 기간·각하 [] 등급판정 신청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반돌봄군 [] 중점돌봄군			
	<input type="checkbox"/> 급성기·요양병원 퇴원(예정)자(<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발골) <input type="checkbox"/> 장애등록/정도(<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 없음						
	[] 장애인 (65세 미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실외 보행 가능여부		[] 예 [] 아니요		2주일 이내 퇴원여부 [] 예 [] 아니요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뇌전증 * 중복시 모두 체크합니다.			
		활동지원 신청여부		[] 예(<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등급외) [] 아니요(<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중 <input type="checkbox"/> 신청 예정)			
		시설퇴소 (예정)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I
서식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면
담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면
담

IV
서식

(뒤쪽)

■ 주요 욕구(문제)

노인	
장애인	

■ 서비스 제공목표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필요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주기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의료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건강관리 예방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장기요양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일상생활 돌봄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주거 복지		[] () 회	
기타 (타사업)		[] 주 [] 월 [] 분기 [] 비정기 [] 중단 () 회	
종합의견			
본인 동의 및 보호자 설명	[] 실시 [] 미실시	차기 계획 검토일	년 월 일

서식 19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1. 회의개요									
시·군·구		회의 차수		일시		방법	○ 대면 ○ 비대면	장소	
회의안건	심의 : 00건 (확정 : 00건 수정 후 확정 : 00건 보류/재논의: 00건)								
참석자	구분	성명	기관구분	기관종류		기관명	비고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복지 <input type="checkbox"/> 연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회의내용									
2. 논의내용(논의건수 총 _ 건)									
대상자	성명				담당자				
	생년월일								
선정사유	<input type="checkbox"/> 통합지원계획 수립 (논의결과의 ①번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계획변경 (논의결과의 ①번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종결(논의결과의 ②번으로 이동)								
계획수립 내용	구분 (대분류)	서비스내용 (중분류)	서비스내용 (소분류)	서비스명	서비스 주기		연계결정 (Y/N)		
					주기	횟수			
주요 논의내용									
논의결과	① 통합지원계획		○ 확정 ○ 수정 후 확정(①-①로 이동) ○ 보류/재논의						
	①-① 지원계획 변경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량 □ 제공기관 □ 기타						
	② 대상자 종결 여부		○ 종결 ○ 미종결						
〈참고사항〉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공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20 ▶ 통합지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통합지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에서 실시하는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함에 있어 회의 중 취득한 대상자 및 기관의 기밀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가족사항, 돌봄상황 내용 등)의 정보를 관련 법규(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겠습니다.]
2. 해당 정보를 통합지원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의와 관련된 회의록 자료서류 등을 무단으로 복사, 사진촬영 등 외부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본 서약서의 의무는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1 대상자별 개인별지원계획 확정 통보 서식

의료·요양 통합돌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결과 안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p>1. 귀하의 종합판정조사결과 파악된 주요 욕구는 다음과 같습니다.</p>						
구분	인지행동	의료·간호처치	기능	건강관리	사회지지·주거환경	
종합판정 조사결과 (노인)	인지정신행동	기본욕구처치	생활기능	건강관리행동	사회돌봄관계	
	정신건강	증상관리처치	자기돌봄	건강문제관리	주거환경	
	의사소통					
종합판정 조사결과 (장애인)	기능동작		의료건강	지역자원		
	일상생활동작		건강관리	영양상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구강관리	주거환경		
	인지행동특성					
구분	일상생활기능	인지심리기능	의료적욕구	주거환경		
지자체 자체조사결과						
<p>2. 귀하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단,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구분	기존/신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주기 (주/월/기타)	서비스 제공기관명		
보건의료						
건강관리에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기타						
<p>3. 귀하가 통합돌봄에서 제공받으실 서비스 내용을 안내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p>						
			년	월	일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 : 직급			성명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I
사업개요

II
사업추진절차_노인편

III
사업추진절차_장애인편

IV
서식

서식 22 서비스 제공(변경) 의뢰서(지자체 →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변경) 의뢰서						
의뢰처 (지자체)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뢰일자	
		년	월	일		
수신처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영역	[] 보건의료 [] 건강관리·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주거복지 [] 기타				
	기관명				주소	
대상자 정보 및 의뢰 내용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구형태	[] 독거 [] 비독거 ([] 부부 [] 노부모 [] 성인자녀 [] 조손 [] 형제자매 [] 장애인 가구 [] 한부모 가구 [] 다문화 가구 [] 친척·지인 [] 기타()				
	주수발자	[] 없음 [] 배우자 [] 부모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손자녀 [] 친인척 [] 친구·이웃 [] 사적간병인 []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형제·자매 [] 조부모 [] 자원봉사자 [] 기타)				
		주수발자의 장애여부	[] 예 (장애유형:)			
			[] 아니요			
		주수발자의 사회활동 여부	[] 예 [] 아니요			
	대상자 유형	[]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반돌봄군 [] 중점돌봄군)	[] 인지지원 [] 등급외(A, B) [] 기각·각하 [] 등급판정 신청중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실외 보행 가능여부	[] 예 [] 아니요	2주일 이내 퇴원여부	[] 예 [] 아니요
			퇴원(예정)자([] 의료기관 연계 [] 지역사회 발골) [] 장애등록/정도([]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기타() [] 해당 없음			
	장애인 (65세 미만)	[]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뇌전증 * 중복시 모두 체크		
			활동지원 신청여부	[] 예 ([] 수급자 [] 등급외)		
신청여부			[] 아니요 ([] 미신청 [] 신청중 [] 신청예정)			
시설퇴소 (예정)여부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주요 육구	통합판정 조사 결과 (노인)	인지행동	의료·간호처치	기능	건강관리	사회지지·주거환경
		인지정신행동	기본육구처치	생활기능	건강관리행동	사회돌봄관계
		정신건강	증상관리처치	자기돌봄	건강문제관리	주거환경
		의사소통				

서식 23

모니터링 서식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모니터링 방법										
이전 모니터링 일자		□ 유선 □ 대면										
모니터링 차수	 □ Y □ N										
1. 서비스 제공목표		* 시스템 연동필요										
2. 서비스 제공계획		* 시스템 연동필요										
통합자원계획서												
구분 (대분류)	구분 (중분류)	서비스 내용(소분류)		주기	횟수	계획 일치여부	서비스 미제공사 유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주기		서비스 기간	만족 정도
		항목명	상세 내용						주기	횟수		
...
보건의료	방문진료	질병관리	○○의료 센터	주 월 격월 분기 비정기 중단	...	○ 일치 ○ 불일치 ○ 서비스 미제공			주 월 격월 분기 비정기 중단 ...			○ 만족 ○ 보통 ○ 불만족
...
■ 서비스 제공 결과												
대상자 상태변화		○ 증상악화 ○ 개선 ○ 변화없음										
서비스 목표 및 제공계획 변경 여부		○ 필요 ○ 불필요										
변경필요 내용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량 □ 제공기관 □ 서비스 종결 □ 기타										
중합의견												
차기 모니터링 일자												

서식 24 → 모니터링-서비스 제공기관 기록지(서비스제공기관→지자체)

<p>■ 대상자 기본사항</p>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주소지	
제공기관		담당자 성명			
<p>■ 서비스 제공 현황</p>					
구분 (대분류)	서비스내용 (중분류)	서비스내용 (소분류)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주기 (주/월/기타)	서비스 최초 제공일 직접 서비스 제공일 (기록지 작성 시점)
보건의료	방문진료				
<p>■ 서비스 제공 결과</p>					
대상자 상태변화 여부	<input type="radio"/> 증상약화 <input type="radio"/> 개선 <input type="radio"/> 변화없음		대상자 상태변화 상세내용		
비고					

서식 25 ▶ **건보공단 서비스 이용정보 확인 의뢰서(지자체→건보공단 의뢰 서식)**

건보공단 서비스 이용정보 확인 의뢰서

의뢰처 (지자체)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뢰일	년	월	일
수신처 (건보공단)	서비스 영역	[] 보건의료 [] 건강관리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주거복지 [] 기타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000지사 통합돌봄팀		
대상자 정보 및 의뢰 내용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주소(실거주지)			
	구분 (대분류)	구분 (중분류)	서비스내용 (상세)	서비스제공 의뢰일
확인요청 사항	의뢰 서비스별 적정 제공여부(제공/미제공), 미제공 사유, 서비스 제공기관명, 서비스 제공주기(주기, 횟수), 서비스 기간(시작일~종료일), 만족정도			

상기 대상자에게 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정보에 대한 이용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대상자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뢰일					담당자 성명					
대상자 주소지 (실거주지)										
■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대분류)	구분 (중분류)	서비스 내용(상세)	제공 여부	미제공 사유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주기		서비스 기간		만족 정도
						주기	횟수	시작일	종료일	
건강관리예 방	방문복약관리	대제약물 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 단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요양			000센터					
...
비고										

서식 27 대상자 사업 중단 확인서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사업 중단 확인서							
대상자 정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padding: 5px;">담당자 성명</td> <td style="padding: 5px;">생년월일</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연락처</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주소</td> </tr> </table>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본 대상자(본인)는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통합돌봄사업 중단을 희망합니다. 이에 사업 중단 확인서 이후 자동적으로 사업대상자로서 종결됨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본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